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 업 설 명 서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도시환경위원회)

김 포 시

목 차

■ 미래전략국

- 1. 스마트도시과 3
- 2. 도시디자인과 9
- 3. 철도과 25

■ 환경국

- 4. 환경정책과 33
- 5. 기후에너지과 45
- 6. 자원순환과 57
- 7. 해양하천과 65

■ 교통건설국

- 8. 교통정책과 107
- 9. 대중교통과 123
- 10. 건설도로과 151
- 11. 도로관리과 175
- 12. 차량등록과 183

목 차

■ 도시주택국

13. 도시계획과	193
14. 주택과	199
15. 토지정보과	205

■ 농업기술센터

16. 농업정책과	215
17. 축산과	249
18. 농업진흥과	283
19. 기술지원과	293

■ 맑은물사업본부

20. 하수과	301
---------------	-----

■ 공원도시사업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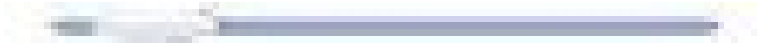
21. 공원과	307
22. 산림과	323
23. 클린도시과	351

미래전략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스마트도시과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6. 4. ~ 12.	사업위치	김포시 돌문로 63 일원(사우동 도시재생단지)
사업규모		스마트 주차정보(4개소), 우회전 안심서비스(3개소), 스마트 미디어폴(3개소), 다기능 스마트미러(4개소), 미디어 파사드(1개소)		
사업목적		노후 지역을 개선하고 새로운 교통·환경분야의 스마트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재생 환경 조성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김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최신 기술의 분야별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센터와 연계하여 도입하고 확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통, 안전, 환경, 복지 등 분야별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1,100,000	0	1,100,000	1,100,000	
국비		660,000		660,000	660,000	
도비		0			0	
시비		440,000		440,000	44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100,000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401-01 시설비	·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 1,100,000,000원*1식 = 국) 660,000,000원 시) 440,000,000원	1,100,000 660,000 440,000	

□ 예산요구 사유

-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기존 ‘사우동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스마트도시서비스 구축 및 제공
 - 사우동 뉴빌리지* : 스마트 주차정보(4개소), 우회전 안심서비스(3개소), 스마트 미디어폴(3개소), 다기능 스마트 미러(4개소), 미디어 파사드(1개소) 등의 스마트도시서비스 구축
 - * 국토교통부 2024년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시재생단지(도시디자인과)
- 노후, 쇠퇴한 도시재생사업단지에 주민체감형 스마트기술 지원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및 정주여건 개선

□ 예산증감 사유

-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지방비 440,000천원 신규 예산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추진	-	-	-
일자	2026.11.반영예정	-	-	-	-	-	-	2026.2.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0. ~ 11.: 공모 접수 및 신청
 - 2025. 12.: 공모사업 선정
 - 2026. 03. ~ 04.: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 2026. 04. ~ 05: 실시설계 용역
 - 2026. 05. ~ 12.: 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2025	·
2026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	-	-	-	2.15.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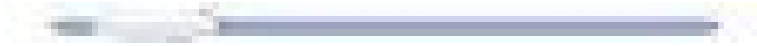
부서	스마트도시과	사업규모	144,000m ² (스마트도시서비스 5종)	1회추경 요구액 (천원)	1,100,000
부기명 (세부사업)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사업위치	돌문로 63 일원 (사우동 뉴빌리지 도시재생단지)		
위치도					
계획(안)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스마트도시과	스마트도시팀장 박영서	담당자	방송통신6급 문원중	전화	4952
-----	--------	-------------	-----	------------	----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도시재생특별회계	부 서 명	도시디자인과
기 정 액	1,474,645천원	요 구 액	900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장·관·항·목 ◎부기명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세입내용·산출내역·증감사유
		최종예산 (B=C+D)	본예산 (C)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20,816	30,545	29,645	900	-490,271	
내부거래	520,816	30,545	29,645	900	-490,271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520,816	30,545	29,645	900	-490,271	· 세입내용 : 일반회계 전입금 · 산출내역 : 도시재생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분 (900천원) · 증감사유 : 도시재생특별회계 사무관리비 증액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900천 원을 증액 편성

사우동 뉴빌리지 법정계획 수립

사업기간	2025. 3. 1. ~ 2027. 06. 30.	사업위치	김포시 읍면동 일원
사업규모	김포시(원도심)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사업목적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9조
		제1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 한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이 우선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연계·집중됨으로써 도시재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0조 제1항	
	해당조례	제10조(도시재생사업의 지원) 제1항	
		⇨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460,000	200,000	0	200,000	-26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60,000	200,000	0	200,000	-26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0	
김포시 도시재생전략 계획(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207-01 연구용역비	·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관련 용역 : 200,000,000원 - 사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 150,000,000원 - 거점시설건립 활성화계획 연계계획수립 : 50,000,000원	= 200,000	

□ 예산요구 사유

- 사우동 뉴빌리지 활성화계획 중 거점시설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등 후속 과업 수행 소요예산 확보 필요(법정계획)

□ 예산증감 사유

- 수립된 활성화계획에 따라 거점시설건립을 위해 법정계획을 이행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연계 계획 수립을 위해 200,000천원 증액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5. : 김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발주
 - 2025. 11. : 2029 김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공고
 - 2025. 12. : 김포시 사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 2026. 04. : 사우동 뉴빌리지 사업 거점시설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용역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2025	· 25.11. : 2029 김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공고 · 25.12. : 김포시 사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2026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460,000	271,017	188,983	-	
2026	188,983	-	-	188,983	2.15.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도시디자인과	사업규모	김포시(원도심)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	1회추경 요구액 (천원)	200,000
부기명 (세부사업)	사우동 뉴빌리지 법정계획 수립 (김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사업위치	김포시 도시지역 일원		
위치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팀장 이진나	담당자	시설7급 강운주	전화	5207
-----	--------	------------	-----	----------	----	------

감정동 농수로 산책로 환경개선사업

사업기간		2026. 4. ~ 2027. 5.	사업위치	감정동 468-2번지 외 2필지
사업규모		L=600m, B=6m		
사업목적		감정동 농수로 산책로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경관법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해당조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김포시 경관 조례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5. 주요 하천변 및 수변경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405,000	325,000	10,000	315,000	-8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05,000	325,000	10,000	315,000	-80,000	*236,000천 원 공항공사 지원금 확보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15,000	
도시디자인사 업 환경개선 및 유지보수	401-01 시설비	·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비 : 20,000,000원 · 공사비(옹벽 및 벙커 보수, 야간경관 설치 등) : 295,000,000원	= 20,000 = 295,000	

□ 예산요구 사유

- 2013년 준공된 농수로 산책로 일원의 공간이 노후화되어 벙커 및 옹벽등 보수 필요
- 시민들에게 새로운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특히 야간시 경관조명을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항공기소음 주민지원사업 예산지원 확정된 사업(지원금 75%, 자부담 25%)으로 추가 예산 편성 필요(*한국공항공사 김포시설단-727(2026.1.12.)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8. : 2026 항공기소음 주민지원사업 신청
 - 2026. 01. : 한국공항공사 예산 지원 확정 통보
 - 2026. 01. :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청
 - 2026. 04. ~ 05.: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 2026. 05. ~ 2027. 05.: 공사 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운동기구 수리 등
2025	· 보수 1차, 2차 보수공사(옹벽타일, 병커 수리, 법면 및 산책로 보수보강공사)
2026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5,000	4,528	-	472	
2025	405,000	92,998	312,002	0	
2026	322,002	-	-	322,002	2.15.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도시디자인과	사업규모	L=600m, B=6m	1회추경 요구액 (천원)	315,000
부기명 (세부사업)	감정동 농수로 산책로 환경개선사업 (도시디자인사업 환경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위치	감정동 468-2번지 외 2필지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팀장 허은정	담당자	시설7급 문유진	전화	5203
-----	--------	-------------	-----	----------	----	------

기본경비(도시디자인과)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업규모	모니터 3개 구입		
사업목적	2026. 1.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편성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김포시 물품 관리 조례	제8조
제8조(물품 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 매입(수리·제조) 품의 및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720	0	720	72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720	0	720	72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720	
기본경비 (도시디자인과)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모니터 구입 : 240,000원*3개	= 720	

□ 예산요구 사유

- 26. 1.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운영에 필요한 모니터 3대 구입비 편성
 - 팀 분리 및 26년 상반기 도시재생지원센터 추가 인력 채용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4. : 모니터 구입

□ 구매예정 물품 규격 및 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시디자인과	도시관리팀장 장민수	담당자	행정8급 황지영	전화	5192
-----	--------	------------	-----	----------	----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도시재생특별회계-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업규모	1개소(제1별관 1층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목적	지역의 자생적 성장기반 및 주민주도 도시재생사업 추진, 협업·소통 기반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 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당조례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9조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 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 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 및 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운영, 지역주민 역량강화 및 마을만들기 전문가 양성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36,365	35,545	34,645	900	-82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6,365	35,545	34,645	900	-82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900	
도시재생지원 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채용 심사 수당 : 900,000원*1회	= 900	

□ 예산요구 사유

- 2026년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채용 추진에 따라 면접 심사위원 수당 지급 등 채용 절차 수행에 필요한 일회성 경비 확보가 필요함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센터장 미채용으로 면접심사 수당이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26년 채용 절차 진행에 따라 추가로 900천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2026. 1. ~ 2026. 12. :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지원, 도시재생 서포터즈 운영
- 2026. 2. ~ 2026. 4. : 도시재생지원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임용
- 2026. 상반기 :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채용
- 2026. 5. ~ 2026. 6. : 상반기 도시재생대학 운영
- 2026. 9. ~ 2026. 10. : 하반기 도시재생대학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도시재생대학(집수리 과정) 운영 - 일시 : 2024.5.21.~6.5. - 장소 : 김포본동경기행복마을관리소 - 인원 : 14명(*수료율 93%) ○ 도시재생 서포터즈 운영 - 모집인원 : 5명 선정 - 활동기간 : 2024년 3~12월 - 활동내용 : 도시재생 사업 홍보 및 SNS 기사 작성 등
2025	○ 도시재생대학(집수리 과정) 운영 - 일시 : 2025.5.14.~ 5.20. - 장소 : 봉화로29번길 16-2 (사우동, 명진다세대주택) - 인원 : 15명(*수료율 93%) ○ 도시재생 서포터즈 운영 - 모집인원 : 6명 선정 - 활동기간 : 2025년 4월 ~10월 - 활동내용 : 도시재생 사업 홍보 및 SNS 기사 작성 등 ○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청사초롱 어울마당 활성화 프로그램) - 일시 : 2025.6.24.~7.29(매주 화) - 장소 : 청사초롱 어울마당(통진읍 조강로56번길 51-9) - 모집인원 : 12명 선정 - 활동내용 : 지역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캘러그래피 수업 및 작품 전시회) ○ 도시재생대학(바리스타 과정) 운영 - 일시 : 2025.10.21.~ 10.24. / 10.28. ~ 10.31. - 장소 : 커피에반하다 김포법원점(김포시 봉화로 14-4) - 인원 : 8명(*수료율 100%)
2026	○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실 이전 완료 ○ 도시재생지원센터 세부계획 수립 - 내용 :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 방향 검토 등 사전 준비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36,476	35,264	-	1,211	
2025	36,365	34,943	-	1,422	
2026	34,645	4,858	-	29,787	2.15.기준 집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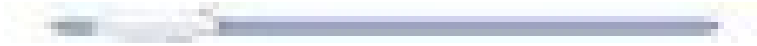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팀장 이진나	담당자	시설9급 이경민	전화	5211
-----	--------	------------	-----	----------	----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철도과



(철도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 서 명	철도과
기 정 액	10천원	요 구 액	7,640,000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장·관·항·목 ◎부기명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세입내용·산출내역·증감사유
		최종예산 (B=C+D)	본예산 (C)			
세외수입	0	7,640,000	0	7,640,000	7,640,000	
임시적세외수입	0	7,640,000	0	7,640,000	7,640,000	
기타수입/그외수입 ◎철도차량 입찰담합 소송 승소금	0	7,640,000	0	7,640,000	7,640,000	· 세입내용 : 입찰담합관련 손해배상소송 승소예상금 · 산출내역 : 손해액산정 감정(보완)결과 / 76.4억원 · 증감사유 : 1심선고 예상에 따른 승소예상금 신규편성

(철도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부 서 명	철도과
기 정 액	31,808,183천원	요 구 액	13,986,409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장·관·항·목 ◎부기명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세입내용·산출내역·증감사유
		최종예산 (B=C+D)	본예산 (C)			
세외수입	0	42,458	0	42,458	42,458	
임시적세외수입	0	12,530	0	12,530	12,530	
자치단체간부담금/ 자치단체간부담금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예타조사용역비 부담금	0	7,000	0	7,000	7,000	· 세입내용 : 인천2호선 고양 연장 관련 예타조사 용역비 부담금 납부 · 산출내역 : 10,000,000*70% = 7,000,000원 · 증감사유 : 인천2호선 고양 연장 관련 예타조사 용역비 증가(10백만원)에따른 부담금(인천시 3백만원, 고양시 4백만원) 납부 예정
기타수입/그외수입 ◎한강버스 환승손실금 보전	0	30	0	30	30	· 세입내용 : 한강버스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참여에 따른 환승손실금 보전 · 산출내역 : '25.9. ~ '25.12. 월평균 환승손실 보전액 2,000원 * 15개월('25.9. ~ '26.12. / 운행 중단에 따른 '25.10. 제외) · 증감사유 : 신규 편성
기타수입/그외수입 ◎선급 교통카드 충전금 차액 정산	0	2,000	0	2,000	2,000	· 세입내용 : 선급 교통카드 충전금 차액실제수집 ≠ 티머니 전산 정산 후 환급 · 산출내역 : '24.11. ~ '25.10. 발생 차액 → 891,000원 '25.11. ~ '26.12. 발생 차액 전년도와 유사 예상 · 증감사유 : 신규 편성
기타수입/그외수입 ◎수탁재산불용물품 매각금	0	3,500	0	3,500	3,500	· 세입내용 : 수탁재산 불용물품 매각금 · 산출내역 : 1kg(350원)*10,000 = 3,500,000원 · 증감사유 : 레일교체 공사 후 고철 매각금 발생
지방행정제재·부과금	0	29,928	0	29,928	29,928	
환수금/부정이익환수금 ◎'25년 노후 정보보 안설비 교체사업비 용도 외 집행금 및 이자 반납금	0	29,928	0	29,928	29,928	· 세입내용 : '25년 노후 정보보안설비 교체사업비 용도 외 집행금 및 이자 반납금 · 산출내역 : 사업용도 외 집행금액(기지급액-낙찰가) 29,700,000원 + 발생이자(법정이율 연5%) 227,840원 · 증감사유 : 운영관리자 해당사업 부정 계약에 따른 부정 이익환수금(용도 외 집행금 및 이자) 발생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7,601,420	13,943,951	0	13,943,951	-13,657,469	
내부거래	27,601,420	13,943,951	0	13,943,951	-13,657,469	
전입금/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27,601,420	13,943,951	0	13,943,951	-13,657,469	

김포골드라인 운영 및 유지관리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사업기간	2024. 9. ~ 2029. 9.	사업위치	김포골드라인 노선 일원
사업규모	김포한강차량기지, 정거장(10개소), 구간(23.67km)		
사업목적	철도전문 운영기관에 민간위탁을 통한 김포골드라인 효율성 증대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시철도법	제42조 제①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운영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4조 제①항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협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30,974,290	32,329,192	18,342,783	13,986,409	1,354,902	
국비		0			0	
도비	3,006,667	2,746,120	2,746,120		-260,547	
시비	27,967,623	29,583,072	15,596,663	13,986,409	1,615,449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3,986,409	
김포골드라인 운영 및 유지관리	307-05 민간위탁금	○ 운영관리비 협약금	13,986,409	
		· '26년 협약금 (불변가) : 경정(31,264,604,200원) - 기정(17,204,633,000원)	= 14,059,971	
		· '25년 물가 변동 조정금 (협약상 주무관청 보전) : 경정(1,057,107,590원) - 기정(1,130,670,000원)	= -73,562	

□ 예산요구 사유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철도전문 운영기관에 김포골드라인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효율성 증대

□ 예산증감 사유

- '26년 본예산 편성시 '26년 협약금 불변가 31,264,604천원 확보가 필요하였으나 세출조정으로 인해 17,204,633천원 편성, '26년 협약금 불변가 부족분 증액
- '25년도 소비자물가지수 확정 발표('25.12.31)에 따른 '25년 물가 변동 조정금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동의		
일자	2025.11 반영								2016. 2. 2023. 1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09. 9월 : 김포도시철도 건설·운영 사업면허 교부(국토부 면허조건 : 위탁)
 - 2016. 2월 : 김포도시철도 관리·운영 민간위탁(시의회 원안동의)
 - 2016. 6월 : 민간위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서울교통공사)
 - 2019. 9월 :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기존운영자 개통 후 5년간 / ‘24.9월까지)
 - 2023. 10월 : 김포골드라인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차기운영자 선정(시의회 원안동의)
 - 2024. 1월 : 민간위탁 차기운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현대로템 주식회사)
 - 2024. 4월 : 김포골드라인 운영 및 유지관리 차기운영 협약체결
 - 2024. 9월 ~ 2029. 09월 : 김포골드라인 운영 및 유지관리(차기운영자 5년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2024.01. ~ 2024.12.)
2025	김포골드라인 운영 및 유지관리(2025.01. ~ 2025.12.)
2026	·김포골드라인 운영 및 유지관리(2026.01. ~ 2026.12.)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31,506,030	31,506,030	0	0	
2025	30,974,290	30,826,089	148,201	0	※이월액: 환승할인 도비
2026	18,490,984	6,000,000	0	12,490,984	2.15.기준 집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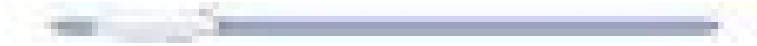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철도과	철도운영팀장 하대용	담당자	공업7급 이승학	전화	5506
-----	-----	------------	-----	----------	----	------

환경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환경정책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

사업기간	2026. 5. ~ 2027. 2.	사업위치	한강하류지역(하성면 ~ 월곶면)
사업규모	245ha		
사업목적	한강하류지역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의 철새 먹이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공익활동을 지원하여 철새들의 안정적인 월동 지원을 통한 생물다양성 확보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정부는 다음 각호의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 및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150,000	150,000	0	150,000	0	
국비	75,000	75,000		75,000	0	
도비	37,500	0			-37,500	
시비	37,500	75,000		75,000	37,5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50,000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	201-01 사무관리비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협의회 참석수당 등 : 100,000원 × 7명 × 1회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협의회 회의자료 인쇄비 등 : 800,000원 × 1회 · 홍보 현수막 제작 등 : 60,000원 × 25개	= 700 = 800 = 1,500	
	301-14 기타 보상금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보상금 : 60원/㎡ × 2,450,000㎡	= 147,000	

□ 예산요구 사유

- 한강하류지역의 우수한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지역 토지소유자 등과 벗짚존치 등을 계약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철새의 안정적인 월동 지원 및 생물다양성 확보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의 적극적 홍보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5. : 2026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계획 수립
- 2026. 06. : 2026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 구성 및 개최
- 2026. 07. ~ 2026. 09. : 2026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행공고 및 접수
- 2026. 10. : 계약 대상자 선정 및 계약
- 2026. 11. ~ 2027. 02.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이행(벗짚존치 등)
- 2026. 12. : 계약사항 이행여부 확인 및 보상금 지급
- 2027. 01. ~ 02. : 모니터링 및 이행여부 수시 점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보상금액 : 136,486천원 · 보상농가 : 224농가, 998필지, 248ha
2025	· 보상금액 : 147,000천원 · 보상농가 : 219농가, 1,011필지, 267ha
2026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50,000	139,133	-	10,867	
2025	150,000	150,000	-	-	
2026	-	-	-	-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장 차진복	담당자	환경7급 안희명	전화	2248
-----	-------	------------	-----	----------	----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재두루미 취서식지 보전사업)

사업기간	2026. 7. ~ 2027. 4.	사업위치	하성면 후평리 1121번지 일대
사업규모	154ha		
사업목적	천연기념물 제203호로 지정된 재두루미의 안정적인 월동 환경을 조성하여 천연기념물 보호를 통한 생물자원 확보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2항 제3조 제3항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 제2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제3항(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이 야생생물을 이용할 때에는 야생생물이 멸종되거나 생물다양성이 감소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200,000	0	200,000	200,000	
국비		140,000		140,000	140,000	
도비		30,000		30,000	30,000	
시비		30,000		30,000	3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0	
재두루미 취서식지 보전사업	201-01 사무관리비	· 먹이주기 임차 등 : 200,000원 × 20회 · 취서식지 보전 관리 소모품 구입 등	= 4,000 = 1,000	
	206-01 재료비	· 법씨구입 등 : 2,200원/kg × 15,910kg	= 35,000	
	207-01 연구용역비	· 재두루미 취서식지 철새 모니터링 용역	= 60,000	
	301-14 기타 보상금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보상금 : 121.2원/m ² × 825,080m ²	= 100,000	

□ 예산요구 사유

- 천연기념물 제203호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된 재두루미의 월동 지원과 개체수 보전을 위해 재두루미 취서식지 보전사업의 지속적 사업 추진 필요
- 재두루미 취서식지 보전사업 구역 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통한 지역주민의 협력과 먹이주기 (법씨 등) 등으로 재두루미의 안정적인 취식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추진 성과 관리 및 도래 개체수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용역 수행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도 전액 삭감되었던 국고보조금이 2026년 확정내시로 교부됨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7. ~ 09. : 재두루미 취서식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대상자 선정 및 계약
 - 2026. 10. : 재두루미 먹이(뽕씨 등) 구입
 - 2026. 11. ~ 2027. 03. : 재두루미 먹이주기 장비임차용역 추진
 - 2026. 11. ~ 2027. 04. : 재두루미 취서식지 철새 모니터링 용역 추진
 - 2026. 12. : 재두루미 취서식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대상자 보상금 지급
 - 2026. 11. ~ 2027. 02. : 재두루미 취서식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이행(벗짚존치 등)
 - 2027. 02. : 계약사항 이행여부 지속 확인 및 모니터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재두루미 취서식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 56농가, 58ha, 70,961천원 · 재두루미 취서식지 철새 모니터링 용역 : 20,000천원 · 먹이(뽕씨) 공급량 : 37.5톤, 먹이(미꾸라지) 공급량 : 300kg
2025	-
2026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224,718	167,744	25,400	31,574	
2025	25,400	23,643	-	1,757	
2026	-	-	-	-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장 차진복	담당자	환경7급 안희명	전화	2248
-----	-------	------------	-----	----------	----	------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및 대체 식물 식재

사업기간	2026. 4. ~ 2026. 6.	사업위치	김포 관내 하천변
사업규모	약 20,000㎡		
사업목적	생태계교란 식물을 제거하고 대체 식물을 식재하여 생물다양성 회복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수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할 때에는 다른 야생생물과 함께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30,000	0	30,000	30,000	
국비		0			0	
도비		9,000		9,000	9,000	
시비		21,000		21,000	21,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0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및 대체 식물 식재사업	206-01 재료비	· 대체식물 구입(초분류 등) : 2,500원*4,000본	= 10,000	
	401-01 시설비	·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공사 1,000원*20,000㎡	= 20,000	

□ 예산요구 사유

- 생태계교란 식물이 분포되어 있는 하천변을 대상으로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및 대체 식물을 식재하여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고 토착종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생태계교란 식물을 제거 및 대체 식물 식재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회복을 위한 도비보조금 신규사업 내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일자	2026.11.반영예정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4.: 사업계획 수립 및 공사 의뢰
 - 2026. 05.: 계약 및 작업 실시
 - 2026. 06.: 공사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2025	-
2026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	-	-	-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장 차진복	담당자	행정7급 유예나	전화	2246
-----	-------	------------	-----	----------	----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전지역
사업규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346개소		
사업목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으로 영세 사업장의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기여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1,303,200	2,880,000	1,993,500	886,500	1,576,800	
국비	724,000	1,920,000	1,329,000	591,000	1,196,000	
도비	289,600	240,000	166,125	73,875	-49,600	
시비	289,600	720,000	498,375	221,625	430,400	
기타	144,800	1,920,000	1,329,000	591,000	1,775,20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86,500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4,800,000,000원*60%)-(3,322,500,000원*60%)	= 886,500	

□ 예산요구 사유

- 중소기업 중 대기 4·5종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부착 등 비용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편성에 따른 가내시 대비 증액분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추진계획 수립 및 위·수탁 협약체결
 - 2026. 2.: 지원사업 공고
 - 2026. 3.: 사업장 선정 승인 통보
 - 2026. 3. ~ 2026. 12.: 지원사업 추진
 - 2026. 12.: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방지지설 설치 지원: 7업체(7시설) 지원완료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부착 지원: 126업체(126시설) 지원완료
2025	- 방지지설 설치 지원: 57업체(71시설) 지원완료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부착 지원: 393업체 선정, 243업체(243시설) 지원완료, 150업체 추진중
2026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5,770,000	898,742	4,871,258	-	
2025	6,174,458	5,640,200	-	534,258	
2026	1,993,500	-	-	1,993,500	2.15.기준 집행현황

- ※ 2024년: 시 자체 추진(개별 사업장 준공 완료 시 보조금 지급)
- ※ 2025, 2026년: 공기관 위탁 사업추진(사업비 위탁기관 전액 교부 후 추후 정산)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정책과	환경기술지원팀장 이관호	담당자	환경7급 김창국	전화	5673
-----	-------	--------------	-----	----------	----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자체)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전지역
사업규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비의 8%		
사업목적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신속한 업무 추진 가능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78,192	230,400	119,610	110,790	152,208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78,192	230,400	119,610	110,790	152,208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10,790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자체)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위탁수수료(총 사업비의 8%) (2,880,000,000원*8%)-(1,993,500,000원*6%)	= 110,790	

□ 예산요구 사유

- 서류검토, 현장조사, 심의위원회 등 대기환경분야의 전문성, 기술력 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의 특성상 역량 있는 전문기관 위탁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편성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분(1,993,500천원 → 2,880,000천원)에 대한 위탁수수료 반영
- 2025년도 대비 위탁수수료 인상분 반영(6% → 8%)
※ 참고사항: 경기도 타지자체 및 타수탁기관의 위탁수수료 확인결과 8% 동일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추진계획 수립 및 위·수탁 협약체결
 - 2026. 2.: 지원사업 공고
 - 2026. 3.: 사업장 선정 승인 통보
 - 2026. 3. ~ 2026. 12.: 지원사업 추진
 - 2026. 12.: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기술자문료: 38,800천원 지급[방지시설 7업체(7시설), 사물인터넷 126업체(126시설) 지원완료]
2025	- 기술자문료: 28,500천원 지급[방지시설 57업체(71시설) 지원완료] - 위탁수수료: 78,192천원 지급[사물인터넷 393업체 선정, 243업체(243시설) 지원완료, 150업체 추진중]
2026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44,250	38,800	105,450	-	
2025	183,642	106,692	-	76,950	
2026	119,610	-	-	119,610	2.15.기준 집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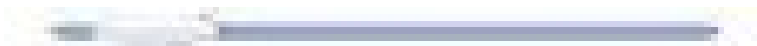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정책과	환경기술지원팀장 이관호	담당자	환경7급 김창국	전화	5673
-----	-------	--------------	-----	----------	----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기후에너지과



(기후에너지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 서 명	기후에너지과
기 정 액	16,580,016천원	요 구 액	148,407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장·관·항·목 ◎부기명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세입내용·산출내역·증감사유
		최종예산 (B=C+D)	본예산 (C)			
세외수입	0	67,247	0	67,247	67,247	
경상적세외수입	0	63	0	63	63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2025년 김포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이자	0	63	0	63	63	· 세입내용 : '25년 김포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이자 · 산출내역 : 이자발생액 63,700원 · 증감사유 : 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액
임시적세외수입	0	67,184	0	67,184	67,184	
보조금반환수입 /위탁비반환수입 ◎2025년 김포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집행잔액	0	67,184	0	67,184	67,184	· 세입내용 : '25년 김포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집행잔액 · 산출내역 : 집행잔액 67,184,000원 · 증감사유 :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026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6. 3. ~ 12.	사업위치	하성면 전류리, 통진읍 서암리, 월곶면 고막리 일원
사업규모	하성면 전류리 4,895m(136세대), 통진읍 서암리 856m(52세대), 월곶면 고막리 110m(24세대)		
사업목적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공급 비용을 지원하여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시설과 제2조제7항의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에 사업자가 시설하기에 어려운 구간에 수요가 부담이 발생할 때에는 설치공사 시설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376,920	162,320	0	162,320	-214,600	
국비		0	0	0	0	
도비	188,460	81,160	0	81,160	-107,300	
시비	188,460	81,160	0	81,160	-107,3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62,320	
도시가스 취약지역 지원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하성면 전류리 1,359m(7세대) 도시가스 배관 설치 지원	= 96,000	
		· 통진읍 서암리 830m(52세대) 도시가스 배관 설치 지원	= 64,000	
		· 월곶면 고막리 110m(24세대) 도시가스 배관 설치 지원	= 2,320	

□ 예산요구 사유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중 경제성이 부족한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도시가스사에 시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김포시민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위해 필수적임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예산 축소에 따른 전년도 대비 예산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3. ~ 4. : 도비보조금 신청
 - 2026. 4. ~ 11.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 2026. 12. : 사업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양촌읍 구래리 비엔뷰 인근 : 1.65km - 월곶면 고막리 일원 : 0.39km
2025	- 양촌읍 석모리 900번지 인근 : 1.155km
2026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434,408	434,408	-	-	
2025	376,920	376,920	-	-	
2026	-	-	-	-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에너지산업팀장 박유선	담당자	환경7급 권선엽	전화	5383
-----	--------	-------------	-----	----------	----	------

운행차 소음 수시점검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전 지역
사업규모	운행차(자동차·이륜자동차) 소음 수시점검 [자동차 250,000대, 이륜자동차 20,000대 김포시 등록]		
사업목적	운행차(자동차·이륜자동차) 소음 수시점검을 강화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정온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소음·진동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제36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 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시민이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12,730	0	12,730	12,730	
국비	0	0	0	0	0	
도비	0	0	0	0	0	
시비	0	12,730	0	12,730	12,730	
기타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2,730	
운행차 소음 수시점검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점검용 피복 및 물품 등 구입 : 300,000원*3개 · 운행차 수시점검 홍보물품(현수막 등) 제작 및 설치 : 80,000원*10개 =	1,700	
	201-02 공공운영비	· 생활소음민원처리 휴대폰 통신요금 : 40,000원*12월*1대 =	48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진동측정기 구입 : 4,500,000원*1식 · 소음측정기 구입 : 6,050,000원*1식 =	10,550	

□ 예산요구 사유

○ 최근 운행차 소음 관련 생활 불편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접수 민원 위주의 관리 방식으로는 반복·상시 민원 대응에 한계가 있어, 이륜차 운행에 대한 수시 점검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수시 점검 강화를 통해 운행차 소음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점검 운영 및 홍보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운행차 소음 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운행차 소음 전담팀(생활환경팀) 신설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일자	2026.11.반영예정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운행차 수시점검 계획수립
 - 2026. 2. : 운행차 소음 관련기관 업무 협의 등 점검 준비
 - 2026. 3. ~ 12. : 운행차(자동차·이륜자동차) 점검 실시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생활환경팀장 김필섭	담당자	환경7급 박미선, 환경9급 고부연	전화	5357,5358
-----	--------	------------	-----	--------------------	----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고촌읍, 양촌읍, 대곶면, 하성면	
사업규모		마을 공동물품 구입 및 환경개선 사업 등			
사업목적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통한 주민 복리 증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시·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이하 생략)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228,059	146,555	0	146,555	-81,504	
국비	181,320	146,555		146,555	-34,765	
도비		0			0	
시비	46,739	0			-46,739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46,55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고촌읍)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전호2리 마을회관 TV 구입	= 90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하성면)	401-01 시설비	· 마조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 8,40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양촌읍)	401-01 시설비	· 흥신2리 마을회관 환경개선 공사	= 5,200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401-01 시설비	· 양촌읍, 대곶면 공공사회복지사업(마을회관 등 환경개선 공사)	= 54,058	기본 지원금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양촌읍, 대곶면 공공사회복지사업(마을회 물품구입)	= 55,642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지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양촌읍 소득증대사업(마을 공용 농기계 등 구입)	= 16,767	특별 지원금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양촌읍 공공사회복지사업(경로당 화장실 개선)	= 5,588	

□ 예산요구 사유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산편성 및 사업 추진
- 발전소 주변지역(고촌읍, 양촌읍, 대곶면, 하성면)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 예산증감 사유

-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 「'26년도 예산편성 확정통보」에 따른 예산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0. : 2026년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시 → 전력기반기금사업단)
 - 2025. 12. : 사업계획 승인 및 예산확정 통보(전력기반기금사업단 → 시)
 - 2026. 03. : 2026년 사업비 교부 신청
 - 2026. 04. : 사업비 교부
 - 2026. 04. ~ 11. : 사업 추진
 - 2026. 12. :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고촌읍(신곡7리 마을회 냉장고 1대 구입)	900,000원	
	- 양촌읍(양곡8리 경로당 환경개선공사)	4,950,000원	
	- 하성면(석탄2리 및 가금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10,811,900원	
	- 양촌읍·대곶면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물품구입	73,732,500원	(기본지원금)
	- 양촌읍 학운 다목적센터 조성 및 대곶면 작은목욕탕 건립	1,129,860,000원	(특별지원금 - 이월)
2025	- 고촌읍(신곡13리 경로당 냉장고 1대 구입)	850,000원	
	- 양촌읍(양곡4리, 23리 무더위쉼터 환경개선 사업)	5,300,000원	
	- 하성면(마조2리 마을안길 보수공사)	10,293,890원	
	- 양촌읍·대곶면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물품구입	74,285,060원	(기본지원금)
	- 대곶면 작은목욕탕 인테리어 및 물품구입	89,420,000원	(특별지원금 - 이월)
2026	- 고촌읍(전호2리 마을회관 TV 구입)		
	- 양촌읍(흥신2리 마을회관 환경개선)		
	- 하성면(마조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 양촌읍·대곶면 마을 공용물품 구입 및 환경개선 사업		(기본지원금)
	- 양촌읍 마을 공용 농기계 및 영농자재 구입, 경로당 화장실 개선		(특별지원금)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2,531,942	1,393,307	1,126,945	11,690	
2025	1,355,003	1,095,850	89,420	169,733	
2026	89,420	-	-	-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에너지산업팀장 박유선	담당자	행정6급 김연재	전화	5384
-----	--------	-------------	-----	----------	----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부 서 명	자원순환과
기 정 액	-	요 구 액	9,067,055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장·관·항·목 ◎부기명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세입내용·산출내역·증감사유
		최종예산 (B=C+D)	본예산 (C)			
세외수입	0	9,067,055	0	9,067,055	9,067,055	
지난연도 수입						
지난연도 수입/ 지난연도 수입 ◎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0	4,333,315	0	4,333,315	4,333,315	· 세입내용 :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4회 분할납부) · 산출내역 : 4회 중 1회분, 2회분 부과 · 증감사유 : 부과액 4,333,315천원
지난연도 수입/ 지난연도 수입 ◎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0	4,733,740	0	4,733,740	4,733,740	· 세입내용 :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3회 분할납부) · 산출내역 : 3회 중 1회분 부과 · 증감사유 : 부과액 4,733,740천원

수도권매립지 관리 · 운영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일원
사업규모	2025년 12월 반입수수료 및 반입총량초과 가산금, 2026년 연탄재 반입수수료		
사업목적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로 안정적 반입 처리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5호가목
	위임규정	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반입수수료	
	해당조례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및 분담금 부과징수규정	제4조, 제9조
		- 규정 제4조 : 반입수수료, 가산금 및 분담금을 부과 징수하려는 때에는 사장 또는 수입담당은 제2조제4호에 따라 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 규정 제9조 : 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가 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4,763,680	1,505,889	1,500,000	5,889	-3,257,791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763,680	1,505,889	1,500,000	5,889	-3,257,791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889	
수도권매립지 관리·운영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 2026년 연탄재 반입수수료 : 107,058원*55톤	= 5,889	

□ 예산요구 사유

- 2026년 연탄재 수도권매립지 반입에 따른 수수료 납부

□ 예산증감 사유

- 연탄재 수도권매립지 반입 예산 편성을 위해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3. : 2025년 반입총량 초과 가산금 납부
 - 2026. 01. ~ 12 : 연탄재 반입수수료 납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23.12.~24.11.) : 30,987톤 - 반입수수료 납부액 : 3,582,476천원 - 2023년 반입총량 초과 가산금 : 547,804천원
2025	-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24.12.~25.11.) : 30,784톤 - 반입수수료 납부액(24.12.~25.11.) : 3,603,471천원 - 2024년 반입총량 초과 가산금 : 1,159,767천원
2026	-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25.12.) : 3,354톤 392,859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4,257,115	4,130,280	-	126,835	
2025	4,763,680	4,763,238	-	442	
2026	1,500,000	392,859	-	1,107,141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수도권매립지팀장 류효녀	담당자	행정7급 박지희	전화	2765
-----	-------	--------------	-----	----------	----	------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대곶면 대곶북로305번길 69
사업규모	폐합성수지 위탁처리량 13,500톤		
사업목적	수도권매립지, 자원화센터 및 파주환경관리센터에 반입이 불가한 폐기물을 민간 폐기물 처리 허가업체에 위탁·처리하여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3항
		시장은 공중 보관시설의 폐기물을 1일 1회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2,620,000	2,700,000	2,250,000	450,000	8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620,000	2,700,000	2,250,000	450,000	8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50,000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307-05 민간위탁금	·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 경정(폐합성수지 200,000원/톤*13,500톤 : 2,700,000천원) - 기정(200,000원/톤*11,250톤 : 2,250,000천원)	= 450,000	

□ 예산요구 사유

- 수도권매립지 및 김포시 자원화센터, 파주환경관리센터에 반입이 불가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민간 시설에 위탁 처리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량 증가 예상됨에 따라 추가 예산 요청 (폐기물 처리량 증 2,250톤)
(폐기물 발생량 : 2023년-14,448톤 / 2024년-15,871톤 / 2025년-16,565톤)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용역 착수
 - 2026. 01. ~ 12. : 매월 폐기물처리량 검토 및 기성금 집행
 - 2026. 12. : 용역 완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폐합성수지 : 15,871톤*170,542원/톤 = 2,699,677천원(1,323톤/월 처리)
2025	- 폐합성수지 : 16,565톤*157,428원/톤 = 2,607,729천원(1,380톤/월 처리)
2026	- 폐합성수지 : 1066.51톤*156,141원/톤 = 166,526천원(1,066.51톤/월 처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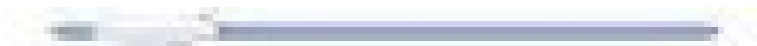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2,950,000	2,699,677	-	250,323	
2025	2,620,000	2,607,729	-	12,271	
2026	2,250,000	166,526	-	2,083,474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장 하재현	담당자	공업7급 조건익	전화	2772
-----	-------	------------	-----	----------	----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 업 설 명 서

해양하천과



(해양하천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 서 명	해양하천과
기 정 액	2,191,260천원	요 구 액	1,163,641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장·관·항·목 ◎부기명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세입내용·산출내역·증감사유
		최종예산 (B=C+D)	본예산 (C)			
세외수입	16,746	15,000	0	15,000	-1,746	
경상적세외수입	10,970	10,000	0	10,000	-970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10,970	10,000	0	10,000	-970	· 세입내용 : 공유재산 사용허가, 도유폐천 대부 · 증감사유 : 전년도 세입 최종예산액 반영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776	5,000	0	5,000	-776	
변상금 /변상금 ◎공유재산변상금	5,776	5,000	0	5,000	-776	· 세입내용 : 하천부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 증감사유 : 전년도 세입 최종예산액 반영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한강, 굴포천
사업규모	국가하천 2개소 유지관리		
사업목적	국가하천 유지·보수, 점검을 통한 사전 재해예방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하천법	제92조 제1항
		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해당조례	하천법	제27조 제7항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⑦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87,407	101,024	196,824	-95,800	13,617	
국비	87,407	101,024	196,824	-95,800	13,617	
도비		0			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95,800	
국가하천 유지보수	401-01 시설비	· 수초목 제거 : 경정(760원*71,088㎡)-기정(760원*92,140㎡) = · 국가하천 유지보수 : 경정(미실시)-기정(19,950,000원*4개소) =	-16,000 -79,800	

□ 예산요구 사유

- 국고보조금 감액 확정에 따라 국가하천 시설유지보수 사업비의 집행계획 변경 및 예산 현행화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국고보조사업 예산 확정 결과(감액 통보)를 반영하여 예산 감액
- 2026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고보조금 감액 내시[경기도 하천과-854(2026. 1. 14.)]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4. : 2026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 요구서 제출
- 2025. 09. : 2026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고보조금 내시
- 2026. 01. : 2026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고보조금 감액 내시
- 2026. 01. ~ 12. : 사업추진(공사 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굴포천 제방 4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 국가하천 2개소(한강둔치, 굴포천) 유지관리 공사
2025	· 굴포천 제방 4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 국가하천 2개소(한강둔치, 굴포천) 유지관리 공사
2026	· 굴포천 제방 4개소 성능평가 용역 계획 · 국가하천 2개소(한강둔치, 굴포천) 유지관리 공사 계획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678,294	97,050	532,389	48,855	
2025	619,796	561,718	-	58,078	
2026	196,824	-	-	196,824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하천관리팀장 임수진	담당자	시설8급 김현섭	전화	5430
-----	-------	------------	-----	----------	----	------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기간	2026. 3. ~ 2026. 11.	사업위치	나진포천 외 4개소
사업규모	수초목 제거(5개소)		
사업목적	수초목 제거 및 하천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을 통한 재해예방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 ☒ 보조(100%)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하천법	제92조 제1항
		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해당조례	하천법	제27조 제7항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⑦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300,000	450,000	0	450,000	150,000	
국비					0	
도비	300,000	450,000		450,000	150,00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50,000	
지방하천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 수초목 제거(도심하천 및 거물대천) : 592,105㎡ * 760원/㎡ =	450,000	

□ 예산요구 사유

- 하천변 수목 및 수초 제거를 통한 유수 흐름 개선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경기도 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
2026년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소규모 준설사업 예산배분 알림[경기도 하천과-1248(2025.1.20.)]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3. : 사업발주
 - 2026. 11. : 사업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거물대천 하류부 제방 복구공사 · 봉성포천 호안 보수공사 · 도심하천(계양천,나진포천,가마지천) 수초목 제거공사 · 대포천 수초목 제거공사 · 양택천 제방 보수공사
2025	· 지방하천 4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 도심하천(계양천,나진포천,가마지천) 수초목 제거공사
2026	· 도심하천(계양천 외 4개 하천) 수초목 제거공사 계획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460,000	455,410	-	4,590	
2025	300,000	272,347	-	27,653	
2026	-	-	-	-	2.15.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해양하천과	사업규모	하천 수초목제거(5개소)	1회추경 요구액 (천원)	450,000
부기명 (세부사업)	수초목 제거	사업위치	관내 지방하천 5개소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친수조성팀장 황지영	담당자	시설7급 박성민	전화	5412
		하천관리팀장 임수진		시설8급 김현섭		5430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사업기간	2026. 3. ~ 2026. 6.	사업위치	봉성포천 외 3개 하천
사업규모	관내 지방하천 4개소, 퇴적토사 준설		
사업목적	퇴적토사 준설 실시로 유수의 흐름을 개선하여 사전재해 예방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하천법	제92조 제1항
		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해당조례	하천법	제27조 제7항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⑦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100,000	180,000	0	180,000	80,000	
국비		0			0	
도비	100,000	180,000		180,000	80,00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80,000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401-01 시설비	· 소규모 준설 : 15,000원 * 준설량 12,000m³	= 180,000	

□ 예산요구 사유

-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여 통수단면 확보 및 유수흐름 개선을 통하여 사전재해 예방

□ 예산증감 사유

- 도비(100%) 보조사업 내시를 반영하여 예산편성
○ 2026년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소규모 준설사업 예산배분 알림[경기도 하천과-1248(2025. 1. 20.)]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3. : 사업발주 및 착공
 - 2026. 06. : 사업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거물대천 소규모 준설공사 · 봉성포천 소규모 준설공사 · 양택천 소규모 준설공사 · 서암천 소규모 준설공사 · 국사천 소규모 준설공사 · 포내천 풍수해예방 소규모 준설공사
2025	· 봉성포천 소규모 준설공사 · 포내천 소규모 준설공사
2026	· 봉성포천 외 3개소 소규모 준설 계획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410,000	406,421	-	3,579	
2025	100,000	82,407	-	17,593	
2026	-	-	-	-	2.15.기준 집행현황

하천 시설물 설치공사

사업기간	2026. 1. ~ 2026. 6.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하천
사업규모	관내 하천 및 친수공간 유지관리·보수		
사업목적	하천 유지보수 및 수초목 제거 실시로 유수 흐름 개선, 시민 친수공간 유지관리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소하천정비법	제36조 제6항
제36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제6항 소하천 등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700,000	300,000	400,000	70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700,000	300,000	400,000	70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00,000	
하천 시설물 설치 공사	401-01 시설비	· 하천 제방 및 호안 보강공사 - 호안 블럭 설치 700m(우안 L=380m, 좌안 L=320m) : 571,429원 * 700m = 경정(700,000,000원)-기정(300,000,000원)	400,000	

□ 예산요구 사유

- '25년 극한호우에 의한 울안천 제방 붕괴발생 및 토사 유실 등으로 제방의 안정성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로 추가 붕괴 위험
- 제방 대부분 농지와 맞닿아 있어 붕괴 시 큰 피해가 예상되며 우기 전 긴급 복구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울안천 제방붕괴에 따른 긴급 보수 공사비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8. : 제방 붕괴 확인
 - 2025. 11. : 실시설계 완료
 - 2026. 03.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 2026. 04. : 공사착공
 - 2026. 06. : 공사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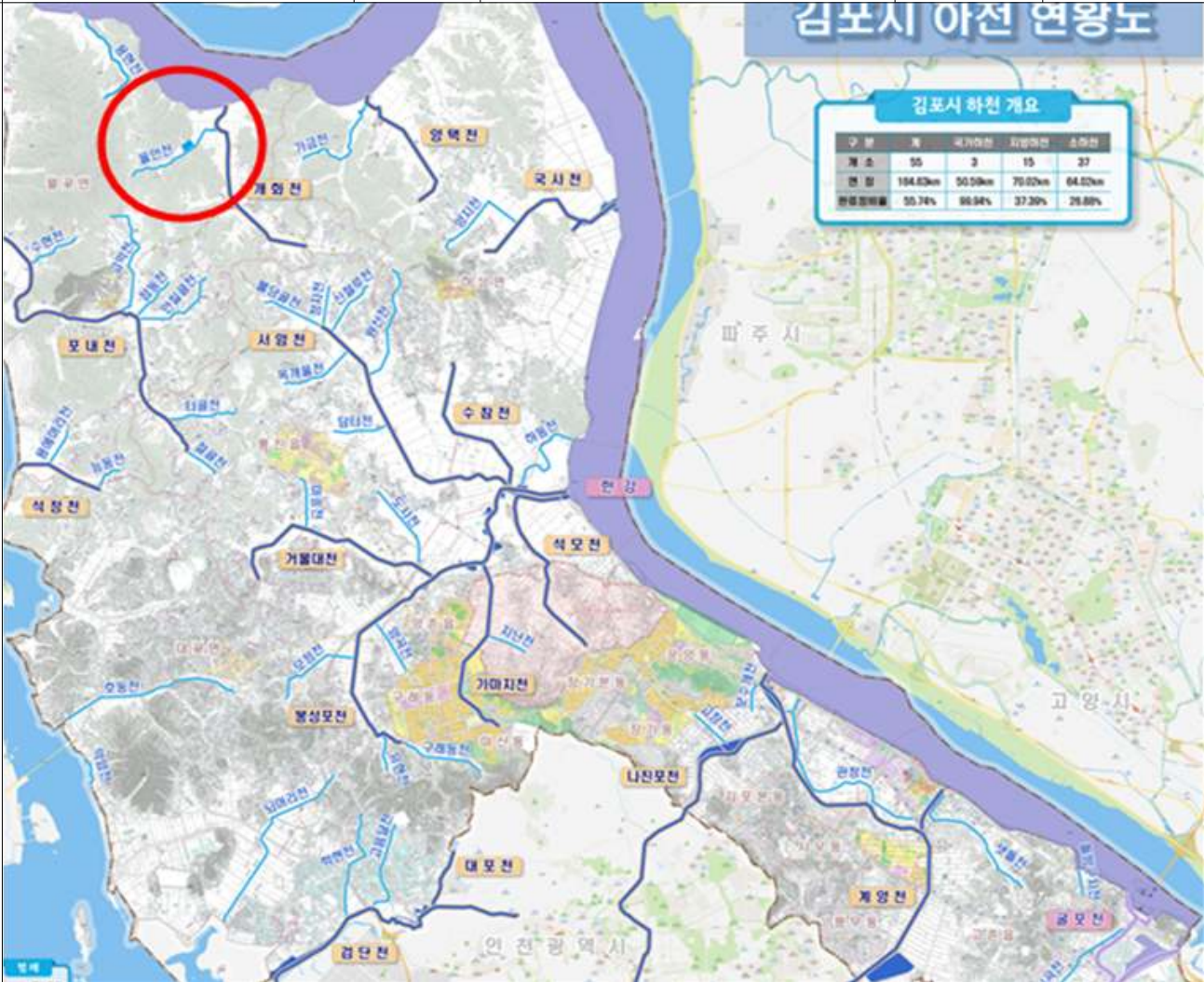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신곡천 호안 보수공사 · 포내천 제방도로 보수공사 · 하천 환경개선 및 시설물 정비
2025	· 하천 환경개선 및 시설물 정비 · 포내천 제방도로 보수공사 · 봉성포천 제방도로 보수공사
2026	· 하천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 · 울안천 응급복구 계획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300,000	-	-	300,000	2.15.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해양하천과	사업규모	제방보수 700m	1회추경 요구액 (천원)	400,000																				
부기명 (세부사업)	하천 제방 및 호안 보강공사	사업위치	월곶면 조강리 226-80(울안천)																						
위치도	 김포시 하천 개요 <table><tr><th>구분</th><th>계</th><th>북강하천</th><th>지평하천</th><th>소정하천</th></tr><tr><td>개소</td><td>55</td><td>3</td><td>15</td><td>37</td></tr><tr><td>연장</td><td>194.83km</td><td>50.59km</td><td>70.02km</td><td>64.22km</td></tr><tr><td>관류면적비율</td><td>55.74%</td><td>86.94%</td><td>37.30%</td><td>29.80%</td></tr></table>					구분	계	북강하천	지평하천	소정하천	개소	55	3	15	37	연장	194.83km	50.59km	70.02km	64.22km	관류면적비율	55.74%	86.94%	37.30%	29.80%
구분	계	북강하천	지평하천	소정하천																					
개소	55	3	15	37																					
연장	194.83km	50.59km	70.02km	64.22km																					
관류면적비율	55.74%	86.94%	37.30%	29.80%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하천관리팀장 임수진	담당자	공업8급 김태호	전화	5429
-----	-------	------------	-----	----------	----	------

어업지도선 관리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해·내수면 및 항·포구 5개소
사업규모		어업지도선 1척, 행정선 1척		
사업목적		수산자원 보호 및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위한 어업지도선 운영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어선법		제37조의2 제1항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어선의 건조·개조·등록·설비·검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그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2,000	7,500	1,500	6,000	5,5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000	7,500	1,500	6,000	5,500	
기타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000	
어업지도선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 행정선 유지관리 (유류비, 점검비, 지방관공선 공제회비 등)	= 6,000	

□ 예산요구 사유

- 2026. 1. 1.자로 재난안전과 → 해양하천과 관리 전환된 행정선 운항을 위한 유지관리비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재난안전과 행정선 유지관리비를 감액하고 해양하천과로 해당 예산만큼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12. : 행정선 운항을 위한 유류비, 청소비, 점검비, 육상견인 등 관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2025	
2026	· 행정선 유류비, 점검비, 공제회비 등 납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900	1,408	-	492	
2025	2,000	1,060	-	940	
2026	1,500	-	-	1,500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해양수산팀장 김준환	담당자	해양수산7급 안영준	전화	5451
-----	-------	------------	-----	------------	----	------

어구부표 보증금제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대명항
사업규모		폐어구 13톤 수거·회수 및 홍보 물품 구입		
사업목적		어구부표 보증금 표식을 부착하여 해양오염 방지 및 해양환경개선 조치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수산업법		제80조 제1항
		제80조(폐어구 수거·처리에 관한 사업 등) ① 행정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어구 수매사업 등 폐어구의 수거·처리에 관한 사업을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17,000	0	17,000	17,000	
국비		8,500		8,500	8,500	
도비		4,250		4,250	4,250	
시비		4,250		4,250	4,250	
기타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7,000	
어구부표 보증금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폐어구(통발, 자망 등) 수거·회수 비용: 800,000원(톤당)*13톤 · 홍보물품: 6,600원*1,000개	= 10,400 = 6,600	

□ 예산요구 사유

- 어구부표 보증금을 통하여 폐어구로 인한 해양쓰레기 발생량 감소 및 해양 환경오염 예방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어구·부표 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 내시 통보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3. : 사업계획 수립 및 위·수탁 계약 체결
 - 2026. 03. ~ 2026. 11. : 어구부표 보증금제 사업 추진
 - 2026. 12. : 사업 완료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2025	· 홍보물품 구입
2026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0,588	-	10,588	-	
2025	10,588	3,756	-	6,832	
2026	-	-	-	-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해양수산팀장 김준환	담당자	해양수산9급 장서진	전화	5456
-----	-------	------------	-----	------------	----	------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사업기간	2026. 3. ~ 2026. 11.	사업위치	관내 항·포구
사업규모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요원 2명		
사업목적	해양폐기물이 집중하여 발생하는 취약해안에 대한 폐기물 수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수거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2조
		제12조(해안폐기물의 수거)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의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이하 “해안폐기물”이라 한다)을 수거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안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안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③ 해안폐기물의 수거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해안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48,000	32,400	15,600	48,000	
국비		24,000	16,200	7,800	24,000	
도비		12,000	8,100	3,900	12,000	
시비		12,000	8,100	3,900	12,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5,600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요원 경정(3,000,000원*2명*8개월)-기정(2,700,000원*2명*6개월) =	15,600	

□ 예산요구 사유

- 대명항 등 성수기 해양폐기물이 집중하여 발생하는 취약해안에 대한 해안가 폐기물 수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수거 및 2차 해양환경오염 방지

□ 예산증감 사유

- 국도비 변경내시(기간제 고용기간 당초 6개월 → 8개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승인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2025. 9.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3. :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요원(2명) 모집
 - 2026. 04. ~ 2026. 11. :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2025	·
2026	· 신규사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32,400	-	-	32,400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해양수산팀장 김준환	담당자	해양수산7급 박성원	전화	5452
-----	-------	------------	-----	------------	----	------

수산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수산소식 및 정보지 73부		
사업목적	어업인에게 최신 경향의 수산정보지를 제공함으로써 어가소득 증대 및 어업기술 향상에 기여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
		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래의 수산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전업수산인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수산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수산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업수산인을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업수산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6,570	4,410	2,160	6,570	
국비		0			0	
도비		1,314	1,323	-9	1,314	
시비		5,256	3,087	2,169	5,256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160	
수산소식 및 정보제공	201-01 사무관리비	· 수산소식 및 정보 제공지 경정(7,500원*12개월*73명)-기정(7,500원*12개월*49명)	= 2,160	

□ 예산요구 사유

- 어업인들에게 최신 어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업기술을 향상하여 급변하는 시장에 신속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

□ 예산증감 사유

- 신규사업 변경내시[정보지 제공 인원 증가 및 도비 보조비율 변경(도:시 3:7 → 2:8)]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6.11.반영예정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3. : 수산소식 및 정보지 구독계약
 - 2026. 03. ~ 2026. 12. : 수산소식 및 정보지 제공
 - 2026. 12. : 사업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2025	
2026	· 신규사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4,410	-	-	4,410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해양수산팀장 김준환	담당자	해양수산7급 박성원	전화	5452
-----	-------	------------	-----	------------	----	------

불법어업 관리

사업기간	2026. 3. ~ 2026. 6.	사업위치	경인해역
사업규모	민간당직선(김포시 어선) 1척		
사업목적	인천광역시 해역 야간조업 허용에 따른 민간당직선 운영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조업 및 항행의 제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60,000	0	60,000	60,000	
국비	0	0		0	0	
도비	0	0		0	0	
시비	0	60,000		60,000	60,000	
기타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0,000	
불법어업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어선 임차비 : 280,000원*60일=16,800,000원 = 16,800 · 어선 유류비 : [(80km ÷ 0.1km/L) × 900원]*60일=43,200,000원 = 43,200 ※ 어업인 인건비 미포함		

□ 예산요구 사유

- 해양수산부는 인천해역 내 어장의 야간조업·항행을 제한하였으나, 44년 만에 복위 37도 30분 이남해역에서 성어기인 2026. 3. ~ 2026. 6월까지 야간조업과 항행을 전면 허용
- 이에 따라, 안전 확보를 위해 어업지도선(인천광역시) 및 민간당직 어선(김포시)을 배치하고 경기도 (김포시)·인천시가 1주일씩 교대로 자체 당직 운영을 위한 어선 임차, 유류비 등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인천광역시 해역 내 야간 조업·항행 제한 해제에 따라, 민간 당직 어선 배치 및 운영하며 어선 임차·유류비 등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
일자	2026.11.반영예정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2. : 사업계획 수립
 - 2026. 03. ~ 06. : 불법어업 관리
 - 2026. 07. : 사업 완료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2025	
2026	· 신규사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	-	-	-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해양수산팀장 김준환	담당자	해양수산9급 장서진	전화	5456
-----	-------	------------	-----	------------	----	------

풍무동 계양천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사업

사업기간	2026. 4. ~ 2026. 12.	사업위치	풍무동 계양천 산책로(풍무동 525-23 외 5필지)
사업규모	풍무1교 ~ 풍무2교 벚꽃길 구간 700m		
사업목적	· 풍무동 계양천 벚꽃 산책로 구간에 경관조명을 설치해 야간 통행 안전 확보 · 계양천 산책로 야간 경관 개선을 통해 주민 이용 활성화 및 야간 도시 활력 증진에 기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하천법 국가하천법령 위임규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1항 국가는 하천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정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294,600	0	294,600	294,6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94,600		294,600	294,600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94,600	
풍무동 계양천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사업	401-01 시설비	· 풍무동 계양천 벚꽃길 야간경관 조명 설치 - LED 경관조명 설치, 전기 기초공사, 조명 기구 및 부속품 등	= 294,600	

□ 예산요구 사유

- 계양천 벚꽃길 야간 이용 증가에 따른 보행 안전 확보 및 경관 개선 필요
- 경관조명 설치를 통해 주민 이용 편의 증진 및 지역 명소화 기반 마련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예산(환경정책과) 확보에 따른 사업예산 편성
[한국공항공사 65%(191,500천원), 시비 35%(103,100천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
일자	2026.11.반영예정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9. : 2026년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 신청
 - 2026. 01. : 2026년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승인 통보
 - 2026. 04. ~ 06. : 경관조명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 2026. 08. ~ 2026. 12. : 공사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2025	
2026	· 신규사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	-	-	-	2.15.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해양하천과	사업규모	풍무1교 ~ 풍무2교 벚꽃길 구간 700m에 경관조명 및 제반 시설 설치	1회추경 요구액 (천원)	294,600
부기명 (세부사업)	풍무동 계양천 벚꽃길 야간경관 조명 설치	사업위치	풍무동 525-23 외 5필지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친수조성팀장 황지영	담당자	녹지8급 이나경	전화	5415
-----	-------	------------	-----	----------	----	------

배수펌프장 정비

사업기간	2026. 3. ~ 2026. 6.	사업위치	운양1배수펌프장(김포시 금포로 1127)
사업규모	권양기 제어반 6대 교체		
사업목적	노후 시설물 정비 등 안정적인 배수펌프장 설비 성능 유지를 통해 침수피해 최소화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하천법	제2조 및 제4조
		[하천법 제2조]	
		3.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지하하천·방수로· 배수펌프장 ·수문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하천법 제4조]	
		① 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1,152,000	405,000	255,000	150,000	-747,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152,000	405,000	255,000	150,000	-747,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50,000	
배수펌프장 정비	401-01 시설비	· 운양1배수펌프장 게이트펌프 권양기 제어반 교체 : 25,000,000원*6대 =	150,000	

□ 예산요구 사유

- 배수펌프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 시설로 노후시설 교체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과 성능 유지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운양1배수펌프장 게이트펌프 권양기 제어반(2011년 설치) 노후화에 따른 시설 교체비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3. : 공사착공
 - 2026. 06. : 공사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봉성2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교체공사 · 제촌, 월드배수펌프장 노후 제어설비 교체공사 · 노을간이펌프장 배수펌프 교체공사 · 도사간이펌프장 우수관로 침하부 보강공사 · 노을간이펌프장 기동반 증설 공사 · 배수펌프장 예초 및 관목전정 공사 · 월드배수펌프장 외 7개소 준설공사 · 배수펌프장 토목 및 건축구조물 보수·보강공사
2025	· 운양배수펌프장 노후 계단 교체 · 봉성3배수펌프장 제진기 점검로 설치 · 향산1·3배수펌프장 제어설비 교체 · 석탄배수펌프장 외 3개소 준설 · 봉성2·3배수펌프장 유입부 준설 · 배수펌프장 예초 및 관목전정 · 향산2배수펌프장 진입도로 재포장
2026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2,121,278	2,089,328	12,762	19,188	
2025	1,164,762	729,462	424,536	10,764	
2026	679,536	-	-	679,536	2.15.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해양하천과	사업규모	권양기 제어반 6대 교체	1회추경 요구액 (천원)	150,000
부기명 (세부사업)	운양1배수펌프장 게이트펌프 권양기 제어반 교체	사업위치	김포시 금포로 1127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방재시설팀장 이동근	담당자	공업7급 손준영	전화	5443
-----	-------	------------	-----	----------	----	------

지방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기간	2026. 2. ~ 2026. 6.	사업위치	후평1 배수문 외 2개소
사업규모	지방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3개소		
사업목적	지방하천 배수문의 원격 감시제어 시스템 설치를 통한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 구축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제1항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746,000	500,000	0	500,000	-246,000	
국비		0			0	
도비	746,000	500,000	0	500,000	-246,00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00,000	
지방하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	401-01 시설비	· 노후 배수문 시설 교체 * 3개소 = 212,000,000원 · 전기 인입공사 * 3개소 = 9,100,000원 · 원격 감시제어 설비 구축 * 3개소 = 278,900,000원	= 212,000 = 9,100 = 278,90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지원사업(지방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자금교부에 따른 추경예산 반영[경기도 하천과-638(2026. 1. 12.)]

□ 예산증감 사유

- 작년 대비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개소 감소(5개소 → 3개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6.11.반영예정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2. : 설계용역 및 사업발주
 - 2026. 03. : 사업착수
 - 2026. 06. : 사업완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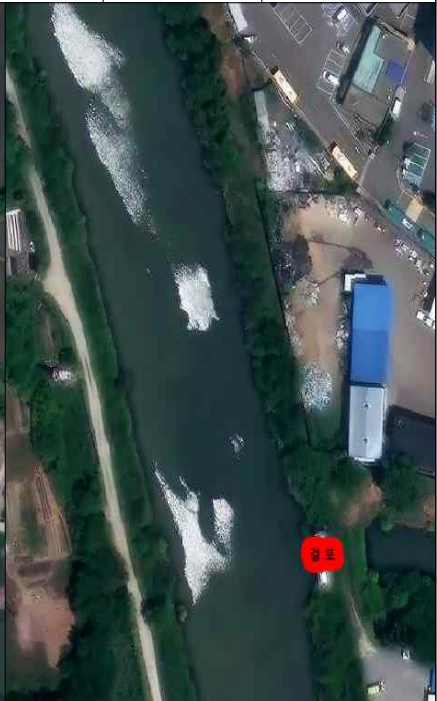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2025	· 지방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5개소 구축(누산2, 누산3, 포내, 고양, 천현2 배수문)
2026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746,000	695,581	-	50,419	
2026	-	-	-	-	2.15.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해양하천과	사업규모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3개소 구축	1회추경 요구액 (천원)	500,000
부기명 (세부사업)	지방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위치	후평1 배수문 외 2개소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방재시설팀장 이동근	담당자	공업8급 이상진	전화	5446
-----	-------	------------	-----	----------	----	------

유수지 유지관리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장기동 2006 외 30개소
사업규모	유수지 31개소		
사업목적	여름철 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수지(우수 유출 저감시설) 유지관리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적근거	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제3항 제5호
	위임규정	5. 재해의 예방을 위한 우수유출저감시설 관리방안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529,000	613,000	533,000	80,000	84,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29,000	613,000	533,000	80,000	84,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0,000	
유수지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 유수지 방류부 구조물 보수·보강공사 : 80,000,000원 =	80,000	

□ 예산요구 사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실시한 유수지 방류부 정밀안전점검용역 결과 구조물의 균열 및 복류수 침투 등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확인되어 보수·보강공사 추진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유수지 방류부 구조물 보수·보강공사 추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3.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 2026. 04. : 공사계약 및 착공
 - 2026. 05. : 공사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유수지 11개소 퇴적토사 준설공사 · 유수지 11개소 준설토 폐기물처리 용역 · 유수지 유지관리공사(예초 및 관목전정)-1,2권역 · 청수유수지 외 4개소 안전헨스보수 및 출입문 설치공사 · 마성교회유수지 외 2개소 시설정비공사 · 걸포공원유수지 안전헨스 정비공사 등
2025	· 유수지 12개소 퇴적토사 준설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 · 유수지 예초 및 관목전정공사(1,2권역) · 유수지 주의사항 안내표지판 구매설치 · 유수지 유용미생물 투입 살수차 용역 · 한가람유수지 외 3개소 안전헨스 보수공사 등
2026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497,000	486,736	-	10,264	
2025	529,000	507,858	-	21,142	
2026	533,000	-	-	533,000	2.15.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해양하천과	사업규모	유수지 방류부 2개소 보수·보강	1회추경 요구액 (천원)	80,000
부기명 (세부사업)	유수지 방류부 구조물 보수·보강공사	사업위치	운양동 1279-1 외 1개소		
위치도					
	유수지 방류부 E		유수지 방류부 F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방재시설팀장 이동근	담당자	시설7급 지정은	전화	5442
-----	-------	------------	-----	----------	----	------

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

사업기간	2026. 3. ~ 2026. 7.	사업위치	관내하천(봉성포천, 계양천, 포내천)
사업규모	하천 출입차단시설 9개소 설치 (봉성포천 2개소, 계양천 4개소, 포내천 3개소)		
사업목적	호우로 인한 수위 상승 시 하천변에 접근을 통제하여 시민 안전 도모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2 제2항
	위임규정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420,000	180,000	0	180,000	-240,000	
국비		0			0	
도비	210,000	90,000		90,000	-120,000	
시비	210,000	90,000		90,000	-12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80,000	
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	401-01 시설비	· 하천 차단시설 설치 : 20,000,000원*9개소 =	180,000	

□ 예산요구 사유

- 기상이변으로 호우특보의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도심하천 하천산책로 등 이용률이 많은 하천에 대하여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설설치 필요(경기도 자연재난과-26745 확정)
- 자동차단시설, CCTV 등의 설치로 호우 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신속한 통제를 실시

□ 예산증감 사유

- 하천차단시설 설치 대상지 감소 (25년 21개소, 26년 9개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3. : 보안성검토 및 행정예고 등 사전절차 이행
 - 2026. 04. : 차단시설(차단기, CCTV 등) 구매·설치
 - 2026. 05. : 하천차단시스템 연계
 - 2026. 07. : 시운전 및 설치완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자동차단시설 25개소 설치 · 수위계 2개소 설치
2025	· 자동차단시설 21개소 설치
2026	· 자동차단시설 9개소 설치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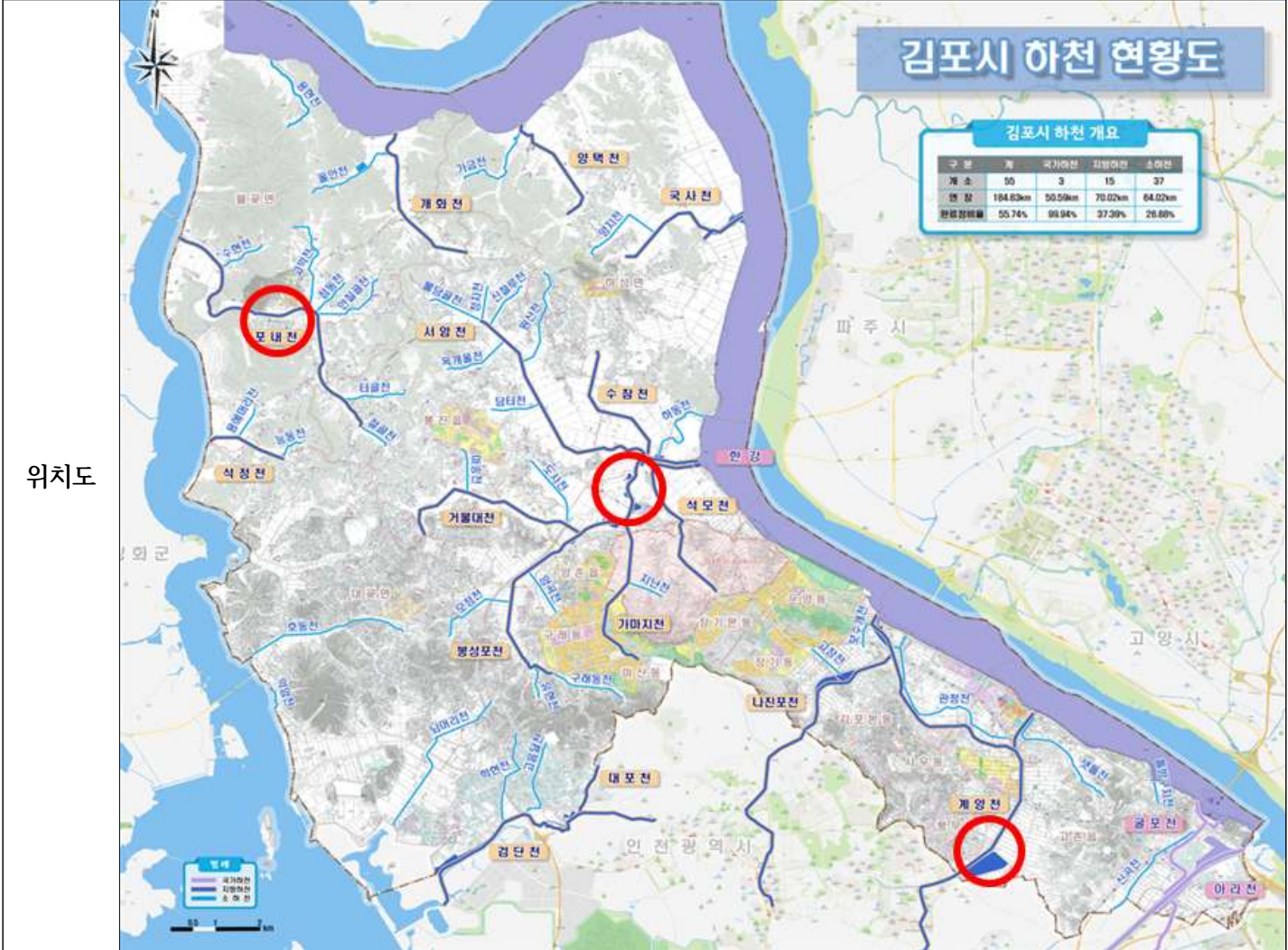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836,000	-	836,000	-	
2025	1,256,000	1,196,784	-	59,216	
2026	-	-	-	-	2.15.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해양하천과	사업규모	자동차단시설 9개소 설치	1회추경 요구액 (천원)	180,000
부기명 (세부사업)	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	사업위치	포내천, 봉성포천, 계양천		



□ 사업부서 및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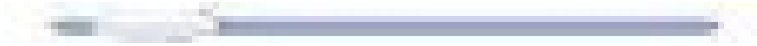
부서명	해양하천과	하천관리팀장 임수진	담당자	공업8급 김태호	전화	5429
-----	-------	------------	-----	----------	----	------

교통건설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교통정책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관내 고령운전자 대상		
사업목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0호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 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交通安全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1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56,100	56,900	46,500	10,400	800	
국비	16,830	17,070	13,950	3,120	240	
도비	19,635	19,915	16,275	3,640	280	
시비	19,635	19,915	16,275	3,640	28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400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301-14 기타 보상금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 일반반납자 100,000원 * 경정(155명)-기정(155명) - 실운전증빙자 200,000원 * 경정(207명)-기정(155명)	= 10,400	

※ 경찰청 교통기획과-9307(2025. 9. 12.)호와 관련 지급 방법 변경(실운전증빙자에 대하여 20만원 지급)

□ 예산요구 사유

○ 관내 고령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를 통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 예산증감 사유

○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7. 11. : 「김포시交通安全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2020. 8. 1.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간소화 원스톱 서비스 시행
 - 2022. 9. ~ : 매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 10만원 김포페이 지급
※ 2025. 2월 예산 소진
 - 2026. 1. ~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추진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사람
 - 지원방식 : 1인당 10만원 또는 20만원(실운전증빙자) 상당의 김포페이 카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김포페이 카드 600매 지급(1인당 10만원)
2025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김포페이 카드 537매 지급(1인당 10만원)
2026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진행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53,700	53,700	-	-	
2025	56,100	56,100	-	-	
2026	46,500	-	-	46,500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교통물류정책팀장 박상우	담당자	시설7급 최재민	전화	5924
-----	-------	--------------	-----	----------	----	------

교통신호등 정비사업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도로 일원
사업규모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관리(903개소)		
사업목적		교통신호기 유지관리를 통하여 원활한 교통신호 운영 및 교통사고 예방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2,081,404	1,750,000	1,525,000	225,000	-331,404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081,404	1,750,000	1,525,000	225,000	-331,404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25,000	
교통신호등 정비사업	401-01 시설비	.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공사 : 7,500,000 * 30대 =	225,000	

□ 예산요구 사유

-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 예산증감 사유

- 2004년형 노후 교통신호제어기는 통신 미지원으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연동이 불가하여, 긴급차량 출동 시 일부 교차로에서 우선신호 제어가 제한됨
-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해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대상 668대 중 30대 우선 교체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4. ~ 5. :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대상지(30대) 선정
 - 2026. 6. ~ 8. :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공사 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 교통신호등 운영 전문기관(도로교통공단) 위수탁 협약 체결
2025	-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 교통신호등 운영 전문기관(한국도로교통공단) 위수탁 협약 체결 - 교통신호등 전기 계약종별 변경공사, 교통신호등 노후 철주 교체공사,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공사 ※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공사 : 34대 교체, 274,917천원 지출
2026	-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 교통신호등 운영 전문기관(도로교통공단) 위수탁 협약 체결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640,200	1,498,622	-	141,578	
2025	2,081,404	2,032,596	-	48,808	
2026	1,525,000	204,000	-	1,321,000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장 박기성	담당자	시설8급 김수은	전화	2482
-----	-------	------------	-----	----------	----	------

김포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수립 용역

사업기간	2026. 4. ~ 2027. 3.		사업위치	경기도 김포시	
사업규모	교통분야 법정계획(3개) 통합 수립				
사업목적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교통여건을 반영하고 교통약자 및 보행자의 교통편의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연차별 교통계획 수립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교통안전법		제17조 1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군·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 1항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행교통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 1항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이나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1항	
		① 특별시장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보행 관련 계획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490,000	0	490,000	490,000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490,000	0	490,000	490,00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90,000	
김포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수립 용역	207-01 연구용역비	· 김포시 교통분야 법정계획 수립 용역 - 직접인건비 = 145,230 - 직접경비(조사비, 공고비, 인쇄비 등) = 77,250 - 제경비(직접인건비 × 110%) = 159,750 - 기술료((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 61,000 - 손해배상보험료 = 2,220 - 부가가치세(공급가액 × 10%) = 44,550		

□ 예산요구 사유

- 교통안전기본계획, 보행교통개선계획(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
-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교통여건을 반영하고 교통약자 및 보행자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연차별로 집행가능한 교통계획 수립 필요
- 3개 분야의 교통계획을 개별 발주하는 경우 계획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어려우며 기술료 및 조사비 중복으로 용역비가 과다 소요됨에 따라, 통합발주를 통해 용역비를 절감하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통업무지침 마련

□ 예산편성 사유

- 기 수립한 교통분야 법정계획의 시간적범위 만료 예정에 따라 5년 단위 법정 계획 수립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4. : 행정절차 이행(계약심사 등)
 - 2026. 5. : 과업 착수
 - 2026. 9. : 중간보고회,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 의견청취
 - 2026. 12. : 지방교통위원회 심의 상정(경기도 심의 의뢰)
 - 2027. 3. : 과업 준공 및 확정·고시

□ **최근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 추진실적**

2024	-
2025	-
2025	-

○ **최근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	-	-	-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교통물류정책팀장 박상우	담당자	시설7급 최재민	전화	5924
-----	-------	--------------	-----	----------	----	------

노면표시 설치 및 재도색

사업기간	2026. 4. ~ 7.	사업위치	구래동 상업지역 일원
사업규모	노면표시 도색 및 재도색		
사업목적	노면표시 정비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교통법	제2조 16호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조
		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100,000	0	100,000	100,000	
국비		0		0	0	
도비		50,000		50,000	50,000	
시비		50,000		50,000	50,00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0	
노면표시 설치 및 재도색	401-01 시설비	· 구래동 상업지역 노면표시 정비공사 : 40,000원 * 2,500㎡ =	100,00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보조금 확정에 따라 구래동 상업지역 일원 노면도색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함.
- 관련문서 : 경기도 안전기획과-20849(2025.11.7.)호 및 김포시 재난안전과-313(2026.1.6.)호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보조금 확정내시 알림(소방안전교부세)

□ 예산증감 사유

- 블록식 차도로 설치되어 쉽게 노후화되는 구래동 상업지역의 노면차선 도색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
일자	2026.11.반영예정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4.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2026. 5. ~ 7. : 구래동 상업지역 노면표시 정비공사 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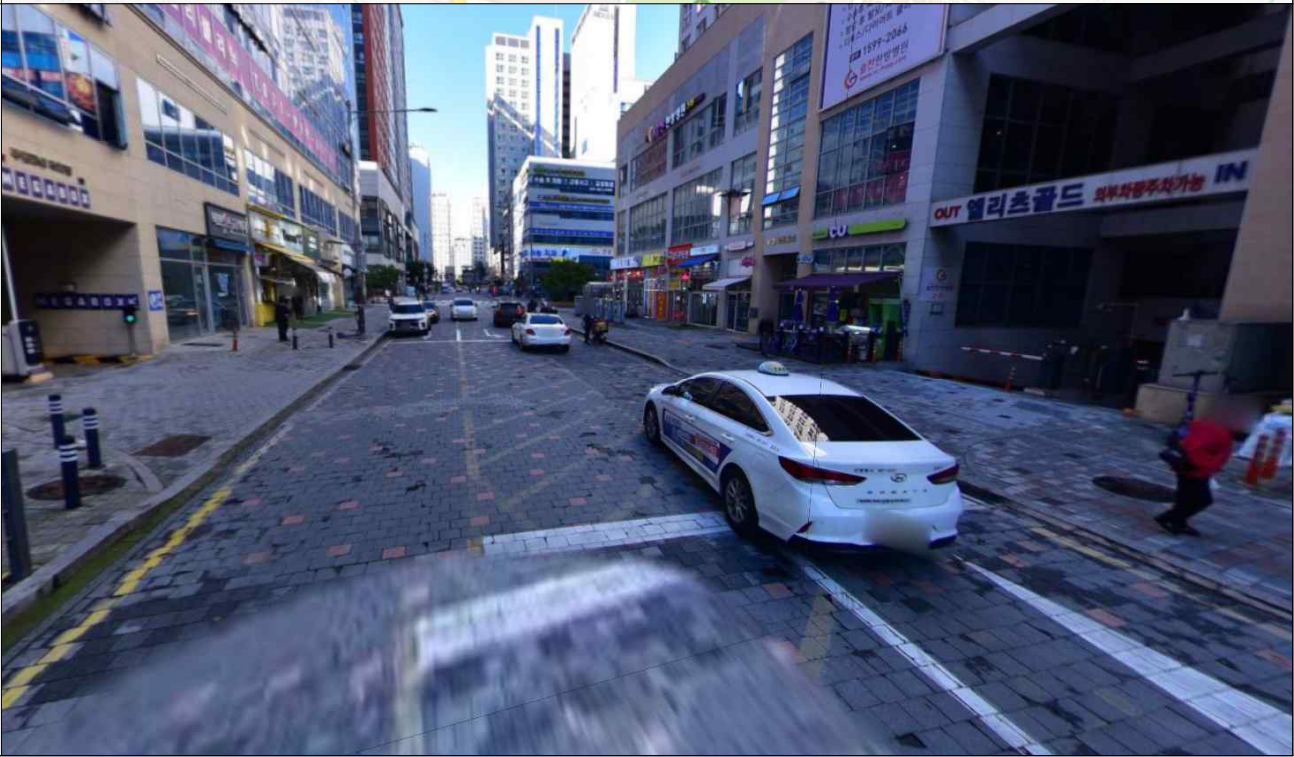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2025	-
2026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	-	-	-	2.15.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교통정책과	사업규모	2,500㎡	1회추경 요구액 (천원)	100,000
부기명 (세부사업)	구래동 상업지역 노면표시 정비공사	사업위치	구래동 상업지역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장 박기성	담당자	시설7급 문나연	전화	2871
-----	-------	------------	-----	----------	----	------

고원식횡단보도 유지관리 사업

사업기간		2026. 4. ~ 9.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법정도로
사업규모		고원식횡단보도 10개소 정비 고원식횡단보도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		
사업목적		고원식횡단보도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100,000	0	100,000	100,000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100,000		100,000	100,00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0	
고원식 횡단보도 유지관리 사업	401-01 시설비	· 고원식횡단보도 유지관리 : 10,000천원 * 10개소	= 100,000	

□ 예산요구 사유

-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 필요
- 노후화·훼손된 고원식 횡단보도의 지속적인 정비와 보수로 차량 주행 안정성 제고 및 시민 불편 해소

□ 예산증감 사유

- 도로포장 노후화, 교통량 증가 등 교통환경 변화로 파손·침하된 고원식 횡단보도 정비
-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 지역 고원식 횡단보도 우선 설치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
일자	2026.11.반영예정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4. : 행정절차 진행
 - 2026. 5. ~ 9. : 고원식횡단보도 설치 및 유지보수 공사 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2025	-
2026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	-	-	-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장 박기성	담당자	시설7급 문나연	전화	2871
-----	-------	------------	-----	----------	----	------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국비)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특별교통수단 노후차량 8대 교체 구입		
사업목적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편의 증진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1항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208,000	454,000	392,000	62,000	246,000	
국비	98,000	196,000	196,000		98,000	
도비		0			0	
시비	110,000	258,000	196,000	62,000	148,00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2,000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국비)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 경정(56,750,000원*8대)-기정(49,000,000원*8대)	= 62,000	

□ 예산요구 사유

- 특별교통수단 8대(연식 2017년) 내용연수 초과 및 차량 노후(운행거리 300,000km 초과)로 교체

□ 예산증감 사유

- '26년형 카니발 차량 및 개조 비용 상승으로 추가 예산 필요
 - 디젤 차량 단종에 따른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구입
(국비 보조금 내시 산출기초 1대당 49,000천원이나, '26년형 차량 가격 1대당 예상가격 56,750천원)
- 차량 노후화로 인해 잦은 고장으로 안전사고 위험 및 수리 비용 과다 발생에 따른 차량 교체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4. : 사업집행(차량구매-조달청)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운행건수 : 76,063건 · 이 용 객 : 101,193명
2025	· 운행건수 : 78,428건 · 이 용 객 : 116,218명
2026	· 운행건수 : 6,643건 · 이 용 객 : 9,558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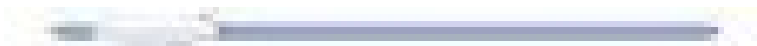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208,000	207,180	-	820	
2026	392,000	-	-	392,000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교통물류정책팀장 박상우	담당자	행정6급 서호진	전화	2464
-----	-------	--------------	-----	----------	----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 업 설 명 서

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 서 명	대중교통과
기 정 액	14,685,639천원	요 구 액	-747,246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장·관·항·목 ◎부기명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세입내용·산출내역·증감사유
		최종예산 (B=C+D)	본예산 (C)			
세외수입	776,081	531,068	527,100	3,968	245,013	
경상적세외수입	260,192	297,068	293,100	3,968	36,876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2023년 경기도 공공 버스 운영지원 사업 발생 이자	0	3,968	0	3,968	3,968	· 세입내용 : 2023년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 사업 결산에 따른 발생 이자 수입 · 산출내역 : 경기교통공사 2023년 사업비 결산에 따른 사업비 계좌 해지 이자 · 증감사유 : 경기교통공사측 결산이 늦어짐에 따라 26년 본예산 미반영(22년 결산은 24년 반영)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 운영 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김포시 시내버스 와이파이 479대		
사업목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계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으로 관내 시내버스 이용 시민들의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인터넷 이용의 확산)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 이용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인터넷 이용 기반을 확충하며, 지역별·성별·연령별 인터넷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102,393	102,988	129,330	-26,342	595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02,393	102,988	129,330	-26,342	59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사업	201-02 공공운영비	· (경정) 17,917원*479대*12개월 - (기정) 22,500원*479대*12개월 =	-26,342	

※ 국비 부담금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직접 납부, 국비 세입예산 대상 아님

□ 예산요구 사유

○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기조로 2018년 하반기부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임

□ 예산증감 사유

○ 국비 보조내시에 따른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월 회선료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12. :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 완료
 - 2020. 01. ~ 2023. 05. : 정상 운영 및 요금 납부(478대)
 - 2023. 06. ~ 2025. 12. : 정상 운영 및 요금 납부(450대)
 - 2026. 01. ~ 2026. 12. : 정상 운영 및 요금 납부 예정(479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감소(28대),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450대) 운영
2025	-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450대) 운영
2026	- 집행 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01,884	101,884	-	-	
2025	102,393	102,392	-	1	
2026	129,330	-	-	129,330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마을버스티eam장 유종오	담당자	행정6급 김윤영	전화	5917
-----	-------	---------------	-----	----------	----	------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김포시 광역버스 와이파이 189대		
사업목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계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으로 관내 광역버스 이용 시민들의 정보 통신 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4조(인터넷 이용의 확산)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 이용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인터넷 이용 기반을 확충하며, 지역별·성별·연령별 인터넷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84,825	78,209	102,060	-23,851	-6,616	
국비		0				
도비	25,447	23,463	30,618	-7,155	-1,984	
시비	59,378	54,746	71,442	-16,696	-4,632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3,851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 (경정) 34,484원*189대*12개월 - (기정) 45,000원*189대*12개월 =	-23,851	

□ 예산요구 사유

-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기조로 2018년 하반기부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임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월 회선료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12. : 광역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 완료
 - 2021. 01. ~ 2023. 08. : 정상 운영 및 요금 납부(198대)
 - 2023. 09. ~ 2025. 12. : 정상 운영 및 요금 납부(189대)
 - 2026. 01. ~ 12. : 정상 운영 및 요금 납부 예정(189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광역버스 공공 와이파이(189대) 운영
2025	- 광역버스 공공 와이파이(189대) 운영
2026	- 집행 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84,824	84,823	-	1	
2025	84,825	84,823	-	2	
2026	102,060	-	-	102,060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마을버스티eam장 유종오	담당자	행정6급 김윤영	전화	5917
-----	-------	---------------	-----	----------	----	------

The 경기패스(국비)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김포시 이용자 63,686명		
사업목적	대중교통 실사용액에 대한 환급 지원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유도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5호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5.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해당조례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15조 제1항
		제15조(대중교통 이용 지원) ① 도지사는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에게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5,940,000	9,102,000	9,048,000	54,000	3,162,000	
국비	2,970,000	4,551,000	4,524,000	27,000	1,581,000	
도비	891,000	1,365,300	1,357,200	8,100	474,300	
시비	2,079,000	3,185,700	3,166,800	18,900	1,106,7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4,000	
The 경기패스 (국비)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경정) 9,102,000천원 - (기정) 9,048,000천원	= 54,000	

□ 예산요구 사유

- 2026년 The경기패스 사업 참여에 따른 국도비 내시서 반영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한 시민에게 이용요금 환급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국토교통부 총 사업비 증가에 따른 시·군 부담액도 증가(확정내시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12. : 공기관위탁사업비 지급 및 대중교통비 환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공기관위탁사업비 2,880,000천원 지출
2025	· 공기관위탁사업비 5,940,000천원 지출
2026	· 집행 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2,880,000	2,880,000	-	-	
2025	5,940,000	5,940,000	-	-	
2026	9,048,000	-	-	9,048,000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담당자	행정8급 오희찬	전화	5913
-----	-------	------------	-----	----------	----	------

벽지노선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시내버스 3개 노선 (101번, 102번, 83번)		
사업목적	벽오지 주민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벽지노선 운행손실 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0.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769,427	1,055,360	1,099,182	-43,822	285,933	
국비		316,608	329,755	-13,147	316,608	
도비		0			0	
시비	769,427	738,752	769,427	-30,675	-30,67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3,822	
벽지노선 지원	307-09 운수업계보조금	(경정)1,055,360,000원 - (기정)1,099,182,000원	= -43,822	

□ 예산요구 사유

- 교통취약지역을 운행하는 벽지노선의 운영결손금 보전을 위해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에서 '25년 운행실적을 재산출한 결과 우리 시 총사업비가 감소하여 1회 추경에 감액 편성하는 사항임 (확정 내시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0. : 국비 보조금 가내시 시달
 - 2026. 01. : 확정내시 시달
 - 2026. 01. ~ 12.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급(시→운수업체)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시내버스 3개노선[선진버스(주)] 벽지노선 지원금 지급(745,995천원)
2025	· 시내버스 3개노선[선진버스(주)] 벽지노선 지원금 지급(769,427천원)
2026	· 집행 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745,995	745,995	-	-	
2025	769,427	769,427	-	-	
2026	1,099,182	-	-	1,099,182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담당자	행정9급 홍서정	전화	5916
-----	-------	------------	-----	----------	----	------

경기도 운수종사자 양성교육 자치단체간부담금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사업규모	경기도민 2,200여명		
사업목적	경기도민에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및 양질의 버스 운전자 확보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
		제6조(양성사업) ① 도지사는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종 대형면허 취득비 지원사업 2.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교육 3.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운수업체 연수 교육 지원 4.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홍보 5.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인력 관리 및 일자리 연계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72,400	59,838	0	59,838	-12,562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72,400	59,838	0	59,838	-12,562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9,838	
경기도 운수종사자 양성교육 자치단체간부담금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 김포시 총사업비 119,676천원 * 50% (도비 50%, 시비 50%) =	59,838	

□ 예산요구 사유

- 버스운전자 양성과정 개설을 통해 청·장년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제공 및 운수업체 버스운전자 부족난 해소

□ 예산증감 사유

- 연례 반복 사업으로 경기도 내시 지연되어 1회 추경에 편성(확정내시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경기도 내시 시달
 - 2026. 03. : 자치단체간부담금 납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운수종사자 양성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지급 (시→도) : 51,596,000원 (김포시 수료자 수 38명, 취업자 수 25명)
2025	· 운수종사자 양성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지급 (시→도) : 72,400,000원 (김포시 수료자 수 57명, 취업자 수 34명)
2026	· 집행 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51,596	51,596	-	-	
2025	72,400	72,400	-	-	
2026	-	-	-	-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담당자	행정9급 홍서정	전화	5916
-----	-------	------------	-----	----------	----	------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대광위 광역버스 18개 노선		
사업목적	광역버스의 안정적 운행 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광위 준공영제 운영비 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5,922,411	9,742,487	6,402,371	3,340,116	3,820,076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922,411	9,742,487	6,402,371	3,340,116	3,820,076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340,116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 (경정) 9,742,487,000원 - (기정) 6,402,371,000원 =	3,340,116	

□ 예산요구 사유

- 광역버스의 안정적 운행 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광위 준공영제 운영비 지원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김포시 재정여건에 따라 본예산에 부담지시액의 일부 예산만 편성 후 부족분에 대하여 1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는 사항임 (확정내시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1. : 시군부담액 가내시 시달
 - 2026. 01. ~ 12. : 사업비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경기교통공사 위탁사업비 지급 : 4,546,813,000원
2025	· 경기교통공사 위탁사업비 지급 : 5,922,411,000원
2026	· 집행 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4,546,813	4,546,813	-	-	
2025	5,922,411	5,922,411	-	-	
2026	6,402,371	-	-	6,402,371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담당자	행정9급 홍서정	전화	5916
-----	-------	------------	-----	----------	----	------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경기도 공공버스 1개 노선		
사업목적	경기도 공공버스(준공영제) 운영하여 운수종사자 근무개선 및 운행손실 지원을 통한 안정적 운행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질 제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7,925,487	1,994,444	842,867	1,151,577	-5,931,043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7,925,487	1,994,444	842,867	1,151,577	-5,931,043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151,577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 (경정)1,994,444,000원 - (기정) 842,867,000원	1,151,577	

□ 예산요구 사유

- 광역버스의 안정적 운행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비 지원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위탁사업자인 경기교통공사에서 2025년 사업 정산 결과 김포시 부족분이 발생하여 1회 추경에 예산 증액 편성 (확정내시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1. : 시군부담액 가내시 시달
 - 2025. 12. : 경기도 → 대광위 광역버스 이관
 - 2026. 01. ~ 12. : 사업비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경기교통공사 위탁사업비 지급 : 11,662,833,000원 ※ 이월액 1,889,236천원
2025	· 자치단체간부담금 지급 (시→도) : 7,925,487,000원
2026	· 집행 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1,662,833	11,662,833	-	-	
2025	7,925,487	7,925,487	-	-	
2026	842,867	-	-	842,867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담당자	행정9급 홍서정	전화	5916
-----	-------	------------	-----	----------	----	------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시내버스 5개 노선(53대)		
사업목적	경기도 공공버스(준공영제) 운영하여 운수종사자 근무개선 및 운행손실 지원을 통한 안정적 운행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질 제고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해당조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19조(재정지원) ① 운송사업자는 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입금 현황, 실제 지출액,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도지사에게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확인·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한다. ③ 도지사는 표준운송원가에 해당하지 않으나 시내버스 운송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할 경우 지원금의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5,321,240	7,471,485	6,150,476	1,321,009	2,150,245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321,240	7,471,485	6,150,476	1,321,009	2,150,24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321,009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 (경정) 7,471,485,000원 - (기정) 6,150,476,000원 =	1,321,009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시내버스 도주관 5개의 노선 운행손실금 재정 지원 예산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김포시 재정여건에 따라 본예산에 부담지시액의 일부 예산만 편성 후 부족분에 대하여 1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는 사항임 (확정내시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1. : 시군부담액 가내시 시달
 - 2026. 01. ~ 12. : 사업비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자치단체간부담금 지급 (시→도) : 3,015,582,000원
2025	· 자치단체간부담금 지급 (시→도) : 5,321,240,000원
2026	· 집행 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3,015,582	3,015,582	-	-	
2025	5,321,240	5,321,240	-	-	
2026	6,150,476	-	-	6,150,476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담당자	행정9급 홍서정	전화	5916
-----	-------	------------	-----	----------	----	------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시내버스 10개 노선(87대)		
사업목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준공영제)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 및 위탁수수료 지급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해당조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19조(재정지원) ① 운송사업자는 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입금 현황, 실제 지출액,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도지사에게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확인·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한다. ③ 도지사는 표준운송원가에 해당하지 않으나 시내버스 운송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할 경우 지원금의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5,412,535	11,321,336	14,238,444	-2,917,108	5,908,801	
국비		0			0	
도비	1,623,761	3,396,401	4,271,533	-875,132	1,772,640	
시비	3,788,774	7,924,935	9,966,911	-2,041,976	4,136,161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917,108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 (경정)11,321,336,000원 - (기정) 14,238,444,000원	-2,917,108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시내버스 시주관 10개의 노선 운행손실금 재정지원 예산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본예산 편성 후 경기도에서 예산 재산출 결과 우리시 총 사업비가 감소하여 1회 추경에 감액 편성하는 사항임 (확정내시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1. : 시군부담액 가내시 시달
 - 2026. 01. : 확정내시 시달
 - 2026. 07. : 1002번(12대), 21번(8대) 공공관리제 시행
 - 2026. 01. ~ 12. : 분기별 사업비 지급(시 →경기교통공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운행손실금 3,886,397천원 지급(경기교통공사 위탁사업)
2025	· 운행손실금 5,412,535천원 지급(경기교통공사 위탁사업)
2026	· 운행손실금 1,400,000천원 지급(경기교통공사 위탁사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3,886,397	3,886,397	-	-	
2025	5,412,535	5,412,535	-	-	
2026	14,238,444	1,400,000	-	12,838,444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담당자	행정9급 홍서정	전화	5916
-----	-------	------------	-----	----------	----	------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김포시 택시 672대		
사업목적	택시요금의 카드결제를 위한 단말기 통신료 지원으로 택시업계 재정부담 완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생략)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9조 제4호
		제9조(재정 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및 단말기 통신료 지원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33,370	35,482	14,094	21,388	2,112	
국비		0			0	
도비	12,514	13,306	5,285	8,021	792	
시비	20,856	22,176	8,809	13,367	1,320	
기타		0			0	자부담 8,871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1,388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 경정(5,500원*672대*12월*80%)-기정(5,500원*672대*5월*80%) =	21,388	

□ 예산요구 사유

- 택시요금 카드 결제 시 운송사업자에게 발생하는 통신료를 지원하여 카드 결제 기피 현상 해소
- 운송사업자의 재정적 부담 해소 및 카드 이용 활성화

□ 예산증감 사유

-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 (5월분 내시 → 12월분 내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1. : 도비 보조금 가내시
 - 2026. 01. :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 2026. 01. ~ 12. : 사업집행 (분기별 집행)
 - 2027. 02. : 보조사업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법인택시 146대 3,065,920원 지원 · 개인택시 486대 10,056,640원 지원
2025	· 법인택시 149대 7,695,600원 지원 · 개인택시 486대 25,344,000원 지원
2026	· 집행 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3,349	13,122	-	227	
2025	33,370	33,039	-	331	
2026	14,094	-	-	14,094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장 한규리	담당자	행정6급 윤은희	전화	5552
-----	-------	------------	-----	----------	----	------

택시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김포시 택시 672대		
사업목적	택시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으로 택시업계 재정부담 완화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생략)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9조 제4호
		제9조(재정 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및 단말기 통신료 지원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194,000	201,000	133,000	68,000	7,000	
국비		0			0	
도비	58,200	60,300	39,900	20,400	2,100	
시비	135,800	140,700	93,100	47,600	4,9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8,000	
택시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 경정(24,930원*672대*12월)-기정(24,740원*672대*8월)	68,000	

□ 예산요구 사유

- 택시카드 결제액 15,000원 이하 수수료 전액 지원으로 택시업계 재정부담 완화
- 택시 이용객의 편리한 결제 수단을 제공 및 택시 이용 활성화

□ 예산증감 사유

- 택시카드 결제 수수료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
(수수료 인상, 당초 8월분 편성 → 12월분 변경 내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1. : 도비 보조금 가내시
 - 2026. 01. :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 2026. 01. ~ 12. : 사업집행 (분기별 집행)
 - 2027. 02. : 보조사업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법인택시 146대 38,601,950원 지원 · 개인택시 486대 49,877,570원 지원
2025	· 법인택시 149대 87,237,460원 지원 · 개인택시 486대 93,458,340원 지원
2026	· 집행 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11,150	88,479	-	22,671	
2025	194,000	180,695	-	13,305	
2026	133,000	-	-	133,000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장 한규리	담당자	행정6급 윤은희	전화	5552
-----	-------	------------	-----	----------	----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250명		
사업목적	김포시 관내 법인택시(3개사) 운수종사자 근로의욕 고취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생략)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8조의2
		제8조의2(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 ① 도지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등)를 제출받아 필요성을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 개선에 소요되는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은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대상자는 일정 기간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법 및 택시발전법에 따른 택시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교통사고자 및 유발자의 과실 비율이 과반 이상자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316,800	330,000	214,715	115,285	13,200	
국비		0			0	
도비	221,760	231,000	150,301	80,699	9,240	
시비	95,040	99,000	64,414	34,586	3,96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15,285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 경정(110,000원*250명*12월)-기정(110,000원*244명*8월)	≒ 115,285	

□ 예산요구 사유

- 열악한 근로환경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서비스 의식 제고를 위한 처우개선비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 (8월분 내시 → 12월분 내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1. : 도비 보조금 가내시
 - 2026. 01. :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 2026. 01. ~ 12. : 사업집행 (월별집행)
 - 2026. 07. : 상반기 집행분 점검
 - 2027. 01. : 하반기 집행분 점검
 - 2027. 02. : 보조사업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총 2,663명 지원 / 266,300,000원 (월10만 지원)
2025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총 2,771명 지원 / 304,810,000원 (월11만 지원)
2026	· 집행 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282,000	266,300	-	15,700	
2025	316,800	304,810	-	11,990	
2026	214,715	-	-	214,715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장 한규리	담당자	행정6급 윤은희	전화	5552
-----	-------	------------	-----	----------	----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 업 설 명 서

건설도로과

(건설도로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 서 명	건설도로과
기 정 액	32,179,010천원	요 구 액	48,396천원

□ 세입예산 요구

장·관·항·목 ◎부기명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세입내용·산출내역·증감사유
		최종예산 (B=C+D)	본예산 (C)			
세외수입	20,000	40,896	0	40,896	20,896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그외수입 ◎경기도 종합감사 환수금(월곶중로 3-3호선)	20,000	40,896	0	40,896	20,896	· 세입내용 : 경기도종합감사 결과 물가변동 정산 환수 · 산출내역 : 경기도종합감사 결과 · 증감사유 : 25년도 미환수금액 환수

시도12호선(전류~원산간) 도로 확포장사업

사업기간	2017. 11. ~ 2028. 2.	사업위치	하성면 전류리 ~ 원산리 일원
사업규모	L=3.1km, B=20m(4차로), 총사업비 : 49,475백만원		
사업목적	김포파주간 고속도로 구간과 연결되는 시도12호선의 확장을 통한 IC 건설 여건 마련으로 교통량 분산 및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도로법		제25조 및 제82조
	제25조 제1항(도로구역의 결정)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제82조 제1항(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3,000,000	12,800,000	6,800,000	6,000,000	9,80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000,000	12,800,000	6,800,000	6,000,000	9,80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000,000	
시도12호선 (전류~원산간) 도로확포장 사업	401-01 시설비	· 보상비 : 토지 50필지, 지장물 70건(40억원) · 공사비 : L=3.3km, B=20m(4차로) ※ 총공사비 중 관급자재, 전기공사, 군통신이설공사 등 20억원 요구	= 6,000,000	

□ 예산요구 사유

- 2027년 제2순환 고속도로 하성IC 연계를 위하여 신속한 사업 필요
- 2026년 상반기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을 위한 보상비 편성
- 2026년 상반기 본 공사 관련 관급자재 발주 필요
- 2026년 상반기 본 공사 관련 연계된 추가 공사(전기, 군통신이설) 및 용역(GIS용역 등) 발주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상반기 보상 및 본 공사와 연계된 추가 공사 및 용역 발주를 위한 예산 편성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2017.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7.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8. 6.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2. 2. : 도로구역 결정 및 손실보상계획 공고
 - 2022. 4. : 토지 분할 및 보상 착수
 - 2023. 3. : 협의보상 개시
 - 2023. 6. :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
 - 2025. 12. : 공사착공
 - 2028. 2. : 공사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6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추경 (D)		
계		49,975,000	26,235,000	12,800,000	6,800,000	6,000,000	10,940,000	
공 정 별	설계비	800,000	800,000	0			0	
	보상비	27,155,000	21,155,000	6,000,000	2,000,000	4,000,000	0	
	공사비	19,600,000	3,260,000	5,900,000	3,900,000	2,000,000	10,440,000	
	감리비	2,000,000	1,000,000	500,000	500,000		500,000	
	부대비	420,000	20,000	400,000	400,0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보상 (보상률 80%)
2025	· 편입토지 및 지장물 2차 보상 검토 · 조달청 공사 발주 의뢰
2026	· 공사 착공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3,282,259	8,677,843	4,604,416	-	
2025	7,604,416	4,012,084	3,592,332	-	
2026	10,392,332	2,678,729	-	7,713,603	2.15.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3.1km, B=20m(4차로)	1회추경 요구액 (천원)	6,000,000
부기명 (세부사업)	시도12호선(전류~원산간) 도로 확포장사업	사업위치	하성면 전류리 ~ 원산리 일원		
위치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2팀장 이무영	담당자	시설7급 윤석호	전화	2138
-----	-------	-------------	-----	----------	----	------

도로건설·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

사업기간	2026. 5.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전역
사업규모	도로건설·관리계획 변경 수립		
사업목적	도로건설·관리의 목표 및 방향 설정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도로건설·관리 사업의 합리적 시행과 투자 효율성 제고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적근거	「도로법」		제6조 제1항
	제6조(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제23조의 구분에 따른 소관 도로에 대하여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22,000	0	22,000	22,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2,000	0	22,000	22,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2,000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401-01 시설비	• 도로건설·관리계획 변경 수립 1식 - 김포한강로 시도 지정 반영	= 22,000	

□ 예산요구 사유

- 국지도78호선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김포한강로의 국지도 승격(변경)을 위해서는 시도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김포시 도로건설·관리계획 반영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적정	-	-	-	-	-	-	-	-	-
일자	2026.11. 반영예정	2019. 3.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5. : 용역 착수
 - 2026. 12. : 용역 완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1팀장 심재성	담당자	시설7급 이시구	전화	2338
-----	-------	-------------	-----	----------	----	------

시도22호선(고막~용강) 도로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 1. ~ 2029. 12.	사업위치	월곶면 고막리 ~ 용강리 일원
사업규모	L=4.2km, B=12m		
사업목적	도로개설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및 시민 교통편익 증진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법」	
		제25조 및 제82조	
		제25조 제1항(도로구역의 결정)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제82조 제1항(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1,280,000	0	1,280,000	1,28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280,000		1,280,000	1,28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280,000	
시도22호선 (고막~용강) 도로 개설사업	401-01 시설비	. 보상비 : L=4.2km, B=12m = 1,280,000		

□ 예산요구 사유

- 2026년 토지 보상액 지급을 위한 일부 보상비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2019. 3.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9. 3. : 투자심사 완료
- 2019. 9.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3. 3. :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
- 2023. 7. : 토지분할 측량 의뢰
- 2026. 6. : 보상 착수
- 2028. 1. : 공사 착공
- 2029. 12. : 공사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6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계		39,100,000	1,810,000	1,280,000	0	1,280,000	35,600,000
공 정 별	설계비	900,000	900,000				
	보상비	18,000,000	895,000	1,280,000		1,280,000	15,415,000
	공사비	18,100,000					18,100,000
	감리비	2,000,000					2,000,000
	부대비	100,000	15,000				85,0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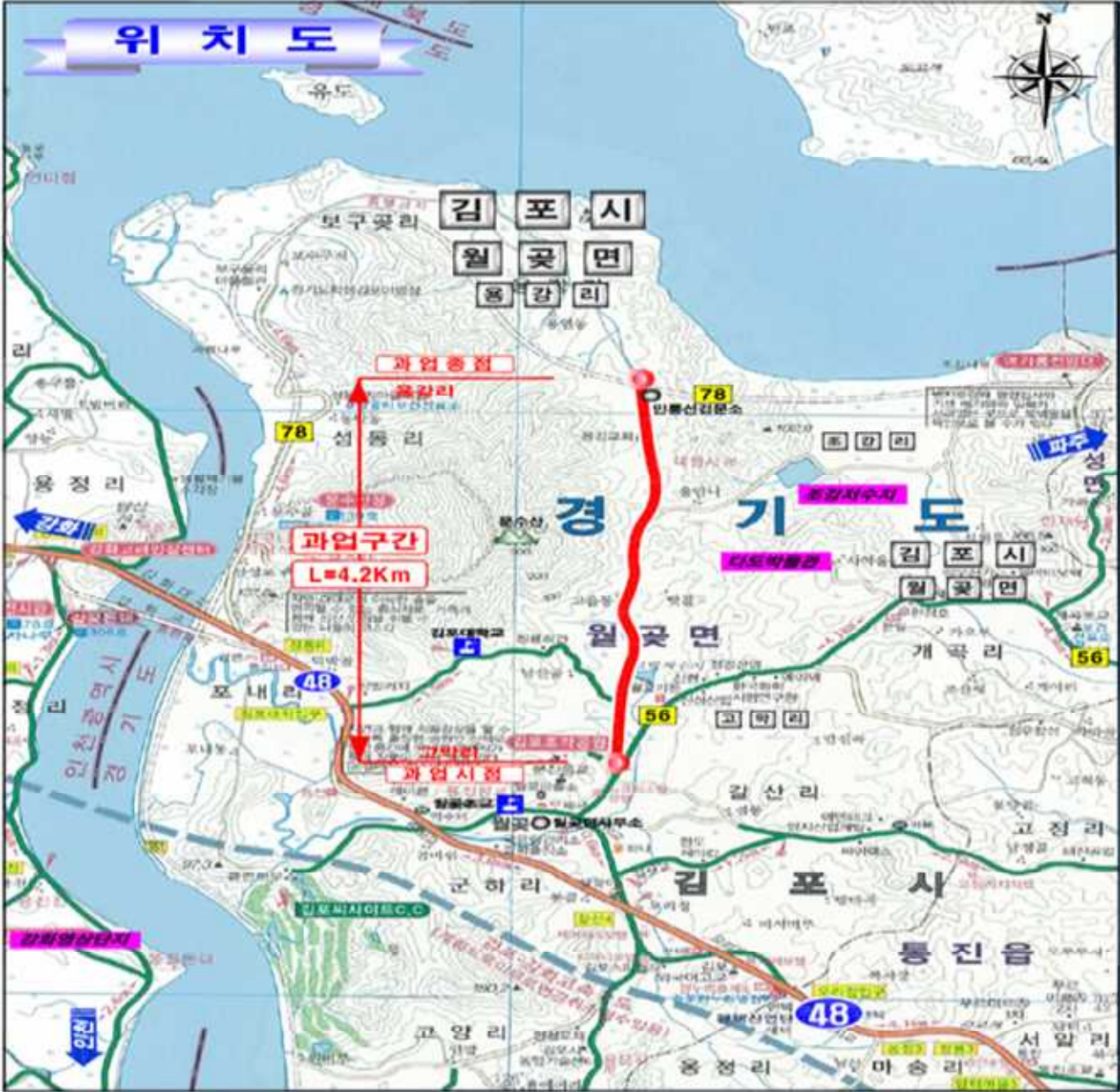
2024	- 토지분할측량 완료
2025	- 지적불부합지 조정
2026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201,048	265,143	935,905	-	
2025	935,905	-	935,905	-	
2026	935,905	-	-	-	2.15.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4.2km, B=12m(2차로)	1회추경 요구액 (천원)	1,280,000
부기명 (세부사업)	시도22호선(고막~용강) 도로 개설사업	사업위치	월곶면 고막리 ~ 용강리 일원		
위치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1팀장 심재성	담당자	시설8급 도유진	전화	2437
-----	-------	-------------	-----	----------	----	------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기간	2025. ~ 2038.	사업위치	김포시 걸포동(걸포C)~고양시 법곶동(이산포C)
사업규모	L=1.84km, B=28.5m(왕복 6차로)		
사업목적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교통량 분산을 통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통행료 지원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7조 제1항(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公款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조례	제3조
		제3조(통행료 지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2,400,000	900,000	1,500,000	2,40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400,000	900,000	1,500,000	2,40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500,000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금 1,200원/대 * 242일(평일) * 35,000대 * 50%(지원율) * 60%(시민 50% + 증가분 10%) * 1/2(6개월)	= 1,500,000	

* 본예산에서 확보된 통행료 지원금 750,000천원은 예산 집행계획 변경에 따라 예산법무과-1193(2026.1.21.)호에 의거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통계목 변경

□ 예산요구 사유

- 원활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시민 복리 증진

□ 예산증감 사유

- 통행료 지원금 6개월분 추가 확보(6~11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0. : 일산대교 무료화 소송 패소
 - 2025. 12. : 조례 제정
 - 2026. 02. : 규칙 제정
 - 2026. 上. : 연계 시스템 구축 및 통행료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2025	·
2026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900,000	-	-	900,000	2.15.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1.84km, B=28.5m(왕복 6차로)	1회추경 요구액 (천원)	150,000
부기명 (세부사업)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	사업위치	김포시 걸포동(걸포IC) ~ 고양시 법곶동(이산포IC)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1팀장 심재성	담당자	시설8급 도유진	전화	2437
-----	-------	-------------	-----	----------	----	------

농업 및 마을 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관내 비법정도로
사업규모	농업기반시설(농로) 공사 및 손해배상금 1건 지급		
사업목적	농업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며, 관련 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어촌정비법」 제10조	
		제10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	
	해당조례	「국가배상법」 제5조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1,736,555	1,794,574	1,733,900	60,674	58,019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736,555	1,794,574	1,733,900	60,674	58,019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0,674	
농업 및 마을기반시설 유지관리	305-01 배상금 등	(경정)13,674천원 - (기정)3,000천원 = 10,674천원 · 민사소송(구상금청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1건) · 서울남부지법 2025 가소 271106 : 10,674,000원*1건	= 10,674	
	401-01 시설비	(경정)1,250,000천원 - (기정)1,200,000천원 = 50,000천원 ·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공사 : 1,250,000천원	= 50,000	

□ 예산요구 사유

- 「국가배상법」제 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결과에 따른 배상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민사 소송 패소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액 확보
- 하성면 봉성리 육묘장 진입도로 확장 검토에 따른 사업 예산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등 관련 비용 증가
- 협소한 도로로 인한 차량교행 등 불편해소를 위해 도로 확장 사업비 예산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6. : 배상금 지급
 - 2026. 03. ~ 12. : 도로확장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사업 검토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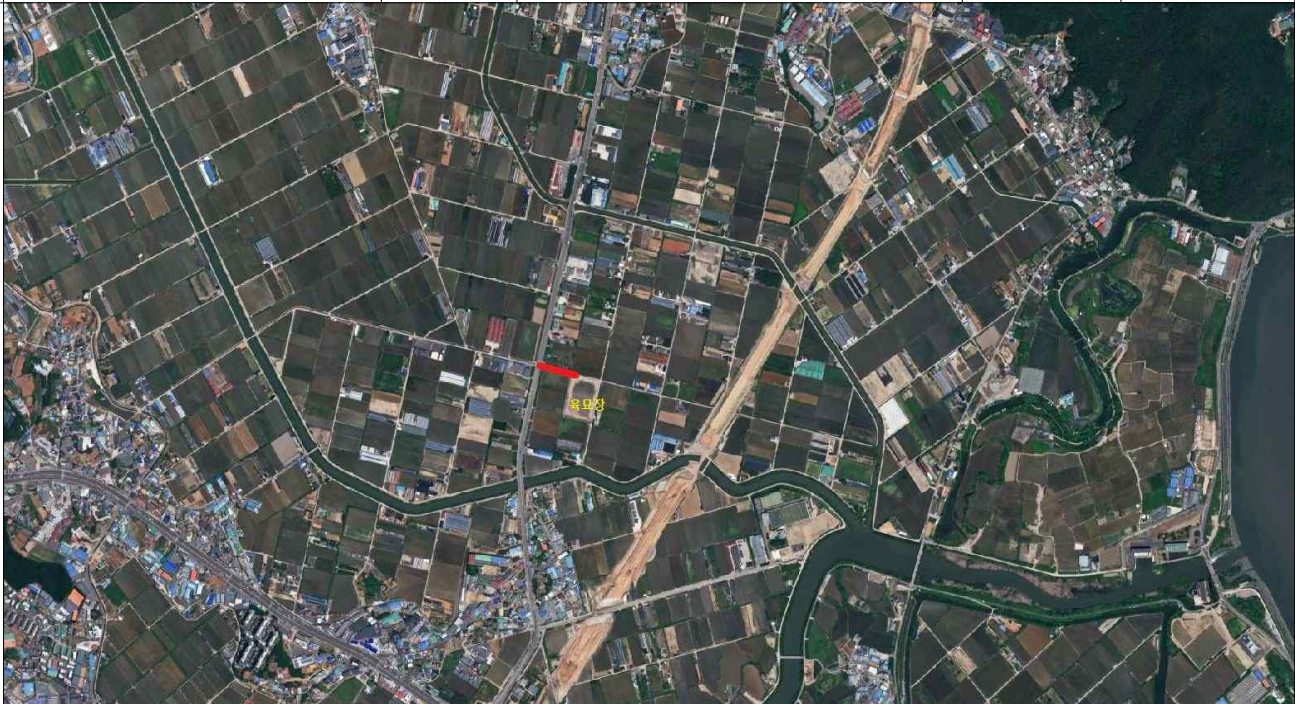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농업 및 마을 기반시설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 153건 - 용·배수로정비 및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7건 - 구거 수초목제거 및 준설작업 5건
2025	- 농업 및 마을 기반시설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 170건 -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4건 - 구거 수초목제거 및 용·배수로 정비 및 준설 작업 11건 - 과속방지 시설 심의위원회 가결 안건 과속방지턱 44개소 시공
2026	- 사업 추진 진행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335,000	1,100,532	207,237	27,231	
2025	1,943,792	1,834,892	-	108,900	
2026	1,733,900	-	-	1,733,900	2.15.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농업기반시설(농로) 확장	1회추경 요구액 (천원)	60,674
부기명 (세부사업)	농업 및 마을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위치	하성면 봉성리 576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지역개발팀장 박종진	담당자	시설7급 오병관 시설8급 오승연	전화	2431 2429
-----	-------	------------	-----	----------------------	----	--------------

저수지 수위계 · CCTV 설치사업

사업기간	2026. 2. ~ 2026. 6.	사업위치	하성면 양택리 465-2 (양택저수지)
사업규모	CCTV 설치 1개소		
사업목적	저수지 유지관리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6조제1항 및 제3호	
		제6조(시설관리자의 임무) ① 시설관리자는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시설을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③ 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점검·정비 및 안전관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리사항에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77,880	15,000	0	15,000	-62,880	
국비		0			0	
도비	38,940	7,500		7,500	-31,440	
시비	38,940	7,500		7,500	-31,44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5,000	
저수지 수위계·CCTV 설치사업	401-01 시설비	○ CCTV 설치 : 15,000,000원*1개= 15,000,000원	= 15,000	

□ 예산요구 사유

○ CCTV 설치를 통한 집중호우기간 등 저수지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집중호우기간 등 저수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CCTV 설치비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추진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2026.2.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2. : 사전절차 이행
 - 2026.03. : 공사착공
 - 2026.06. : 공사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2025	· CCTV설치 및 수위계 설치 (4지점)
2026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77,880	77,699	-	181	
2026	-	-	-	-	2.15.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CCTV 설치 1개소	1회추경 요구액 (천원)	15,000
부기명 (세부사업)	저수지 수위계·CCTV설치사업	사업위치	하성면 양택리 465-2 (양택저수지)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지역개발팀장 박종진	담당자	시설8급 임현호	전화	2459
-----	-------	------------	-----	----------	----	------

보구곶방조제 보수공사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월곶면 보구곶리 534
사업규모	보구곶방조제 보수공사 (L=70m) 및 정밀점검 (L=300)		
사업목적	보구곶방조제 유실때 따른 보수공사 추진 및 정밀점검 용역 추진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방조제관리법	제6조 제1항
		제6조(방조제의 관리) ① 국가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조사·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조사·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관장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리방조제를 관리할 때 종합적인 조정(調整)이 필요하거나 시·도지사가 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 또는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580,000	0	580,000	58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80,000		580,000	58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80,000	
보구곶방조제 보수공사	401-01 시설비	· 보구곶방조제 정밀점검 용역 (L=300m)	= 22,000	
		· 보구곶방조제 보수공사	= 500,000	
		· 해양이용평가 용역	= 58,000	

□ 예산요구 사유

- '25.12. 보구곶방조제 일부 유실로 인한 지반침하 및 철책 전도 발생에 따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보수공사를 추진
- 정밀점검을 통해 유실 구간을 추가 확인하고, 보수공사를 신속히 시행하여 농경지 해수 침투 및 군 순찰 인원의 인명사고를 예방

□ 예산증감 사유

- 방조제 보수공사비 및 인허가 추진을 위한 해양이용협의 용역비 산정
- 유실지역 지역 확대에 따른 정밀점검 용역비 산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
일자	2026.11.반영예정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26. 03. : 보구곳방조제 정밀정검 용역 및 해양이용평가 용역 추진
 - 2026. 06. : 공사착공
 - 2026. 12. : 공사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2025	
2026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	-	-	-	2.15.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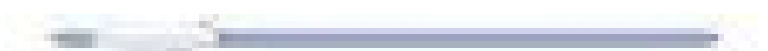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방조제 보수공사 L=70m, 방조제 정밀점검 L=300m	1회추경 요구액 (천원)	580,000
부기명 (세부사업)	보구곶방조제 보수공사	사업위치	월곶면 보구곶리 534번지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지역개발팀장 박종진	담당자	시설8급 임현호	전화	2459
-----	-------	------------	-----	----------	----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 업 설 명 서

도로관리과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보조)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국지도 78호선 외 1개소
사업규모	LED 가로등 120개소 교체		
사업목적	가로등, 경관조명 점검 및 보수, 신규 설치를 통한 교통 및 전기안전사고 예방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법	제31조 제1항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제7조, 제14조
		제7조(설치 및 관리계획) 시장은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 분기마다 조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고장신고 처리) 시장은 조명시설의 안전문제 또는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수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120,000	120,000	60,000	60,000	0	
국비		0			0	
도비	120,000	120,000	60,000	60,000	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0,000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	401-01 시설비	· LED 가로등 설치 및 교체 :경정(120개소 × 1,000,000원)-기정(경정(60개소 × 1,000,000원)) =	60,000	

□ 예산요구 사유

- 고효율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여 야간 통행 안전성 확보 및 교통사고 사전 예방
- 노후된 가로등기구 교체로 도로 미관 개선 및 에너지 절약

□ 예산증감 사유

- 道 도로운영사업(지방도 기전시설 정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3. ~ 4 : 현장조사 및 설계
 - 2026. 5. ~ 6 : 공사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지방도 356호선 외 1개소 가로등 교체(160개소)
2025	· 국지도 56호선 외 1개소 노후 점멸기 교체(260개) · 지방도 356호선 가로등 노후선로 교체
2026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25,000	113,655	-	11,345	
2025	120,000	107,567	-	12,432	
2026	60,000	-	-	60,000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시설팀장 김종필	담당자	공업8급 윤태주	전화	4585
-----	-------	------------	-----	----------	----	------

지방도 제설제 지원

사업기간		2026. 6. ~ 8.	사업위치	관내 지방도
사업규모		친환경 고상 제설제 80톤 구매		
사업목적		친환경제설제를 적기에 확보하여 원활한 지방도 제설 추진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법		제31조제1항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36,800	36,200	0	36,200	-600	
국비		0			0	
도비	36,800	36,200		36,200	-60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6,200	
지방도 제설제 지원	206-01 재료비	· 친환경 고상 제설제 구입 : 450,000원 * 80.444톤 =	36,200	

□ 예산요구 사유

- 지방도 제설작업의 신속한 수행을 위해 제설제를 구매하고자 함
- 경기도 권고에 따라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친환경 제설제 구매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도로안전과-2902(2026.02.10.)호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6. : 친환경 제설제 구입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친환경제설제 85톤 구매
2025	· 친환경제설제 85톤 구매
2026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36,800	36,568	-	232	
2025	36,800	36,739	-	61	
2026	-	-	-	-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환경팀장 최호선	담당자	행정8급 조성혁	전화	4594
-----	-------	------------	-----	----------	----	------

설해 대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

사업기간		2026. 6. ~ 8.	사업위치	관내 법정도로
사업규모		친환경 고상 제설제 222톤 구매		
사업목적		겨울철 강설 피해에 대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법		제31조제1항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189,000	100,000	0	100,000	-89,000	
국비		0			0	
도비	94,500	50,000		50,000	-44,500	
시비	94,500	50,000		50,000	-44,5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0	
설해 대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	206-01 재료비	· 친환경 고상 제설제 구입 : 450,000원 * 222.222톤 =	100,000	

□ 예산요구 사유

- 제설제를 확보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경기도 권고에 따라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친환경 제설제 구매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안전기획과-102(2026.01.05.)호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6. : 친환경 제설제 구입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친환경제설제 154톤 구매
2025	· 친환경제설제 577.45톤 구매
2026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67,000	66,524	-	476	
2025	189,000	188,647	-	353	
2026	-	-	-	-	2.15.기준 집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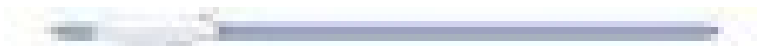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환경팀장 최호선	담당자	행정8급 조성혁	전화	4594
-----	-------	------------	-----	----------	----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차량등록과



교통 업무 보조활동 지원

사업기간	2026. 01. 0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일원
사업규모	관내 김포시민 차량 500여 대		
사업목적	김포시민 및 취약계층 소유 차량 대상 무상점검 실시를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도 50%, 시 50%)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호
		도지사는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김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5호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의 인프라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5. 무상점검 등 시민안전 지원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7,000	14,000	7,000	7,000	7,000	
국비	0	0	0	0	0	
도비	0	7,000	0	7,000	7,000	
시비	7,000	7,000	7,000	0	0	
기타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7,000	
교통 업무 보조활동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김포시민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지원 : 경정(14,000,000원)-기정(7,000,000원) <상세내역> · 참여인원 : 200명 · 지원단체 :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김포시지회 · 사업내용 : 김포시민 차량 무상점검 및 소모품 교환·보충 - 물품(천막, 의자, 탁자 등) 대여비 : 2,200,000원 - 홍보비(현수막) : 80,000원×30장 = 2,400,000원 - 점검표, 유인물 등 서식인쇄 : 750,000원 - 연막소독 기계(연무탈취기) : 200,000원×6대 = 1,200,000원 - 연막소독 약품(탈취제) : 30,000원×12병 = 360,000원 - 타이어 공구 : 11,250원×8세트 = 90,000원 - 소모품(오일, 부동액, 필터 등) 구입 : 5,800,000원 - 식대 : 8,960원×134명 = 1,200,000원	= 7,000	

□ 예산요구 사유

- 김포시민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소유 차량의 무상점검을 통해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증액 편성(경기도 택시교통과-3130(2026.2.11.)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7. ~ 2026. 09. : 2026년 김포시민 자동차 무상점검의 날 행사 추진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보조사업자 :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김포시지회(카포스) · 추진실적 - 사업명 : 김포시민 차량 무상점검 - 일시 : 2023.9.17.(일) 09:30 ~ 16:00 - 참여인원 : 전문정비사 100여명 - 행사내용 : 김포시민 차량 670여대 차량에 대한 무상점검 및 소모품 교환 및 보충
2025	· 보조사업자 :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김포시지회(카포스) · 추진실적 - 사업명 : 김포시민 차량 무상점검 - 일시 : 2024.10.13.(일) 09:30 ~ 15:00 - 참여인원 : 전문정비사 100여명 - 행사내용 : 김포시민 차량 330여대 차량에 대한 무상점검 및 소모품 교환 및 보충
2026	· 보조사업자 :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김포시지회(카포스) · 추진실적 - 사업명 : 김포시민 차량 무상점검 - 일시 : 2025.9.21.(일) 09:30 ~ 16:00 - 참여인원 : 전문정비사 100여명 - 행사내용 : 김포시민 차량 500여대 차량에 대한 무상점검 및 소모품 교환 및 보충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5,950	5,546	-	404	
2025	7,000	7,000	-	0	
2026	7,000	0	-	7,000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차량등록과	차량행정팀장 심유섭	담당자	행정7급 김유진	전화	4903
-----	-------	------------	-----	----------	----	------

신속·정확한 자동차등록관리

사업기간		2026. 01. 0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감암로 125
사업규모		관내 등록 자동차(250,297대) 및 건설기계(5,175대)		
사업목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자동차등록령		제5조 제1항
		① 등록에 관한 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관할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 신청서를 첨부하여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 제2항
		② 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상 등록 등 제반 사무를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18,880	37,430	23,000	14,430	18,550	
국비	0	0	0	0	0	
도비	0	0	0	0	0	
시비	18,880	37,430	23,000	14,430	18,550	
기타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4,430	
신속·정확한 자동차등록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서식 구입 : 80,160원×20상자×9월 =	14,430	

□ 예산요구 사유

- 관내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관련 민원에 따른 신속·정확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필수 서식 및 소모품 확보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6월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증 서식의 전국적 변경으로 기존 서식 사용 불가 및 예산 부족으로 일반 A4용지에 등록증 출력 교부 → 등록증 사본 여부에 관한 민원 지속 제기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서식 구입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2024	· 자동차등록 및 건설기계 관련 서식 등 구입(2,880,760원)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소모품 구입 및 유지보수비(4,573,800원) · 인증기 소모품 구입 및 수리비용 지급(605,000원) · 취득등록세 고지서 제작(7,999,200원)
2025	· 자동차등록 및 건설기계 관련 서식 등 구입(13,013,450원)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소모품 구입 및 유지보수비(4,657,400원) · 인증기 소모품 구입 및 수리비용 지급(2,544,070원)
2026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서식 등 구입(2,877,600원)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소모품 구입(2,571,800원) · 키오스크 순번대기표 용지 구입(105,60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26,060	26,059	-	1	
2025	18,880	18,879	-	1	
2026	23,000	5,555	-	17,445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장 조영욱	담당자	행정7급 김영섭	전화	4917
-----	-------	------------	-----	----------	----	------

청사관리

사업기간	2026. 01. 0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감암로 125
사업규모	차량등록과 청사 내		
사업목적	지속적인 청사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3 제1항
	위임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 제1항
		① 김포시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20,352	35,805	18,578	17,227	15,453	
국비	0	0	0	0	0	
도비	0	0	0	0	0	
시비	20,352	35,805	18,578	17,227	15,453	
기타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7,227	
청사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25.12월 퇴직 청사청소원 미지급 퇴직금 : 17,227,000원 =	17,227	

□ 예산요구 사유

- '25. 12월 퇴직 기간제 근로자(청소 청소원) 퇴직금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2025. 12. 31일자로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청사 청소원)의 퇴직금이 미지급되어 2025년 당해예산 및 2020년~2024년 동안 적립된 퇴직금 우선 지급 후 남은 부족분 증액 편성
 - 총 퇴직금(24,642,740원) 중 1차 지급액(당해예산 2,029,390원 및 퇴직적립금 6,195,910원)을 제외한 부족분(16,417,440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거 원금 및 지연이자 합산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승인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2025.9.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3. ~ 2026. 04. : 청사 청소원 미지급 퇴직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기간제근로자(청사 청소원) 인건비 지급(19,033,160원)
2025	· 기간제근로자(청사 청소원) 인건비 지급(20,352,000원)
2026	· 기간제근로자(청사 청소원) 인건비 지급(1,305,31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20,190	19,033	-	1,157	
2025	20,352	20,352	-	0	
2026	18,578	1,305	-	17,273	2.15.기준 집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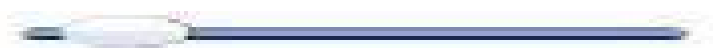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차량등록과	차량행정팀장 심유섭	담당자	행정7급 김연정	전화	4902
-----	-------	------------	-----	----------	----	------

도시주택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도시계획과



풍곡도시계획도로(2구간) 개설공사(자체)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고촌읍 풍곡리 380-21번지 일원
사업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L=484m, B=8~10m)		
사업목적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교통편의 및 지역경제를 증진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해당조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항 제1호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편익사업: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구거(溝渠: 도랑), 오수처리시설,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와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370,000	150,000	220,000	37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70,000	150,000	220,000	37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20,000	
풍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자체)	401-01 시설비	· 한전주 이설 시설부담금 : 10,000,000원*18개	= 180,000	
		· 국유지 유상 취득 비용(7필지)	= 40,000	

□ 예산요구 사유

- 공사 착공이 '26년 6월~7월 중으로 예상됨에 따라, 착공 이전에 사업지 내 지장물인 한전주의 이설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 한전에 납부해야 할 시설부담금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며,
- 또한, 사업지 내 유상취득 대상 국유재산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취득비를 납부하여야 하나, 관련 예산이 미편성되어 있어 공사 착공 전 필수적인 선행 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실정임.
- 따라서, 공사 착공 전 지장물 이설 및 국유재산 취득 등 선행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의 편성이 반드시 필요함

□ 예산증감 사유

- 이설이 필요한 한전주는 총 18주로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해야 할 시설부담금 180,000천원으로 추정되며,
- 탁상감정 결과 사업지 내 국유지 7필지에 대한 예상 감정가액은 40,000천원 수준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기 선행 절차 이행을 위한 예산 편성액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10. ~ 2023. 08.: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23. 6.: 실시계획인가
 - 2023. 9.: 보상계획공고
 - 2024. 1. ~ 2025. 6.: 손실보상협의, 수용재결
 - 2025. 6.: 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 착공
 - 2025. 11.: 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 일시정지
 - 2026. 4.: 한전주 이설 요청 및 고지서 발급, 국유지 감정평가 의뢰
 - 2026. 5.: 감정평가 완료 및 국유재산 유상 취득
 - 2026. 5. ~ 2026. 6.: 한전주 이설 공사(한국전력공사 수행)
 - 2026. 7.: 공사 재착공
 - 2026. 12.: 공사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6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추경 (D)		
계	3,905,000	3,535,000	370,000	150,000	220,000	0	
공 정 별	설계비	30,000					
	보상비	2,740,000	90,000	50,000	40,000		
	공사비	1,135,000	280,000	100,000	180,000		
	감리비						
	부대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2024	· 풍곡도시계획도로(소1-106호, 소2-105호, 소2-106호)개설공사[2구간] 손실보상협의 및 수용재결
2025	· 풍곡도시계획도로(소1-106호, 소2-105호, 소2-106호)개설공사[2구간] 수용재결 및 공탁 · 풍곡도시계획도로(소1-106호, 소2-105호, 소2-106호)개설공사[2구간] 공사 착공
2026	· 풍곡도시계획도로(소1-106호, 소2-105호, 소2-106호)개설공사[2구간] 공사 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150,000	-	-	150,000	2.15.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도시계획과	사업규모	L=474m, B=8~10m	1회추경 요구액 (천원)	220,000
부기명 (세부사업)	풍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자체)	사업위치	고촌읍 풍곡리 380-21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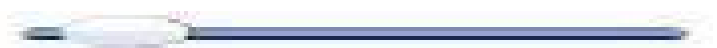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팀장 문정수	담당자	시설7급 임승범	전화	2451
-----	-------	--------------	-----	----------	----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주택과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관내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단지 중 추후 공모하여 사업규모 결정		
사업목적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휴게시설 개선으로 휴게권 보장 및 노동권익 향상 기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도비30%, 시비70%)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주택조례	제7조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65,000	70,000	50,000	20,000	5,000	
국비	-	-	-	-	-	
도비	19,500	21,000	15,000	6,000	1,500	
시비	45,500	49,000	35,000	14,000	3,500	
기타	-	-	-	-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휴게시설: 경정(5,000천원×14개소)-기정(5,000천원×10개소) =	20,000	

□ 예산요구 사유

-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휴게시설 개선을 통한 휴게권 보장 및 근로조건 향상
-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인식개선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시·군 예산조정으로 인한 증액(道 확정내시 : 경기도 노동권익과-275호(2026. 1.8))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4. :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 2026. 04. ~ 2026. 05. : 신청단지 현장조사 및 확인
 - 2026. 05. : 지원심의 및 지원대상 단지 선정 공고
 - 2026. 05. ~ 2026. 11.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추진 및 보조금 교부(공사완료 및 정산 서류 확인 후 교부)
 - 2026. 12.: 보조사업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13개소 지원 -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호반베르디움더레이크5차 등 6개소 -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강변마을동일하이빌 등 7개소
2025	· 15개소 지원 -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풍경마을 롯데캐슬 등 7개소 -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동일스위트 더파크뷰 2단지 등 8개소
2026	3월 중 지원단지 선정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50,000	49,584	-	416	
2025	65,000	48,327	-	16,673	
2026	50,000	-	-	50,000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팀장 김미진	담당자	시설8급 전찬웅	전화	2255
-----	-----	------------------	-----	----------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약 285가구		
사업목적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주거기본법	제15조
		제15조(주거비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 제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85,600	114,000	73,000	41,000	28,400	
국비	42,800	57,000	36,500	20,500	14,200	
도비	12,840	17,100	10,950	6,150	4,260	
시비	29,960	39,900	25,550	14,350	9,940	
기타	-	-	-	-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1,000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정(저소득층가구285가구*40만원)-기정(저소득층가구183가구*40만원) =	41,000	

□ 예산요구 사유

-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를 위해 보증료를 지원하고자 함

□ 예산증감 사유

- 국토교통부 확정내시 시행(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4266호(2025.12.24.시행))으로
도 보증료 지원사업 예산 증액되어 시·군 예산조정(경기도 주택정책과-28032호(2025.12.30.시행))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할인 대상 자동신청 방식 도입과 지원제외 기준 완화*로 신청 대상 증가
* 동일 지자체 내에서 2년간 지원 제한 폐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0. ~ : 지침개정(자동신청 도입 및 지원제외 대상 완화)
 - 2026. 01. ~ 2026. 03. : 2026년도 사업계획 시행 및 홍보
 - 2026. 01. ~ 2026. 12. : 대상자 선정 및 지급
 - 2026. 12. ~ : 사업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접수 387건 : 적합 317건 지원(부적합 70건)
2025	· 접수 487건 : 적합 363건 지원(부적합 124건)
2026	· 접수 57건 : 적합 48건 지원(부적합 9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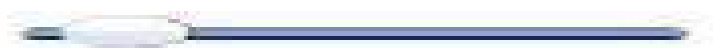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70,000	70,000	-	-	
2025	85,600	85,600	-	-	
2026	73,000	12,145	-	60,855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주택과	주거복지팀장 서원일	담당자	복지8급 정진희	전화	2417
-----	-----	------------	-----	----------	----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토지정보과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전 지역
사업규모	관내 공인중개사 880여명 대상		
사업목적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음으로써 중개업 실무에 관한 사항을 재숙지하고 인지하여 중개업 질서를 바로잡고자 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전세 사기 예방 등 주거 안전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책임에 근거	
	해당조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2
		도지사가 의회사무처장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1.연수교육 실시 2.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3.연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통지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6,925	12,550	14,180	-1,630	5,625	
국비						
도비	6,925	12,550	14,180	-1,630	5,625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630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비 : 경정(9,910천원) - 가정(11,540천원) =	-1,63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별표2)에 의거 2020.03.16.일부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이 시·군으로 위임됨에 따라 도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
- 2026년 연수교육대상자 880명(예상)을 대상으로 김포시 관내에 장소를 대관하고 강사를 초빙하여 연수교육 1회 실시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도비보조금 확정 통지(1,630천원 감액)
관련근거 : 경기도 토지정보과-3288(2026.02.05.)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5. ~ 08 : 2025년 연수교육 대상자에게 연수교육 안내 문자 알림 및 교재 배부, 연수교육 사전접수
 - 2025. 09. 09. :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집합)교육 시행
 - 2026. 01 ~ 12. :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 수립 후 연수(집합)교육 추진 예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경기도 산정 920명(김포시 산정 849명) 대상으로 연수교육 안내 및 사전접수 진행 ·2024.06.25.~26. 연수교육 2회 진행
2025	·경기도 산정 500명(김포시 산정 451명) 대상으로 연수교육 안내 및 사전접수 진행 ·2025.09.09. 연수(집합)교육 진행
2026	·경기도 산정 880명(김포시 산정 812명) 대상으로 연수교육 예정

※ 관내 개업 및 소속공인중개사 1400여 명으로 2년에 1회 연수교육(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함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1,104	9,417		1,687	
2025	6,925	6,197	-	728	
2026	14,180	-	-	14,180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장 이호재	담당자	시설9급 최명철	전화	2147
-----	-------	------------	-----	----------	----	------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마송리, 상마리, 군하리 일원
사업규모	3개 지구 653필지 462,168㎡(마송2지구 285필지 181,255㎡, 상마지구 200필지 155,591㎡, 군하지구 168필지 125,322㎡)		
사업목적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86,422	140,950	142,273	-1,323	54,528	
국비	86,422	140,950	142,273	-1,323	54,528	
도비		0			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323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201-01 사무관리비	·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측비 및 운영비: 경정(13,092천원) - 기정(13,697천원) =	-605	
	308-11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지적재조사사업 일필지측량비: 경정(127,858천원) - 기정(128,576천원) =	-718	

□ 예산요구 사유

- 110여 년 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가 오.횡손 및 신축, 토지 이용현황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토지 경계와 불일치함에 따라, 새롭게 조사.측량하여 면적 및 경계를 현황에 일치시켜 새로운 지적공부로 등록하는 사업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30년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일제히 실시하는 국가사업임.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
관련근거: 경기도 토지정보과-700(2026.01.08.)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11 : 실시계획 수립 및 공람공고
- 2025.11 :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 2026.02 : 제1회 주민설명회 개최
- 2026.02 : 지적재조사 측량 수행자 선정
- 2026.04 : 현황측량 실시
- 2026.05~2026.09 : 경계 및 면적조정, 임시경계점 설치(토지소유자 입회)
- 2026.07 :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및 결의
- 2026.09 :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및 의견서 접수
- 2026.12 :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2027.03 : 사업완료 공고, 기존 지적공부 폐쇄,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 2027.04 : 감정평가 실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조정금 산정
- 2027.05 : 조정금 지급 징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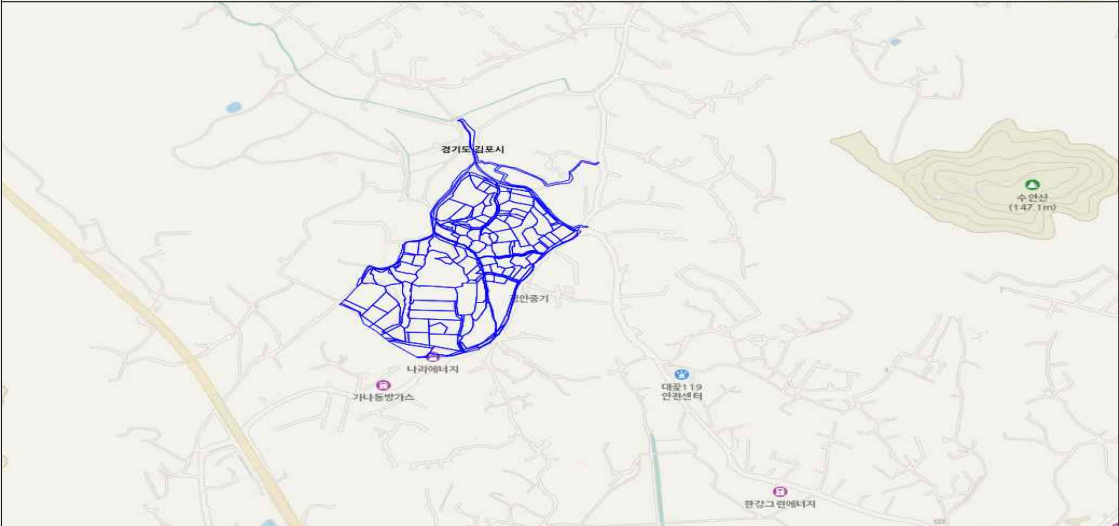
2024	『원산지구』: 하성면 원산리 388-3번지 일원 207필지 158,796㎡ / 사업기간 : 2023. 11. ~ 2025. 12. 『고막2지구』: 월곶면 고막리 215번지 일원 220필지 115,984㎡ / 사업기간 : 2023. 11. ~ 2025. 12. 『유현지구』: 양촌읍 유현리 111-4번지 일원 176필지 103,065㎡ / 사업기간 : 2023. 11. ~ 2025. 12. 『마송지구』: 통진읍 마송리 146-4번지 일원 98필지 32,473㎡ / 사업기간 : 2023.11 ~ 2024. 12.
2025	『태리2지구』: 고촌읍 태리 969-1번지 일원 274필지 72,724㎡ / 사업기간 : 2024. 11. ~ 2026. 12. 『초원지구』: 대곶면 초원길 617번지 일원 136필지 129,273㎡ / 사업기간 : 2024. 11 ~ 2026. 12.
2026	『군하지구』: 월곶면 군하리 321-1번지 일원 168필지 126,361㎡ / 사업기간 : 2025. 11. ~ 2027. 12. 『상마지구』: 대곶면 상마리 157번지 일원 200필지 162,358㎡ / 사업기간 : 2025. 11 ~ 2027. 12. 『마송지구』: 통진읍 마송리 225-1번지 일원 285필지 196,672㎡ / 사업기간 : 2025. 11 ~ 2027. 12.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46,998	146,998	-	-	
2025	86,422	86,421	-	1	
2026	142,273	-	-	142,273	2.15.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토지정보과	사업규모	3개 지구 653필지 417,992㎡	1회추경 요구액 (천원)	-1,323
부기명 (세부사업)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사업위치	월곶면 군하리, 대곶면 상마리, 통진읍 마송리		
현장사진					군하지구
					상마지구
					마송2지구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장 신현수	담당자	시설7급 이기욱 시설8급 김민영	전화	2129 2158
-----	-------	-------------	-----	----------------------	----	--------------

농업기술센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농업정책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목적	농촌의 난개발과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주거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5항
		① 계획수립권자는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할 수 있다. ⑤ 계획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400,000	0	400,000	400,000	
국비	0	0	0	0	0	
도비	0	0	0	0	0	
시비	0	400,000	0	400,000	400,000	
기타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00,000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 400,000,000원	= 400,000	

□ 예산요구 사유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2024.3.29.시행)에 따라 대상 시·군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도록 하고 있음.
- 농촌공간의 계획적 개발·이용·보전 및 삶·일·쉼터로서의 기능 회복을 위해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농촌 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2026년까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이 필수이며,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수행기간이 약 1년 소요됨에 따라, 기한 내 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 착수 예산 확보가 필요함.

□ 예산증감 사유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비 수립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3.: 예산편성
 - 2026. 03.: 입찰공고
 - 2026. 04.: 용역계약 및 착수
 - 2026. 12.: 기본계획 수립 완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해당없음
2025	해당없음
2026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	-	-	-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이상국	담당자	농업7급 소민정	전화	4254
-----	-------	------------	-----	----------	----	------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농어업인 6,100명		
사업목적	농어촌의 소멸위기에 대응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지속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농어민에게 기회소득 지급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7,097,500	4,583,850	4,626,500	-42,650	-2,513,650	
국비	0	0	0	0	0	
도비	3,548,750	2,291,925	2,313,250	-21,325	-1,256,825	
시비	3,548,750	2,291,925	2,313,250	-21,325	-1,256,82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2,650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사무관리비(홍보물 제작, 기간제근로자 사무장비렌탈 등) : 경정(22,950천원) - 기정(29,880천원)	= -6,930	
	301-14 기타보상금	· 경정(기회소득(일반) 600,000원*5,492명 + 기회소득(청년,귀농, 환경농어민)1,800,000원*608명) - 기정(기회소득(일반) 600,000원*5,834명 + 기회소득(청년,귀농, 환경농어민)1,800,000원*514명)	= -35,720	

□ 예산요구 사유

- 농촌 고령화, 지역 소멸위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특정 농어민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농어업·농어촌의 재생 및 발전 기여
- 김포시 농업인 6,100명 농어민 기회소득 지역화폐로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매칭 사업 추진에 따른 경기도 변경내시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승인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2025.9.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 홍보
 - 2026. 3. ~ 4. : 농어민 기회소득 1차 접수
 - 2026. 5. : 1차 지급요건 확인(위원회 운영)
 - 2026. 6. : 1차 지급
 - 2026. 9. ~ 10. : 농어민 기회소득 2차 접수
 - 2026. 11. : 2차 지급요건 확인(위원회 운영)
 - 2026. 12. : 2차 지급 및 사업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해당없음
2025	· 소요액 : 6,730,189천원 · 사업내용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위원회 수당, 홍보물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 및 기회소득 지급
2026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7,097,500	6,889,920	-	207,580	
2026	4,626,500	-	-	4,626,500	1.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이상국	담당자	농업7급 소민정	전화	4254
-----	-------	------------	-----	----------	----	------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매월 1,237개		
사업목적	농업인에게 최신 경향의 농업정보지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기술 향상에 기여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제1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 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65,377	136,450	90,963	45,487	71,073	
국비	0	0	0	0	0	
도비	19,613	27,290	27,290	0	7,677	
시비	45,764	109,160	63,673	45,487	63,396	
기타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5,487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201-01 사무관리비	· 구독료 : 경정((신문8,999원*750명*12월)+(소식지9,490원*487명*12월)) -기정((신문8,800원*476명*12월)+(소식지7,200원*471명*12월)) =	45,487	

□ 예산요구 사유

- 온라인 정보취득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농업·유통기술 등의 종합정보 제공으로 농가소득증대 기여
- 농산물 수입개방 등 급변하고 있는 농업환경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농업관련 동향 등의 정보 제공으로 농업경쟁력 제고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내시비율 변경(도비30%, 시비70% → 도비20%, 시비80%)에 따른 시비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대상자 선정
 - 2026. 02. ~ 12.: 사업 추진
 - 2026. 12.: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한국농어민신문 : 6,840원*239명*11월 = 17,982천원 · 월간친환경 : 6,300원*155명*12월 = 11,718천원 · 월간새농사 : 6,300원*65명*12월 = 4,914천원 · 한국농업신문 : 5,400원*201명*12월 = 13,025천원 · 여성농업인신문 : 5,850원*158명*12월 = 11,092천원
2025	· 한국농어민신문 : 7,667원*208명*12월 = 19,136천원 · 월간친환경 : 6,709원*155명*12월 = 12,478천원 · 월간새농사 : 8,146원*50명*12월 = 4,888천원 · 한국농업신문 : 6,421원*180명*12월 = 13,869천원 · 여성농업인신문 : 6,516원*157명*12월 = 12,277천원
2026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65,377	58,731	-	6,646	
2025	65,377	62,103	-	3,274	
2026	90,963	-	-	90,963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이상국	담당자	농업7급 소민정	전화	4254
-----	-------	------------	-----	----------	----	------

농촌 왕진버스 지원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고촌읍
사업규모	1개소 200명		
사업목적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 제2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이 의료, 교육, 주택, 상하수도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영세 농업인 등에 대한 소득 안정화,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고령 농업인의 영농 활동 및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75,600	16,800	25,200	-8,400	-58,800	
국비	43,200	9,600	14,400	-4,800	-33,600	
도비	0	0	0	0	0	
시비	32,400	7,200	10,800	-3,600	-25,200	
기타	32,400	7,200	10,800	-3,600	-25,20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400	
농촌 왕진버스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왕진버스(의료서비스 지원) : 경정(120,000원*200명*1개소*70%)-기정(120,000원*300명*1개소*70%) =	-8,400	

□ 예산요구 사유

- 차량·장소·의료기기 임차료, 약제·재료 구입비, 유류비, 홍보비, 진료비, 식비, 교통비 등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운영비 요구
-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한방 진료, 안과·치과 검진, 물리치료, 질병관리 및 예방교육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

□ 예산증감 사유

- 내시 변경으로 인한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사업운영계획 수립
 - 2026. 01. ~ 02.: 보조금 집행(시 → 농협)
 - 2026. 02. ~ 04.: 지역별로 사업추진
 - 2026. 12: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해당없음
2025	· 농촌 왕진버스 보조금 집행(75,600천원)
2026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75,600	75,600	-	-	
2026	25,200	-	-	25,200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이상국	담당자	농업7급 소민정	전화	4254
-----	-------	------------	-----	----------	----	------

대민봉사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대민봉사자 약 2,000명		
사업목적	대민봉사자를 위한 안전사고 보장제도 마련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산업구조 및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
시장은 예산범위에서 대민봉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16,000	0	16,000	16,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6,000		16,000	16,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6,000	
대민봉사 상해보험 가입 지원	201-02 공공운영비	· 보험료 가입비 : 8,000원/일*2,000명 =	16,000	

□ 예산요구 사유

-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농번기 대민봉사활동 시 대민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대민봉사 환경 조성 및 대민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함

□ 예산증감 사유

- 농번기 대민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신규 예산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4.: 보험회사 선정 및 계약
 - 2026. 04. ~ 2026. 05.: 사업추진
 - 2026. 07.: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해당 사항 없음
2025	· 해당 사항 없음
2026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	-	-	-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농업8급 박지애	전화	4279
-----	-------	------------	-----	----------	----	------

공익형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농업정책과, 읍면동
사업규모	13개소		
사업목적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경비 지원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2.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제1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비 4.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45,000	46,000	46,000	0	1,000	
국비	45,000	46,000	46,000	0	1,000	
도비		0			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0	
공익형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5,400,000원*1개소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5,300,000원*1개소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4,800,000원*5개소 · 경정(34,700천원) - 기정(33,600천원)	= 1,100	
	201-01 사무관리비	· 등록관리위원회 심의수당 등 사무관리비 : 600,000원*1개소 · 등록관리위원회 심의수당 등 사무관리비 : 500,000원*8개소 · 등록관리위원회 심의수당 등 사무관리비 : 400,000원*3개소 · 경정(5,800천원) - 기정(6,300천원)	= -500	
	201-02 공공운영비	· 우편요금 : 1,500,000원*1개소 · 우편요금 : 1,100,000원*1개소 · 우편요금 : 700,000원*3개소 · 우편요금 : 500,000원*1개소 · 우편요금 : 300,000원*1개소 · 경정(5,500천원) - 기정(6,100천원)	= -600	

□ 예산요구 사유

-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경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기본형공익직불 신청기간 연장으로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예산 전용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승인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2025.9.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3. ~ 04. : 행정경비 사용계획 수립 및 읍면동 재배정
 - 2026. 05. ~ 12. : 사업추진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소요액 : 32,945천원 · 사업내용 : 위원회 수당, 직불금 사무보조원 급여, 기타 사무용품 구입
2025	· 소요액 : 41,193천원 · 사업내용 : 위원회 수당, 직불금 사무보조원 급여, 기타 사무용품 구입
2026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33,000	32,945	-	55	
2025	45,000	41,193	-	3,807	
2026	46,000	-	-	46,000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농업8급 박지애	전화	4279
-----	-------	------------	-----	----------	----	------

토양개량제 지원(자체)

사업기간	2026. 2. ~ 2026. 11.	공모여부	□사전수요 ■사전지정 □공모
보조사업자	(사)한국후계농업경영 김포시연합회	대표자	최동철
사업목적	농지 전체의 토양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을 향상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통합관리망	■보แทm □사회복지시스템 □보육통합시스템 □기타() □해당없음(수령자지급형)		
법 적 근 거	농지법	제21조 제2항	
	② 국가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양을 개량·보전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4,012	0	4,012	4,012	
시비		4,012		4,012	4,012	
자부담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4,012	4,012	0	
토양개량제 지원	307-02 민경경상사업보조	· 공동살포 규산질 수량 : 20,062포(20kg) · 200원*20,062포 =	4,012	4,012	0	

□ 예산요구 사유

- 농촌의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으로 방치되는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추진
- 기존 토양개량제 지원 예산으로는 사업 추진에 한계(단가 상승)가 있어 추가 지원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최근 3개년 공동살포 단가(평균 1,400원/포)에 비해 금년도 단가(1,000원/포)가 하향 설정되었으며, 금년도 단가(1,000원/포) 유지 시 인력 및 장비투입이 제한되어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적기 살포의 어려움이 예상됨
-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동살포 위원회 심의 시 지원단가 상향 요청(1,000원 -> 1,200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2.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해당사항 없음
2025	○ 해당사항 없음
2026	○ 사업추진중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4	-	-	-	-	-	-	-	-	-	
2025	-	-	-	-	-	-	-	-	-	
2026	-	-	-	-	-	-	-	-	-	2.15.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행정9급 황철현	전화	4285
-----	-------	------------	-----	----------	----	------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관내 농지
사업규모	115대		
사업목적	고령 및 중·소농업인, 여성농업인 등의 영농편의 증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
	제4조(자금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에게 농업기계의 개발, 생산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186,000	143,333	58,750	84,583	-42,667	
국비		0		0	0	
도비	55,800	43,000	17,625	25,375	-12,800	
시비	130,200	100,333	41,125	59,208	-29,867	
기타	186,000	143,333	58,750	84,583	-25,833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4,583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총 사업량 115대 · 품목별 지급단가 - 승용관리기·소형트랙터·동력운반차·고소작업차 : 5,000,000원/대 - 보행관리기 : 1,750,000원/대 - 전동전지가위, 발작물탈곡기 : 100,000원/대 - 전동분무기 : 150,000원/대 - 농산물작업대 : 300,000원/대	84,583	

□ 예산요구 사유

- 사회적 약자와 농업을 시작하는 소농업인에게 보행관리기 등 소형농기계를 지원함으로써 영농편의 도모, 농촌일손 부족 해소 등 농업경쟁력 강화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수요조사 185대로 경기도 사업예산 증액하여 변경 내시 배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02. : 신청 및 접수
 - 2026. 03. : 사업대상자 선정
 - 2026. 04. ~ 08. : 보조금 집행 등 사업추진
 - 2026. 09. ~ 12. :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고소작업차 : 1대 . 동력운반차 : 6대 . 보행관리기 : 121대 . 전동분무기 : 52대 . 전동전지가위 : 29대
2025	. 동력운반차 : 5대 . 소형트랙터 : 2대 . 보행관리기 : 98대 . 전동전지가위 : 14대 . 전동분무기 : 31대
2026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208,100	204,095	-	4,005	
2025	186,000	185,036	-	964	
2026	58,750	-	-	58,750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농업8급 박지애	전화	4279
-----	-------	------------	-----	----------	----	------

특용작물(버섯 등) 생산시설현대화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농지
사업규모	3개소		
사업목적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한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23,350	13,100	10,250	23,350	
국비	0	9,340	5,240	4,100	9,340	
도비	0	0			0	
시비	0	14,010	7,860	6,150	14,010	
기타	0	23,350	13,100	10,250	23,35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250	
특용작물(버섯 등) 생산시설 현대화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지원단가 - 개소당 총 사업비 :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 한도 (재배사 개·보수, 증·개축은 3.3㎡당 100만원 기준, 법인에 한해서 장비 및 기기 구입비는 총사업비의 60%이내 지원) · 경정(23,350천원) - 기정(13,100천원)	= 10,250	

□ 예산요구 사유

- 특용작물(버섯 등) 재배시설 냉난방기 구입 등 현대화 지원으로 농가의 경쟁력 강화
-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우수한 품질 생산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지원농가 1개소→3개소로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02.: 사업추진계획 및 사업신청
 - 2026. 03. ~ 2026. 11.: 시설 및 장비 구입, 보조사업 집행
 - 2026. 12.: 사업완료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사업량 : 1개소 · 내 용 : 버섯배지침봉기, 콤프레샤, 냉난방기, 열풍기 · 집행액 : 15,500천원
2025	· 해당없음
2026	· 추진중(3개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5,500	15,500	-	-	
2025	-	-	-	-	
2026	13,100	-		13,100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행정6급 황은주	전화	4277
-----	-------	------------	-----	----------	----	------

선택형맞춤농정(전환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농지
사업규모	3개소		
사업목적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등의 기반확충 및 현대화를 통해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제1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력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1,567,781	560,278	217,193	343,085	-1,007,503	
국비		0			0	
도비	470,334	168,083	65,158	102,925	-302,251	
시비	1,097,447	392,195	152,035	240,160	-705,252	
기타	1,567,781	560,278	217,193	343,085	-1,007,503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43,085	
선택형 맞춤농정 (전환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선택형맞춤농정사업 : 228,723천원*3개소*50% · 경정(373,518천원*3개소*50%)-기정(217,193천원*2개소*50%)	≡ 343,085	

□ 예산요구 사유

- 지역특화품목 집중육성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여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지원대상 2개소→3개소로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사업추진계획 수립
 - 2026. 02. ~ 2026. 11.: 사업추진
 - 2026. 12.: 사업완료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사업량 : 3개소(김포파주인삼농협, 김포시포도연구회, 김포시사과연구회) · 집행액 : 465,000천원 · 내 용 : 인삼생산시설, 포도생산시설 및 장비, 사과생산시설 지원
2025	· 사업량 : 3개소(김포파주인삼농협, 신김포농협, 김포시포도연구회) · 집행액 : 1,567,781천원 · 내 용 : 인삼생산시설 및 인삼가공시설, 농산물 자동육묘장, 포도생산시설 및 장비 지원
2026	· 추진중(3개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465,000	465,000	-	-	
2025	1,567,781	1,567,781	-	-	
2026	217,193	-	-	217,193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행정6급 황은주	전화	4277
-----	-------	------------	-----	----------	----	------

2026년 친환경농가 재해복구비 추가지원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농지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호우로 인한 농업재해 피해를 입은 친환경 농업인의 경영안전 도모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포함한다)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
① 도지사는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2호 및 제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재해로 친환경농수산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 재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720	1,798	-1,078	720	
국비		0			0	
도비	0	288	719	-431	288	
시비	0	432	1,079	-647	432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78	
2026년 친환경농가 재해복구비 추가지원사업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 보상금	· 친환경농가 재해복구비 추가지원 : 경정(720천원*1개소)-기정(1,798천원*1개소)	= -1,078	

□ 예산요구 사유

- '25.8.13. 호우로 인한 농업재해 피해를 입은 친환경농가의 농업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확정내시서에 따른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 재해복구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2026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1,798	-	-	1,798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행정6급 황은주	전화	4277
-----	-------	------------	-----	----------	----	------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농지
사업규모	8개소		
사업목적	과수 냉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통한 과수 생산의 안전성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1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49,600	0	49,600	49,600	
국비	0	0			0	
도비	0	14,880		14,880	14,880	
시비	0	34,720		34,720	34,720	
기타	0	12,400		12,400	12,40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9,600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열풍방상팬 구입비(6,200천원*8대)	= 49,600	

□ 예산요구 사유

○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으로 과수 생산의 안전성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른 신규예산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
일자	2026.11.반영예정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02.: 사업추진계획 및 사업신청
 - 2026. 03. ~ 2026. 11.: 장비 구입, 보조사업 집행
 - 2026. 12.: 사업완료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2026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	-	-	-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행정6급 황은주	전화	4277
-----	-------	------------	-----	----------	----	------

농식품 수출포장재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수출농산물 생산자단체 3개소		
사업목적	수출농산물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수출 농업인의 생산 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수출 증대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4,716	7,734	6,637	1,097	3,018	
국비	0	0			0	
도비	1,415	2,320	2,320	0	905	
시비	3,301	5,414	4,317	1,097	2,113	
기타	4,716	7,734	6,637	1,097	3,018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97	
농식품 수출포장재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포장재 : 2,000원*1,097매*50%	1,097	

□ 예산요구 사유

- 신선 농산물을 재배하여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 작목반,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품목별 수출용 포장에 소요되는 박스, 패드, 라벨지 등 지원
- 수출에 필요한 포장재 지원을 통한 관내 농산물 수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

□ 예산증감 사유

- '24년 최초 수출 농산물인 샤인머스켓 지원에 따른 예산 증액
 - 수출 농산물 포장시 필요한 기타 부자재(난좌, 파렛트 등) 지원 예산 증액
- ※ 2026년 경기도 농식품 국제시장 진출 지원사업 사업 지침(안) 알림 및 의견 조회 실시(농식품유통과-1348 (2026.1.22.)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사업계획수립
 - 2026. 02. : 사업대상자 선정
 - 2026. 03. : 사업추진
 - 2026. 12. :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지원단체 : 2개소 (김포파주인삼농협, 김포수출배작목회) ○ 지원예정 : 수출용 배 박스 및 홍삼제품 포장재 등
2025	○ 지원단체 : 2개소 (김포파주인삼농협, 김포수출배작목회) ○ 지원예정 : 수출용 배 박스 및 홍삼제품 포장재 등
2026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4,025	4,025	-	-	
2025	4,716	4,716	-	-	
2026	6,637	-	-	6,637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최재명	담당자	농업8급 김수연	전화	4283
-----	-------	----------	-----	----------	----	------

GAP 안전성 분석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GAP 안전성 분석 38점 / 검사 47건		
사업목적	GAP 안전성 분석지원으로 농수산물우수관리제도 활성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 제3호
		정부는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 또는 농수산물의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장자재, 시설 및 자동화장비 등의 매입 및 농수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운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 우수관리인증기관, 농산물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시설의 사업자 또는 우수관리인증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27,600	19,426	19,426	0	-8,174	
국비	13,800	9,713	9,713	0	-4,087	
도비		0			0	
시비	13,800	9,713	9,713	0	-4,087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0	
GAP 안전성 분석지원	207-01 연구용역비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 경정(262,500원*38점)-기정(262,500원*36점) =	550	
	301-14 기타보상금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경정(200,000원*47건)-기정(200,000원*50건) =	-550	

□ 예산요구 사유

-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및 농경지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의 증가로 GAP 신규 인증 농가 확대에 기여하고 농산물의 안전성 증대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른 통계목별 금액 변경(총액 동일)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사업계획 수립
 - 2026. 03.: 사업추진
 - 2026. 12.: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 158점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25개소
2025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 76점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28개소
2026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30,668	23,222	-	7,446	
2025	27,600	15,359	-	12,241	
2026	19,426	-	-	19,426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최재명	담당자	농업9급 박민경	전화	4284
-----	-------	----------	-----	----------	----	------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김포시 임산부 1,640명		
사업목적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구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조」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어업·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 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육성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9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 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384,000	314,880	220,800	94,080	-69,120	
국비	0	157,440	0	157,440	157,440	
도비	115,200	47,232	66,240	-19,008	-67,968	
시비	268,800	110,208	154,560	-44,352	-158,592	
기타	96,000	78,720	0	78,720	-17,28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94,080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경정(240천원*1,640명*80%)-기정(230천원*1,200명*80%) =	94,080	

□ 예산요구 사유

-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여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 및 건강 증진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지급대상자 1,200명에서 1,640명으로 총 440명 증가로 증액 요구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정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2.: 사업 신청
 - 2026. 3.: 사업대상자 선정 및 공급업체 확정
 - 2026. 4. ~ 11.: 사업 추진
 - 2026. 12.: 사업 정산 및 실적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사업수혜자 : 1,053명 · 지급액 : 504,192천원
2025	· 사업수혜자 : 1,200명 · 지급액 : 384,000천원
2026	· 추진 중(사업수혜자 1,640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504,192	504,192	-	-	
2025	384,000	384,000	-	-	
2026	220,800	-	-	220,800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행정9급 황철현	전화	4285
-----	-------	------------	-----	----------	----	------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학교
사업규모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91개교 약 62,000명		
사업목적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 우수축산물 공급으로 급식 품질 향상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학교급식법	제8조 제4항
		제8조(경비부담 등)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제2호
		제5조(지원방법) ② 시장은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2.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 협약을 통하여 「양곡관리법」, 「축산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격보전, 생산비 지원, 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차액 보조 또는 직접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980,000	1,000,000	826,000	174,000	20,000	
국비		0			0	
도비	490,000	500,000	413,000	87,000	10,000	
시비	490,000	500,000	413,000	87,000	1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74,000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 경정(1,000,000,000원)-기정(826,000,000원)	= 174,000	

□ 예산요구 사유

- G마크 축산물 축종별 단가 지원으로 관내 학교에서 우수축산물을 사용하여 급식의 질적 향상 및 학생들의 건강 증진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3월 고등학교 1개교 신설 및 '26년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본예산 가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 편성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9185(2025. 11. 13.)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추진계획 수립
 - 2026. 1. ~ 12. : G마크 우수축산물 공급 및 사업비 집행
 - 2026. 12. :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지원학교 : 87개교 · 공급물량 : 축산물 434,044kg
2025	· 지원학교 : 90개교 · 공급물량 : 축산물 441,642kg
2026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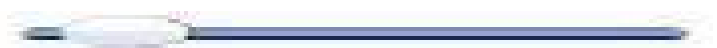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920,000	920,000	-	-	
2025	980,000	980,000	-	-	
2026	826,000	-	-	826,000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공공급식센터팀장 박정인	담당자	해양수산8급 박주희	전화	4290
-----	-------	--------------	-----	------------	----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 업 설 명 서

축산과



경기한우명품화 사업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관내 축산농가
사업규모	3,350두(건)		
사업목적	한우 개량 촉진 및 사육기반을 구축하여 한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축산법	제3조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297,150	164,830	106,973	57,857	-132,320	
국비	0	0	0	0	0	
도비	89,145	49,449	32,092	17,357	-39,696	
시비	208,005	115,381	74,881	40,500	-92,624	
기타	190,950	122,130	63,200	34,182	-68,82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7,857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가축개량사업 : 경정 (46,450,000원) - 기정 (30,146,000원) =	16,304	
		· 경영개선사업 : 경정 (10,230,000원) - 기정 (6,639,000원) =	3,591	
		· 시설개선사업 : 경정(108,150,000원) - 기정 (70,188,000원) =	37,962	

□ 예산요구 사유

○ 한우개량 촉진 및 사육기반 구축 지원을 통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

□ 예산증감 사유

○ 사업량 증액 내시(2,782두 → 3,350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3. : 사업 신청, 선정
 - 2026. 03. ~ 2026. 12. : 사업추진
 - 2026. 12. :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사업량 : 3,350두(수) - 집행액 : 120,650천원
2025	- 사업량 : 4,370두(수) - 집행액 : 297,150천원
2026	- 사업 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20,650	120,650	-	-	
2025	297,150	297,150	-	-	
2026	106,973	-	-	106,973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6급 박정미	전화	4302
-----	-----	----------	-----	----------	----	------

낙농육우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관내 낙농·우유 사육 농가
사업규모	4,868개소/두/명		
사업목적	가축 개량, 시설개선 등으로 가축사육환경개선 및 생산능력 향상으로 농가 경영개선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축산법	제3조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240,700	108,353	59,550	48,803	-132,347	
국비	0	0	0	0	0	
도비	72,210	32,506	17,865	14,641	-39,704	
시비	168,490	75,847	41,685	34,162	-92,643	
기타	240,700	108,353	59,550	48,803	-132,347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8,803	
낙농육우산업 경쟁력 강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가축개량사업 : 경정(43,380,000원) - 기정(14,550,000원)	= 28,830	
		· 경영개선사업 : 경정(26,623,000원) - 기정(15,000,000원)	= 11,623	
		· 시설개선사업 : 경정(38,350,000원) - 기정(30,000,000원)	= 8,350	
		* 세부사업량 예산증감사유 참고		

□ 예산요구 사유

- 사육 환경 개선, 가축 개량, 시설·장비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낙농육우산업 기반 구축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사업량 증가 및 세부사업 확정)
- 가축개량사업 : 혈통등록 920두, 능력검정 1,950두, 선형심사 880두, 유전체분석 105두
 - 경영개선분야 : 농가헬퍼 250일, 육우품질개선 30두, 버짐치료 24두, 송아지 대용유 700두
 - 시설개선분야 : IOT번식관리시스템 4개소, 대형환풍기 1대, 사육환경개선 1개소, 축사단열 1개소, 저지육성개선 1개소, 축사노후지붕교체 1개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추진계획 수립
 - 2026. 03. : 신청접수 및 사업대상자 선정
 - 2026. 03. ~ 2026. 12. : 사업추진
 - 2026. 12. :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예산액 : 107,250천원 - 사업량 : 5,648두/개소/대/명 - 집행액 : 107,241천원
2025	- 예산액 : 240,700천원 - 사업량 : 5,423두/개소/대/명 - 집행액 : 230,700,천원
2026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07,250	107,241	-	9	
2025	240,700	230,700	-	10,000	
2026	59,550	-	-	59,550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8급 김효건	전화	4304
-----	-----	----------	-----	----------	----	------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관내 양돈농가
사업규모	시설 및 장비 49개소		
사업목적	돈사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농가 소득증대 기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축산법	제3조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65,000	80,000	16,000	64,000	15,000	
국비	0	0	0	0	0	
도비	19,500	24,000	4,800	19,200	4,500	
시비	45,500	56,000	11,200	44,800	10,500	
기타	65,000	80,000	16,000	64,000	15,00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4,000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시설 및 장비 지원 : 경정(80,000,000원) - 기정(16,000,000원) * 세부사업량 예산증감사유 참고	64,000	

□ 예산요구 사유

- 냉·난방기, 안개분무기 등 사육환경 개선지원을 통해 양돈산업의 지속성 및 경쟁력 강화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사업량 증가 및 세부사업 확정)
 - 지원내역 : 냉난방기 4대, 축사단열 1개소, 안개분무기 1개소, 악취저감장치 2개소, 지하수 정수시설 1개소, 포유모돈 급이기 40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추진계획 수립
 - 2026. 03. : 신청접수 및 사업대상자 선정
 - 2026. 03. ~ 2026. 12. : 사업추진
 - 2026. 12. :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2024	- 지원내역 : 냉·난방기 6대, 자돈위생갈판 200세트, 자동소화패치 2개소 - 집행액 : 52,500천원
2025	- 지원내역 : 냉·난방기 6대, 지하수 정수시설 1개소 - 집행액 : 60,000천원
2026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54,200	52,500	-	1,700	
2025	65,000	60,000	-	5,000	
2026	16,000	-	-	16,000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8급 김효건	전화	4304
-----	-----	----------	-----	----------	----	------

가금 및 기타가축 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관내 가금 및 기타가축 사육농가
사업규모	21,394수/개소/대		
사업목적	가금 및 기타가축 사육 환경 및 시설 개선 지원으로 가축 생산성 향상, 경영안정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축산법	제3조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162,600	106,667	66,667	40,000	-55,933	
국비	0	0	0	0	0	
도비	48,780	32,000	20,000	12,000	-16,780	
시비	113,820	74,667	46,667	28,000	-39,153	
기타	162,600	106,667	66,667	40,000	-55,933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0,000	
가금 및 기타가축 경쟁력 강화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시설개선 : 경정(70,000,000원) - 기정(40,000,000원) · 장비개선 : 경정(36,667,000원) - 기정(26,667,000원) * 세부사업량 예산증감사유 참고	= 30,000 = 10,000	

□ 예산요구 사유

- 축사 내 냉·난방기, 환기시설, 종란운반차량 등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축사의 환경개선, 가축의 생산성 향상, 노동력 절감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사업량 증가 및 세부사업 확정)
 - 지원내역 : 축사단열 1개소, 폐사축 저온저장고 1개소, 안개분무기 2개소, 환기시설 3개소, 종란운반차량 1대, 냉난방기 2대, 난각 마킹비 3개소, 계란생산이력 표시기 1대, 오리농가 난방 유류비 지원 380마리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추진계획 수립
 - 2026. 03. : 신청접수 및 사업대상자 선정
 - 2026. 03. ~ 2026. 12. : 사업추진
 - 2026. 12. :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2024	- 예산액 : 101,250천원 - 사업량 : 14개소 - 집행액 : 100,479천원
2025	- 예산액 : 162,600천원 - 사업량 : 19개소 - 집행액 : 140,616천원
2026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01,250	100,479	-	772	
2025	162,600	140,616	-	21,984	
2026	66,667	-	-	66,667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8급 김효건	전화	4304
-----	-----	----------	-----	----------	----	------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관내 양봉농가
사업규모	7,945개/kg/본/회		
사업목적	화분매개 및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양봉산업 관리 및 양봉농가 경쟁력 강화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40,574	40,000	26,667	13,333	-574	
국비	0	0	0	0	0	
도비	12,172	12,000	8,000	4,000	-172	
시비	28,402	28,000	18,667	9,333	-402	
기타	35,214	40,000	26,667	13,333	4,786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3,333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시설 및 장비 지원 : 경정(40,000,000원) - 기정(26,667,000원) = * 세부사업량 예산증감사유 참고	13,333	

□ 예산요구 사유

- 양봉농가에 자연화분, 품질검사 등 지원을 통해 양봉산업 유지관리 및 지속가능한 양봉업 육성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사업량 증가 및 세부사업 확정)
- 지원내역 : 밀원수 묘목 120본, 품질검사 70회, 양봉사료 7,500kg, 면역증강제 35개, 소초광 150개, 전면왕농 70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추진계획 수립
 - 2026. 03. : 신청접수 및 사업대상자 선정
 - 2026. 03. ~ 2026. 12. : 사업추진
 - 2026. 12. :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2024	- 양봉농가 밀원수 묘목 200수, 품질검사 62회, 자연화분 7,550kg, 여왕벌 육성 1개소 지원
2025	- 소초광 180박스, 전면양봉 190개, 품질검사 44회, 양봉 전용사료 7,000kg, 여왕벌 육성 1개소 지원
2026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40,690	37,368	-	3,322	
2025	40,574	40,550	-	24	
2026	26,667	-	-	26,667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8급 김효건	전화	4304
-----	-----	----------	-----	----------	----	------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관내 양봉농가
사업규모	563대/개		
사업목적	양봉농가에 현대화된 양봉장비 지원으로 노동력 감소 및 농가소득 증대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19,800	21,667	19,800	1,867	1,867	
국비	0	0	0	0	0	
도비	5,940	6,500	5,940	560	560	
시비	13,860	15,167	13,860	1,307	1,307	
기타	19,800	21,667	19,800	1,867	1,867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867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시설 및 장비 지원 : 경정(21,667,000원) - 기정(19,800,000원) * 세부사업량 예산증감사유 참고	1,867	

□ 예산요구 사유

- 양봉농가에 현대화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우수한 품질의 양봉 산물 생산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사업량 증가 및 세부사업 확정)
 - 지원내역 : 채밀기 3대, EPP벌통 550개, 말벌퇴치장비 6대, 상차용리프트 1대, 벌꿀소분기 2대, 고압스팀소독기 1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추진계획 수립
 - 2026. 03. : 신청접수 및 사업대상자 선정
 - 2026. 03. ~ 2026. 12. : 사업추진
 - 2026. 12. :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2024	- 예산액 : 16,100천원 - 사업량 : 524개소/대 - 집행액 : 16,100천원
2025	- 예산액 : 19,800천원 - 사업량 : 324개소/대 - 집행액 : 19,400천원
2026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6,100	16,100	-	-	
2025	19,800	19,400	-	400	
2026	19,800	-	-	19,800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8급 김효건	전화	4304
-----	-----	----------	-----	----------	----	------

승마장 육성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말 사육 농가 및 승마장
사업규모		보험 11두, 장제 121두, 톱밥 51톤		
사업목적		말 사육농가 및 승마장 시설 개선을 통한 말산업 경쟁력 확보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해당조례	축산법		제3조 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말산업 육성법		제4조 제2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말산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7,365	16,276	2,670	13,606	8,911	
국비	0	0	0	0	0	
도비	2,210	4,883	801	4,082	2,673	
시비	5,155	11,393	1,869	9,524	6,238	
기타	7,365	16,276	2,670	13,606	8,911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3,606	
승마장 육성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보험 : 경정(3,850,000원) - 기정(630,000원)	= 3,220	
		. 장제 : 경정(6,050,000원) - 기정(990,000원)	= 5,060	
		. 톱밥 : 경정(6,375,000원) - 기정(1,050,000원)	= 5,326	

□ 예산요구 사유

○ 말 사육농가 및 승마장 시설 개선을 통해 승마인구 저변확대 도모 및 말산업 경쟁력 확보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사업량 증가 및 지원단가 변경)

- 보험 : 2두 → 11두(지원단가 630,000원 → 700,000원)
- 장제 : 20두 → 121두(지원단가 99,000원 → 100,000원)
- 톱밥 : 8톤 → 51톤(지원단가 262,500원 → 250,000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6. 02. ~ 2026. 03. : 사업대상자 선정
 - 2026. 03. ~ 2026. 12. : 사업 추진
 - 2026. 12.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예산액 : 4,376천원 · 집행액 : 4,375천원 · 집행잔액 : 1천원 · 지원내역 : 책임보험 4두, 장제 7두, 톱밥 21톤
2025	· 예산액 : 7,365천원 · 집행액 : 7,364천원 · 집행잔액 : 1천원 · 지원내역 : 책임보험 5두, 장제 44두, 톱밥 23톤, 규사 15.4톤
2026	· 사업 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4,376	4,375	-	1	
2025	7,365	7,364	-	1	
2026	2,670	-	-	2,670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8급 김효건	전화	4304
-----	-----	----------	-----	----------	----	------

AI 소득안정자금

사업기간	2026. 1. 1. ~ 2026. 5. 31.	사업위치	김포시 오리정로 13
사업규모	2개소		
사업목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관련 피해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
		제49조(생계안정 등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20. 2.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9. 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계안정 및 소득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9. 14.>	
	해당조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2조의2(소득안정비용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소득안정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의 이행으로 가축의 소유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2.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른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② 소득안정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5,147	5,147	0	5,147	0	
국비	5,147	0	0	0	-5,147	
도비	0	0	0	0	0	
시비	0	5,147	0	5,147	5,147	
기타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147	
AI 소득안정자금	301-14 기타보상금	· 입식지연농가 소득안정자금 보상 : 5,147,000원 =	5,147	

□ 예산요구 사유

- 국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2025.12.01.)에 따른 시비 편성
 - ※ 국비분 2025년 간주예산에 선반영 후, 2026년 회계연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시비분 추가 반영

□ 예산증감 사유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농가 2개소 소득안정 지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10. : AI 소득안정자금 수요조사 제출
 - 2025.12. : AI 소득안정자금 확정내시
 - 2025.12. : 국비분 간주예산 반영 및 명시이월
 - 2026.02. ~ 2026. 03. : 시비분 2026년 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 2026.05. : AI 소득안정자금 피해 농가 교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2026	· 사업 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5,147	-	5,147	-	간주예산
2026	5,147	-	-	5,147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행정7급 고나영	전화	4303
-----	-----	----------	-----	----------	----	------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지원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소재 매몰지
사업규모	4개소(소멸 2개소 사후관리 2개소)		
사업목적	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생성된 가축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 및 소멸화 처리 비용 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포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제1항
		①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업 중 국가와 경기도의 지원분은 제외한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부터 제50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보상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262,500	362,500	150,000	212,500	100,000	
국비	105,000	145,000	60,000	85,000	40,000	
도비	0	0	0	0	0	
시비	157,500	217,500	90,000	127,500	60,000	
기타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12,500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지원	206-01 재료비	· 매몰지 사후관리 : 경정(12,500,000원) - 기정(0원)	= 12,500	
	401-01 시설비	· 매몰지 소멸화 : 경정(350,000,000원) - 기정(150,000,000원)	= 200,000	

□ 예산요구 사유

- 과거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생성된 매몰지의 사후관리 및 발굴소멸 비용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매몰지(아프리카돼지열병 매몰지 2개소) 발굴소멸을 위한 예산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사업 기본계획 수립
 - 2026. 02.~ 2026. 10. : 매물지 사후관리 물품 구입 및 소멸화 처리 등 사업 추진
 - 2026. 11.~ 2026. 12. :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매물지 2개소 사후관리 실시
2025	· 매물지 5개소 소멸화 처리
2026	· 매물지 2개소 소멸화 계획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17,349	115,760	-	1,588	
2025	262,500	188,262	-	74,238	
2026	150,000	-	-	150,000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행정8급 김지훈	전화	4313
-----	-----	------------	-----	----------	----	------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관내 돼지, 가금 등 사육농가
사업규모	509,000두		
사업목적	양돈, 가금 축종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전염병 예방약품 공급으로 농가 경제적 손실 예방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물·화학적 처리, 매물지의 관리, 매물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109,200	118,000	57,600	60,400	8,800	
국비	0	0	0	0	0	
도비	32,760	35,400	17,280	18,120	2,640	
시비	76,440	82,600	40,320	42,280	6,160	
기타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0,400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	206-01 재료비	·가금 전염병 예방백신 지원 : 경정(100,000,000원) - 기정(51,000,000원)	= 49,000	
		·돼지 전염병 예방백신 지원 : 경정(18,000,000원) -기정(6,600,000원)	= 11,400	

□ 예산요구 사유

- 축산농가에 큰 피해를 입히나 「국비 전염병 예방백신 공급대상」에서 제외된 주요 가축전염병 (돼지 PRRS, 가금 감보로병 등)에 대한 예방약품 공급으로 축산농가 피해 예방

□ 예산증감 사유

- 가금 감보로, 돼지 PRRS 등 축산농장에 만연한 가축전염병 예방 강화를 위한 백신구입비용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기본계획 수립
 - 2026. 01. ~ 2026. 02. : 가축방역협의회(축종별 지원약품 협의 및 선정)
 - 2026. 03. ~ 2026. 06. : 사업집행(재료비 백신 구입 및 지원)
 - 2026. 08. :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예방약품 60농가 6,931두분 공급
2025	· 예방약품 60농가 6,311,249두분 공급
2026	· 사업 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32,500	27,159	-	5,341	
2025	109,200	102,407	-	6,793	
2026	57,600	-	-	57,600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수의6급 신문주 행정8급 김지훈	전화	4312 4313
-----	-----	------------	-----	----------------------	----	--------------

구제역 백신 완화제 지원(도비)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소, 돼지 사육농가
사업규모	80,000두		
사업목적	임상수의사를 가축질병 예찰 및 방역업무 등에 활용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23,760	26,400	14,850	11,550	2,640	
국비	0	0	0	0	0	
도비	7,128	7,920	4,455	3,465	792	
시비	16,632	18,480	10,395	8,085	1,848	
기타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1,550	
구제역 백신 완화제 지원 (도비)	206-01 재료비	·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 : 경정(26,400,000원) - 기정(14,850,000원)	= 11,550	

□ 예산요구 사유

-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을 위해, 농가의 백신 부작용 우려로 예방접종 기피현상 발생하여 항체 생성 저조
- 일제접종 시기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으로 백신부작용을 최소화하여 백신 항체의 상승효과 및 농가 경제손실 최소화

□ 예산증감 사유

- 백신 접종 부작용 등으로 인한 접종기피 우려로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사업계획 수립
 - 2026. 01.~2026. 02. : 가축방역 협의회(축종별 지원약품 선정)
 - 2026. 03.~2026. 04. : 사업집행
 - 2026. 04. : 상반기 일제접종 시 완화제 지원
 - 2026. 10. : 하반기 일제접종 시 완화제 지원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스트레스완화제 71,961두분 지원
2025	· 스트레스완화제 71,827두분 지원
2026	· 사업 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23,750	21,669	-	2,081	
2025	23,760	23,703	-	57	
2026	14,850	-	-	14,850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수익6급 신문주	전화	4312
-----	-----	------------	-----	----------	----	------

공수의사 활동 수당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관내 동물병원
사업규모	14명(활동수당 6, 상해보험8)		
사업목적	임상수의사를 가축질병 예찰 및 방역업무 등에 활용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79,200	93,344	81,344	12,000	14,144	
국비	0	0	0	0	0	
도비	23,760	28,002	24,402	3,600	4,242	
시비	55,440	65,342	56,942	8,400	9,902	
기타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2,000	
공수의사 활동 수당	301-14 기타보상금	· 공수의사 활동수당 : 경정(91,200,000원) - 기정(79,200,000원) =	12,000	

□ 예산요구 사유

- 관내 임상수의사를 가축질병 예찰 및 방역업무 등에 활용하여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 가축질병 방역관리 강화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

□ 예산증감 사유

- 공수의사 동원수당 인상에 따른 증액내시
(반려동물) 1,100천원/월 → 1,200천원/월 / (산업동물) 1,100천원/월 → 1,300천원/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 공수의 선정
 - 2026. 01. : 공수의 위촉
 - 2026. 01.~ 2026. 12. : 공수의 업무 수행 및 분기별 수당 지급
 - 2026. 12. : 공수의 수행평가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공수의사 6명 위촉 및 활동수당 지급
2025	· 공수의사 6명 위촉 및 활동수당 지급
2026	· 공수의사 6명 위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79,200	79,200	-	-	
2025	79,200	79,200	-	-	
2026	81,344	-	-	81,344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수의6급 신문주	전화	4312
-----	-----	------------	-----	----------	----	------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성립전)

사업기간	2026. 1. ~ 2026. 6.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AI 방역약품 2,800kg		
사업목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70,000	0	70,000	70,000	
국비	0	0	0	0	0	
도비	0	70,000	0	70,000	70,000	
시비	0	0	0	0	0	
기타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70,000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206-01 재료비	· AI 방역약품 구입 : 25,000원/포*2,800kg	= 70,000	

□ 예산요구 사유

- 전국 고병원성AI 지속 발생 관련, 김포시 질병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용 소독약 구입비용 수립

□ 예산증감 사유

- 전국 재난성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지역간 전파 차단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 성립 전 예산 수립 후 추경 예산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
일자	2026.11.반영예정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
 - 2026. 01. : 성립 전 예산 수립
 - 2026. 01.~ 2026. 03. : 사업 추진
 - 2026. 06. : 결과 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해당없음
2025	해당없음
2026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70,000	-	-	70,000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행정8급 김지훈	전화	4313
-----	-----	------------	-----	----------	----	------

럼피스킨 예방약 등 지원(소 소규모농가 접종 시술비)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관내 소 사육농가
사업규모	김포시 소 사육 소규모(50두 미만)농가 1,740두		
사업목적	럼피스킨 예방을 위한 백신 일제접종에 고령/영세 소규모 농가에 대한 접종지원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물·화학적 처리, 매물지의 관리, 매물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29,604	8,698	9,510	-812	-20,906	
국비	14,802	4,349	4,755	-406	-10,453	
도비	0	0	0	0	0	
시비	14,802	4,349	4,755	-406	-10,453	
기타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12	
럼피스킨 예방약 등 지원 (소 소규모농가 접종 시술비)	301-14 기타보상금	· 럼피스킨 백신 접종시술 : 경정(8,698,000원) - 기정(9,510,000원) =	-812	

□ 예산요구 사유

- 질병 유입 차단 전국 백신 일제접종 접종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고 보조사업 내시 (50두 미만 소규모농가 대상 수의사 접종지원하고 접종 수의사에 6,000원/두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소 소규모 사육농가 감소에 따른 감액 내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사업계획 수립
 - 2026. 04. : 럽피스킨 백신 일제접종(소규모/취약농가 수의사 백신접종 지원)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소 소규모 및 취약농가 럽피스킨 백신 수의사 접종지원 1,353두
2025	· 소 소규모 및 취약농가 럽피스킨 백신 수의사 접종지원 4,580두
2026	· 사업 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9,820	6,765	-	3,055	
2025	29,604	29,604	-	-	
2026	9,510	-	-	9,510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수의6급 신문주	전화	4312
-----	-----	------------	-----	----------	----	------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지원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관내 무항생제 인증 축산농가
사업규모	34개소		
사업목적	축산농가 무항생제 인증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 도모 및 경쟁력 제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축산법	제3조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제6조제5호, 제6호, 제13호
		시장은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축산물의 브랜드(“금빛나루”포함) 육성 및 품질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6. 축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13. 친환경축산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14,700	16,660	9,800	6,860	1,960	
국비	0	0	0	0	0	
도비	7,200	8,330	4,900	3,430	1,130	
시비	7,500	8,330	4,900	3,430	830	
기타	6,300	7,140	4,200	2,940	84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860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	301-14 기타보상금	· 무항생제 인증비 : 490,000원*14개소 경정(16,660,000원) - 기정(9,800,000원)	= 6,860	

□ 예산요구 사유

- 친환경 인증 축산농가 확대 및 G마크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무항생제 인증 및 사후관리 비용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사업량 증가(내시변경)에 따른 증액 [증 14개소(20개소 → 34개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추진계획 수립
 - 2026. 01. ~ 2026. 12. : 사업 추진
 - 2026. 12. : 결과 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무항생제 축산농가 30개소 지원
2025	· 무항생제 축산농가 31개소 지원
2026	· 사업 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4,700	14,339	-	361	
2025	14,700	14,699	-	1	
2026	9,800	-	-	9,800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동물위생팀장 신철우	담당자	농업6급 정홍문	전화	4323
-----	-----	------------	-----	----------	----	------

축산물 스마트 HACCP 구축 보급 지원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소규모 HACCP 인증 업체(예정)
사업규모	2개소		
사업목적	영세한 소규모 HACCP 인증업체의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신뢰도 향상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축산법	제3조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제6조제5호, 제6호, 제13호
		시장은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축산물의 브랜드("금빛나루"포함) 육성 및 품질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6. 축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13. 친환경축산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24,000	0	24,000	24,000	
국비	0	12,000	0	12,000	12,000	
도비	0	0	0	0	0	
시비	0	12,000	0	12,000	12,000	
기타	0	16,000	0	16,000	16,00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4,000	
축산물 스마트 HACCP 구축 보급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스마트 HACCP 구축 비용 12,000,000원*2개소 =	24,000	

□ 예산요구 사유

- 사물인터넷(IoT) 기술 기반으로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데이터를 자동 기록·관리 및 확인·평가하여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한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신규사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
일자	2026.11.반영예정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추진계획 수립
 - 2026. 01. ~ 2026. 12. : 사업 추진
 - 2026. 12. : 결과 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2026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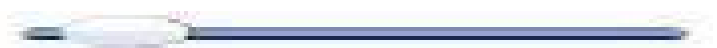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	-	-	-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동물위생팀장 신철우	담당자	농업6급 정홍문	전화	4323
-----	-----	------------	-----	----------	----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 업 설 명 서

농업진흥과



도시농업 육성 지원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도시민의 농업활동을 통하여 생산적인 여가활동과 녹색 생활공간 조성으로 선진문화 주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도시농업 지원조례	제3조 제1항
		시장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93,100	38,000	55,100	93,100	
국비	0	0	0	0	0	
도비	0	27,930	11,400	16,530	27,930	
시비	0	65,170	26,600	38,570	65,170	
기타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5,100	
도시농업 육성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 상자텃밭 보급 및 교육 운영 : 경정(4,000,000원*5개소)-기정(3,000,000원*3개소) = 11,000 ·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교육 : 경정(20,000,000원*1개소)-기정(15,000,000원*1개소) = 5,000 · 시영 도시텃밭 운영 : 경정(8,000,000원*1개소)-기정(6,000,000원*1개소) = 2,000 · 공영도시농업농장 운영 : 경정(9,000,000원*1개소)-기정(6,000,000원*1개소) = 3,000 · 도시농업 반려식물반 운영 : 8,000,000원*1개소 = 8,000 · 도시농업 교육 및 홍보행사 운영 : 24,000,000원*1개소 = 24,000		
	206-01 재료비	· 도시농업 텃밭 운영재료 구입 등 : 경정(2,050,000원*2개소)-기정(200,000원*10종) = 2,100		

□ 예산요구 사유

- 도시농업에 대한 높은 시민 만족도를 반영하여 사업 확대 운영 및 반려식물을 활용한 생활 속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예산 증액에 따른 증액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 : 추진계획 수립
 - 2026. 2. ~ 3. : 사업 대상 선정
 - 2026. 3. ~ 12. : 사업추진 및 집행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교육 : 40회(110시간), 연인원 1,373명 · 도시농업 반려식물반 : 10회, 194명 · 도시농업 홍보 및 교육운영 : 20회 925명 - 김포농업대축제 홍보관 운영, 수요자 맞춤 힐링 도시농업 교육, 어르신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교육, 김장문화 체험 교육 등 · 공영도시농업농장 및 시영 치유타밭 운영 : 2개소, 30회 교육, 텃밭 120구좌 운영
2025	·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시농업 육성사업 대체 -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교육 : 36회(104시간) 32명 모집 29명 수료 - 상자텃밭 보급 및 교육운영 : 5개소 상자텃밭 22개 보급, 개소당 6회 교육 - 도시농업 반려식물반 운영: 찾아가는 반려식물병원 운영을 위한 전문 현장강사 육성(주강사 5, 보조강사 9명) - 공영도시농업농장 및 시영 치유타밭 운영 : 2개소, 31회 교육, 텃밭 120구좌 운영
2026	· 도시농업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00,000	99,997	-	3	
2025	-	-	-	-	
2026	38,000	-	-	38,000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치유농업센터 강효정	담당자	농촌지도사 구형진	전화	4352
-----	-------	------------	-----	-----------	----	------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350명		
사업목적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을 통해 공익사업 확대 및 과학영농 기술보급 선도자로서의 능력배양 및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농촌진흥법	제2조 제4항
	위임규정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	
	해당조례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 2호
		①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21,000	24,500	15,400	9,100	3,500	
국비		0		0	0	
도비	6,300	7,350	4,620	2,730	1,050	
시비	14,700	17,150	10,780	6,370	2,45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9,100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	201-01 사무관리비	· 농업정보지 제공 : 경정(17,500원*350명*4회)-기정(17,500원*220명*4회)	= 9,100	

□ 예산요구 사유

- 농촌지도자회원에게 신속한 농업정보 제공을 통해 농업·농촌 경쟁력 향상 제고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예산 증액에 따른 증액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기본계획 수립
 - 2026. 1. ~ 12. : 농촌지도자회원 농업 정보지 제공
 - 2026. 12. :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농업정보지 제공 450명
2025	· 농업정보지 제공 350명
2026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27,000	27,000	-	-	
2025	21,000	21,000	-	-	
2026	15,400	-	-	15,400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지도기획팀장 김종무	담당자	행정9급 이 찬	전화	4333
-----	-------	------------	-----	----------	----	------

용강리 매화미르마을 체험관 철거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용강리 267-2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건물 미사용, 노후화, 안전관리 및 마을 미관을 위해 체험관 철거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①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착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118,000	93,000	25,000	118,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18,000	93,000	25,000	118,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5,000	
용강리 매화미르마을 체험관 철거	401-01 시설비	- 매화미르체험관 철거 · 가시설(경계 울타리, 강관외줄 비계 및 보호막 등)	= 25,000	

□ 예산요구 사유

- 건물 노후화 및 수요없이 방치되어 건물 철거를 통한 경관 및 안전 확보
- 철거시 안전 확보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가시설(경계 울타리, 강관외줄 비계 및 보호막 등) 설치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철거 작업시 안전조치 관련 시설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예산 증액
 - 가시설(강관외줄 비계 및 보호막, 경계 울타리) 설치공사 25,000천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반영 예정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2026. 3..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 : 공유재산심의회 결정
 - 2026. 2. :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26. 2. : 철거 업체 선정 및 건축물 해체 신고
 - 2026. 2. ~ 4. : 건축물 해체 및 완료 신고
 - 2026. 4. ~ 5. : 건축물대장 말소
 - 2026. 6. : 행정재산(토지) 소요조회
 - 2026. 6. ~ 7. : 소요조회 관련 부서 재산관리관 이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2026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93,000	-	-	93,000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농촌관광팀장 양승호	담당자	농촌지도사 우민식	전화	4337
-----	-------	------------	-----	-----------	----	------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통진읍 하성로 58-155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통한 농기계 사고예방 및 농작업 기계화율 향상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시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30,000	20,000	0	20,000	-10,000	
국비	15,000	10,000		10,000	-5,000	
도비	4,500	3,000		3,000	-1,500	
시비	10,500	7,000		7,000	-3,5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405-01 자산취득비	· 농업용파이프밴딩성형기 구입 : 10,000,000원*2대	= 20,000	

□ 예산요구 사유

- 현재 보유중인 파이프밴딩성형기 노후로 인한 정비소요 과다로 신규장비 대체 구매를 통한 원활한 농기계 교육·임대 및 농가 부담 경감
 - 파이프밴딩성형기 노후(2007년 구입), 내용연수 14년 초과

□ 예산증감 사유

- 국도비 예산 확보에 따른 추가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2. : 농업기계 구입 계획 수립
 - 2026. 3. ~ 11. : 구입 및 안전교육 등에 활용
 - 2026. 12. : 구입 결과 등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농업용굴착기 구입(30,000,000원*1대)
2025	· 농업용굴착기 구입(30,000,000원*1대)
2026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30,000	30,000	-	-	
2025	30,000	30,000	-	-	
2026	-	-	-	-	2.15.기준 집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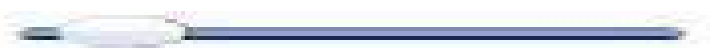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농기계팀장 정성민	담당자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정윤환	전화	4348
-----	-------	-----------	-----	----------------	----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기술지원과



□ 예산요구 사유

- 이상기후 심화 및 농촌 고령화에 따라 스마트농업 기술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농업신기술 실증 및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시험포의 안정적인 운영 필요
- 지역 소비자 수요 품목 다변화에 대응하여 농업 신기술 실증시험포를 구축·운영함으로써 김포 지역 여건에 맞는 신소득 작목 발굴과 변화하는 농업 환경관리에 대한 스마트농업 교육 필요성 증가
- 스마트온실 구축('25년 10월 완공)에 따라 ICT,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과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교육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신규·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현장 중심 실습교육 추진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농업 현장실습 교육에 대한 농업인 수요 증가에 따라 실증시험포를 활용한 스마트농업 및 시설원예 실습교육(상·하반기 각 10회) 추진을 위한 강사비 편성
- '25년 10월 스마트온실 완공에 따라 내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자산취득비(테이블, 빔프로젝터 등) 편성
- 냉난방기 설치 및 아열대 작물의 월동 생육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증액과, 간이온실 설치·온풍기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 및 부대공사 예산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승인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2025.9.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03.: 실증시험 과제 수요조사 및 추진 협의
 - 2026. 03. ~ 2026. 10.: 스마트농업 실습과정 교육 운영
 - 2026. 04. ~ 2026. 11.: 실증시험 과제별 추진 및 점검
 - 2026. 11. ~ 2026. 12.: 결과보고 및 평가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원예특작분야 지역적응 자체 실증시험> - 과제수 : 4과제 - 품 목 : 7종(백향과, 열매마, 방울토마토, 수박, 참외, 수국, 무화과) - 실증요인 : 간이형 양액시설을 통한 채소 자루재배, 지역적합 품종 선정 선발 실증 등
2025	<원예특작분야 지역적응 자체 실증시험> - 과제수 : 3과제 - 품 목 : 10개(국화, 수국, 고구마, 수박, 참외, 백향과, 파파야, 사과, 배, 무화과) - 실증요인 : 지역적합 품종 선정 선발 실증, 조직배양 실증 등
2026	- 사업추진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5,058	5,038	-	20	
2025	4,240	4,239	-	1	
2026	38,051	3,471	-	34,580	2.15.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기술지원과	사업규모	1개소	1회추경 요구액 (천원)	21,712
부기명 (세부사업)	농업신기술 교육장 설치 및 운영	사업위치	통진읍 수참리 119-2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술지원과	원예특작팀장 서이현	담당자	지방농촌지도사 김수연	전화	4369
-----	-------	------------	-----	-------------	----	------

맑은물사업본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하수과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52
사업규모	하수처리장운영비, 민자사업 임대료 지급 외 행정운영경비		
사업목적	안정적 공공하수도 서비스 제공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
		제5조(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나.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가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다. 지역개발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선행투자에 의한 시설의 유지비,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외부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해당조례	김포시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제8조제3항, 제10조제2호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김포시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15,490,000	15,200,000	0	15,200,000	-29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5,490,000	15,200,000		15,200,000	-29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5,200,000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01-03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 민간투자사업(BTO, BTL) 운영비, 임대료 등에 필요한 경비 · 지역개발등에 따른 하수도사업 선행투자 관련 비용	= 15,200,000	

□ 예산요구 사유

-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BTO, BTL) 운영비 등 소요경비 지급
- 낮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51.89%)에 따른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 보전

□ 예산증감 사유

-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임대료 및 운영비 상승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하수도 악취 차단 및 저감시설 설치
2025	- 하수도 악취 차단 및 저감시설 설치 - BTO운영비 및 BTL임대료 지급 등
2026	- 하수도 악취 차단 및 저감시설 설치 - BTO운영비 및 BTL임대료 지급 등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573,735	1,573,735	-	-	
2025	15,490,000	14,220,000	1,270,000	-	
2026	1,270,000	-	-	1,270,000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하수과	하수행정팀장 강신준	담당자	행정7급 김은유	전화	4492
-----	-----	------------	-----	----------	----	------

공원도시사업본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공원과



공원녹지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기간	2026. 4.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공원녹지
사업규모	공원 및 녹지 등 883개소(4,924,744㎡)		
사업목적	김포시 공원녹지 관련 전산데이터 업데이트 및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원녹지의 확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호의 자료(공원녹지의 환경 및 배치의 적정성, 공원녹지의 보전 및 이용 정도, 공원녹지에 관한 통계 등)를 요구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22,000	0	22,000	22,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2,000		22,000	22,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2,000	
공원녹지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 공원녹지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공원녹지 도형 DB 구축	= 2,300	
		- 공원녹지 속성 DB 구축	= 6,900	
		-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 12,800	

□ 예산요구 사유

- 2022년 공원녹지시스템 구축 완료된 공원녹지 도형·속성 전산데이터 업데이트 및 시스템 유지관리
- 신규 인수지역(향산, 신곡6, 학운5, 신곡9지구, 학운3-1 산업단지 등) 공원녹지 자료 업데이트 필요
- 도시공원 리모델링 등 추진으로 계획 변경된 공원시설에 대한 자료 정비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전문적인 전산시스템인 공원녹지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시스템 보안 강화, 긴급 장애 대응 등)를 위한 용역비 수립이 필수적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3. ~ 04.: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 2026. 04.: 용역 계약 및 착수
 - 2026. 12.: 용역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2025	-
2026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	-	-	-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과	공원운영팀장 황영숙	담당자	녹지7급 고아라	전화	4612
-----	-----	------------	-----	----------	----	------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사업기간	2026. 4. ~ 2026. 8	사업위치	풍무2호 어린이공원(풍무동 774번지)
사업규모	어린이공원 1개소 놀이기구 교체 및 탄성포장재 재포장		
사업목적	노후·파손된 기존 기차 놀이시설을 철거하고 안전성과 흥미 요소를 강화한 신규 놀이시설 재설치로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 제공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9조 제1항 / 제2조의 2	
		- 도시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관리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에 관한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100,000	0	100,000	100,000	
국비		0			0	
도비		50,000		50,000	50,000	
시비		50,000		50,000	5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0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401-01 시설비	◎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 놀이기구 철거 : 800,000원*10톤 = 8,000 . 놀이기구 설치 : 75,500,000원*1개소 = 75,500 . 탄성포장재 철거 : 45,000원*100㎡ = 4,500 . 탄성포장재 포장 : 120,000원*100㎡ = 12,000		

□ 예산요구 사유

- 풍무2호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개선이 「2026년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편성 요구하는 사항임
- 어린이공원 내 기존 기차 조합놀이대는 설치 후 장기간 사용으로 마모 및 안전성 저하 우려, 현행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기준 충족에 한계 발생
- 어린이 이용률이 높은 공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놀이시설 교체가 시급한 사항임

- 노후·파손된 기존 놀이시설을 철거하고 기차를 테마로 조성한 공원 특성에 맞게 기차 테마를 반영한 신규 놀이시설 설치로 공원 정체성과 상징성을 강화하고자 함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풍무2호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교체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임.
- 어린이 이용률이 높은 공원으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사업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7.: 2026년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신청
 - 2025. 11.: 2026년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비(도비 50백만원) 확보
 - 2026. 01.: 2026년 제1회 추경 자체 사업비(시비 50백만원) 편성 요청
 - 2026. 04.: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 2026. 05.: 공사 착공
 - 2026. 08.: 공사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2025	-
2026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	-	-	-	2.15.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공원과	사업규모	놀이기구 교체 및 탄성포장재 재포장	1회추경 요구액 (천원)	100,000
부기명 (세부사업)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사업위치	풍무동 774번지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과	공원관리1팀장 이정호	담당자	시설관리6급 유백수	전화	4617
-----	-----	-------------	-----	------------	----	------

인향근린공원 물놀이장 환경개선 공사

사업기간	2026. 3. ~ 2026. 6.	사업위치	인향근린공원(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866-10)
사업규모	물놀이장 1개소(면적 1,192㎡)		
사업목적	안전한 물놀이 환경조성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위임규정	도시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관리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에 관한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200,000	0	200,000	20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00,000		200,000	20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0	
인향근린공원 물놀이장 환경개선 공사	401-01 시설비	◎ 인향근린공원 물놀이장 환경개선공사(항공기소음 지원사업) - 물놀이장 고무칩 설치 등 : 170,000,000원 * 1개소 = 170,000 - 물놀이장 고무칩 바닥 철거 및 폐기물처리 : 30,000,000원 * 1식 = 30,000		

□ 예산요구 사유

- 인향근린공원 물놀이장은 고무칩의 다량 탈락 및 균열 현상이 반복 발생하여 안전사고 위험과 위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물놀이 환경조성을 위해 고무칩 전면 교체가 시급한 상황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항공기소음 주민지원사업예산(환경과) 확보에 따른 사업예산 편성
(항공기소음 주민지원 예산 75%, 시비 25%)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3. : 공사추진계획 수립
 - 2026. 04. ~ 06.: 공사 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2025	-
2026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	-	-	-	2.15.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공원과	사업규모	고무칩 교체 등 환경개선	1회추경 요구액 (천원)	200,000
부기명 (세부사업)	인향근린공원 물놀이장 환경개선 공사	사업위치	인향근린공원(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866-10)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과	공원관리1팀장 이정호	담당자	공업8급 박일홍	전화	4622
-----	-----	-------------	-----	----------	----	------

새장터공원 체육시설 환경개선 공사

사업기간	2026. 3. ~ 2026. 8.	사업위치	새장터공원, 선수공원(풍무동 941, 881)
사업규모	새장터공원, 선수공원 내 체육시설(다목적구장 1개소, 맨발걷기길 160m, 복합운동기구 2개소)		
사업목적	안전한 운동환경 조성 및 체육시설 환경개선으로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도시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관리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시장은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녹지활용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 녹지에 대하여 시설 정비 후 필요에 따라 수목관리, 풀베기, 청소, 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150,000	0	150,000	15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50,000		150,000	15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50,000	
새장터공원 체육시설 환경개선 공사	401-01 시설비	◎ 새장터공원 체육시설 환경개선 공사(항공기소음 지원사업) - 다목적구장 환경개선(바닥포장 등): 284,000*250㎡ = 71,000 - 운동기구 설치: 19,000,000원*2개 = 38,000 - 맨발걷기길 환경개선(전기 공사 등): 41,000,000원*1식 = 41,000		

□ 예산요구 사유

- 새장터공원 및 선수공원은 주변에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어 공원 이용객이 많고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공원이나 현재 조성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노후로 지속적인 보수작업에도 한계가 있으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현황임
- 다목적구장의 바닥포장재 및 웬스를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맨발걷기길 내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이용 시간을 확대하는 등 전반적인 공원 내 체육 시설물에 대한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함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항공기소음 주민지원사업예산(환경정책과) 확보에 따른 사업예산 편성
(항공기소음 주민지원 예산 75%, 시비 25%)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3. ~ 04.: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준공
 - 2026. 05.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2026. 05. ~ 08.: 공원 체육시설 환경개선공사 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2025	-
2026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	-	-	-	2.15.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공원과	사업규모	다목적구장 바닥포장재 교체 등	1회추경 요구액 (천원)	150,000
부기명 (세부사업)	새장터공원 체육시설 환경개선 공사	사업위치	새장터공원, 선수공원 (풍무동 941, 881)		
위치도					
현장사진					
	새장터공원 다목적구장		새장터공원 맨발걷기길		
	새장터공원 운동기구 설치장소		선수공원 운동기구 설치장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과	공원관리1팀장 이정호	담당자	녹지7급 장소리	전화	4621
-----	-----	-------------	-----	----------	----	------

무궁화 동산 조성관리

사업기간	2026. 3. ~ 6.	사업위치	양촌읍 양곡리 1331번지(양곡오라니공원)
사업규모	무궁화 동산 500㎡ 조성		
사업목적	무궁화 보급 및 홍보를 위한 무궁화 동산을 조성하여 공원 이용객에게 호국정신과 애국심 고취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도시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관리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시장은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녹지활용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 녹지에 대하여 시설 정비 후 필요에 따라 수목관리, 풀베기, 청소, 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60,000	0	60,000	60,000	
국비		30,000		30,000	30,000	
도비		0			0	
시비		30,000		30,000	3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0,000	
무궁화 동산 조성관리	401-01 시설비	◎ 무궁화 동산 조성관리: 60,000,000원*1개소 =	60,000	

□ 예산요구 사유

- 양촌읍 양곡리는 3.1운동의 하나인 ‘오라니 만세 운동’이 일어난 곳이며, 대상지 내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과 <양촌 청소년 문화의 집>이 위치하여 호국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방문객들이 공원을 찾고 있으므로, 여느 공원과 차별화되는 테마 조성이 필요함.
- 대상지 반경 600미터 이내 양곡초, 호수초, 한가람중, 신양고, 양곡고, 호수고 등 6개 초·중·고등학교가 소재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우리 꽃 무궁화를 홍보하고, 호국정신과 애국심을 고취하게 하고자 함.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도시공원분야 국비보조사업(무궁화동산 조성·관리) 추가 대상지 선정에 따른 사업예산 편성 (국비 50%, 시비 50%)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
일자	2026.11. 반영예정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3. : 사업 설계
 - 2026. 04. ~ 06.: 공사 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2025	-
2026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	-	-	-	2.15.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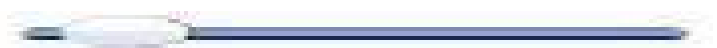
부서	공원과	사업규모	무궁화 동산 조성 1개소		1회추경 요구액 (천원)	60,000
부기명 (세부사업)	무궁화 동산 조성관리	사업위치	양촌읍 양곡리 1331(양곡오라니공원)			
위치도						
현장사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과	공원관리3팀장 안영빈	담당자	녹지7급 김정원	전화	4642
-----	-----	-------------	-----	----------	----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 업 설 명 서

산림과



생활권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사업기간	2026. 1. ~ 2026. 11.	사업위치	관내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사업규모	가로수 404km/39,559주, 도시숲 14만㎡		
사업목적	쾌적하고 깨끗한 유지관리를 통한 아름다운 도시 가로환경 제공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 등의 생태적·경관적·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을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 등과 연계되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3,749,299	2,915,481	2,715,188	200,293	-833,818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749,299	2,915,481	2,715,188	200,293	-833,818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0,293	
생활권 도시숲 조성 및 관리	401-01 시설비	· 도시숲 식생 유지관리 사업(풍무·사우·김포본동): 경정(1,750원*41,982㎡*2.5회)-기정(1,750원*41,982㎡*2회) =	36,735	
		· 도시숲 식생 유지관리 사업(고촌읍): 경정(1,750원*33,556㎡*2.5회)-기정(1,750원*33,556㎡*2회) =	29,362	
		· 도시숲 식생 유지관리 사업(장기·장기본): 경정(1,750원*33,315㎡*2.5회)-기정(1,750원*33,315㎡*2회) =	29,151	
		· 도시숲 식생 유지관리 사업(운양): 경정(1,750원*22,222㎡*2.5회)-기정(1,750원*22,222㎡*2회) =	19,445	
		· 도시숲 식생 유지관리 사업(마산·구래): 경정(1,750원*33,541㎡*2.5회)-기정(1,750원*33,541㎡*2회) =	29,348	
		· 도시숲 식생 유지관리 사업(양촌·대곶): 경정(1,750원*42,241㎡*2.5회)-기정(1,750원*42,241㎡*2회) =	36,961	
		· 도시숲 식생 유지관리 사업(통진·월곶·하성): 경정(1,750원*22,046㎡*2.5회)-기정(1,750원*22,046㎡*2회) =	19,291	

□ 예산요구 사유

- 도시숲 및 녹지의 수목관리(예초, 제초, 관목전정 등)를 적기에 맞춰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가로경관 향상 및 수목 생육환경 유지

□ 예산증감 사유

- 식생 관리의 효율성 저하 및 생육환경 악화가 우려되어, 일부 예산을 증액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꾀하고자 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 : 현장조사 및 계획보고
 - 2026. 3. ~ 4. : 사업발주 및 계약
 - 2026. 5. ~ 11. : 사업 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식생 유지관리 사업(12권역, 851,041천원 집행) - 예초(160,476㎡) 3회, 제초(91,350㎡) 3회, 관목전정(103,180㎡) 1회
2025	· 식생 유지관리 사업(7권역, 905,894천원 집행) - 예초(175,611㎡) 3회, 제초(99,255㎡) 3회, 관목전정(118,730㎡) 1회
2026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3,230,372	2,796,999	212,121	221,252	
2025	3,961,420	3,693,694	125,431	142,295	
2026	2,840,619	20,000	-	2,820,619	2.15.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산림과	사업규모	가로수 404km, 도시숲 14만㎡	1회추경 요구액 (천원)	200,293
부기명 (세부사업)	생활권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사업위치	관내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현장사진					
	식생 유지관리(예초)			식생 유지관리(제초)	
					
	식생 유지관리(관목전정)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산림과	도시녹화팀장 오재일	담당자	행정7급 고은별 녹지7급 고은혜	전화	2366 2367
-----	-----	------------	-----	----------------------	----	--------------

경기 선형공원 조성사업

사업기간	2026. 3. ~ 2026. 11.	사업위치	월곶면 포내리 포내천 일원 운양동 1346-1 일원
사업규모	2개소(L=2.4km)		
사업목적	도로, 하천 등 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공원 및 녹지로 연결하는 가로공원 조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도시숲 등”이라 한다)의 조성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480,000	0	480,000	480,000	
국비		0			0	
도비		240,000		240,000	240,000	
시비		240,000		240,000	24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80,000	
경기 선형공원 조성사업	401-01 시설비	· 경기 선형공원 조성사업 : 200,000,000원*2.4km	= 480,000	

□ 예산요구 사유

- (월곶면 포내천) 하천변에 큰나무를 식재하여 그늘목을 만들고, 마을길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과 마을과 마을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함
- (운양동 1346-1) 보행로와 차도의 분리가 분명치 않아 사고 발생이 빈번하여 가로수 식재를 통한 차량 사고 감소 효과 기대 및 인근 모담공원까지 연결하는 녹지 공간을 조성
- 관련문서 : 「2026년 도시공원 분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도비 보조사업 추가 선정결과 알림」
경기도 정원산업과-18608(2025.11.28.)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
일자	2026.11.반영예정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4. : 실시설계 용역 발주 및 착공
 - 2026. 7. :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26. 8.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 2026. 9. : 공사 발주 및 착공
 - 2026. 11. : 공사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대 상 지: 운양동 보행자 전용도로(운양동 1300-6 ~ 1318-2 일원) · 사업기간: 2024. 3. ~11. · 사업내용: 교목 190주, 초화 4,920본 식재 · 사 업 비: 267,526천원
2025	· 해당없음
2026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400,000	267,526	-	132,474	
2025	-	-	-	-	
2026	-	-	-	-	2.15.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산림과	사업규모	L=2.4km		1회추경 요구액 (천원)	480,000
부기명 (세부사업)	경기 선형공원 조성사업	사업위치	· 월곶면 포내리 포내천 일원 · 운양동 1346-1			
위치도	월곶면 포내리 포내천 일원		운양동 1346-1(모담공원로)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산림과	도시녹화팀장 오재일	담당자	행정7급 고은별 녹지7급 고은혜	전화	2366 2367
-----	-----	------------	-----	----------------------	----	--------------

쌈지공원 조성

사업기간	2026. 3. ~ 2026. 11.	사업위치	마산동 724
사업규모	1개소(567㎡)		
사업목적	생활권 원형교차로를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으로 녹지네트워크 강화 및 경관개선 효과 도모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도시숲 등”이라 한다)의 조성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100,000	0	100,000	100,000	
국비		0			0	
도비		30,000		30,000	30,000	
시비		70,000		70,000	7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0	
쌈지공원 조성	401-01 시설비	· 쌈지공원 조성사업(교목 30주, 관목 및 초화 2,000주 식재 등) : 100,000,000원*1개소 =	100,000	

□ 예산요구 사유

- 도심 속 규모가 있는 원형교차로나, 특별한 식재 계획이 없는 상태로 불법 폐기물 적치 및 생활 쓰레기 투기 등이 많아 훼손되고 있어, 쌈지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변 산림과 연결하고 녹음기능과 경관 기능을 향상하고자 함
- 관련문서 : 「2026년 도시공원 분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도비 보조사업 추가 선정결과 알림」
경기도 정원산업과-18608(2025.11.28.)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
일자	2026.11.반영예정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4. : 실시설계 용역 발주 및 착공
- 2026. 7. :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26. 8.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 2026. 9. : 공사 발주 및 착공
- 2026. 11. : 공사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대 상 지 : 월곶면 개곡리 1110-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4. 3. ~ 6. · 사업내용 : 교목 43주, 관목 1,160주 식재 및 평의자 3개, 등 의자 2개, 파고라 1개소, 야외운동기구 3개소 설치 등 · 사 업 비 : 120,348천원
2025	· 해당없음
2026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25,000	120,348	-	4,652	
2025	-	-	-	-	
2026	-	-	-	-	2.15.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산림과	사업규모	1개소(567㎡)	1회추경 요구액 (천원)	100,000
부기명 (세부사업)	삼지공원 조성사업	사업위치	마산동 724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산림과	도시녹화팀장 오재일	담당자	행정7급 고은별	전화	2366
-----	-----	------------	-----	----------	----	------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기간	2026. 3. ~ 2026. 11.	사업위치	장기동 1886-4
사업규모	1개소(0.6ha)		
사업목적	노후된 도시숲을 리모델링하여 수목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도시숲 등”이라 한다)의 조성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150,000	0	150,000	150,000	
국비		0			0	
도비		45,000		45,000	45,000	
시비		105,000		105,000	105,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50,000	
도시숲 리모델링	401-01 시설비	·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교목 30주, 관목 및 초화 식재 900주 등) : 250,000,000원*0.6ha	= 150,000	

□ 예산요구 사유

- 대상지는 초등학교, 고등학교와 맞닿아 있는 보행자도로이며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어 인근 주민들의 핵심 보행축이나, 조성 후 장기간 경과로 인한 시설(파고라, 벤치)이 노후화되었고, 식재된 교목의 과도한 성장으로 채광을 차단하여 주간에도 어두운 환경이 형성되어 상습 흡연이 빈번한 실정임
- 이에 지속적인 민원발생 지역에 대한 도시숲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 재생으로, 보행자도로의 기능을 회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녹지환경을 제공
- 관련문서 : 「2026년 도시공원 분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도비 보조사업 추가 선정결과 알림」 경기도 정원산업과-18608(2025.11.28.)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
일자	2026.11.반영예정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4. : 실시설계 용역 발주 및 착공
- 2026. 7. :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26. 8.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 2026. 9. : 공사 발주 및 착공
- 2026. 11. : 공사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2026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	-	-	-	2.15.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산림과	사업규모	1개소(0.6ha)	1회추경 요구액 (천원)	150,000
부기명 (세부사업)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	사업위치	장기동 1886-4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산림과	도시녹화팀장 오재일	담당자	녹지7급 고은혜	전화	2367
-----	-----	------------	-----	----------	----	------

태산패밀리파크 및 문수산 산림욕장 지원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하성면 하성로 585, 월곶면 성동리 산35-1 일원
사업규모	2개 사업장 운영(태산패밀리파크, 문수산 산림욕장)		
사업목적	공원 및 산림욕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한 이용 시민들의 편의 제공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제9조제1항
		제8조(시설의 유지관리)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공원의 관리운영과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475,578	511,166	509,617	1,549	35,588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75,578	511,166	509,617	1,549	35,588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549	
태산패밀리파크 및 문수산 산림욕장 지원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 태산패밀리파크 자본적지출 · 자산및물품취득비(파라솔 다목적살포기, 체험용물레,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등) : 경정(19,407,000원*1식)-기정(17,858,000원*1식) =	1,549	

□ 예산요구 사유

- 태산패밀리파크 자동심장충격기 내구연한* 초과로 교체 필요(기설치 취득일자 : 2015.01.19.)
* 자동심장충격기 내구연한: 6년(조달청고시 제2024-30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법적사항 준수
- 자동심장충격기(1,540,000원) + 조달수수료(8,310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6.: 자동심장충격기 구매 설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이용객 : 157,872명 - 시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관49리 : 계곡부 울타리 보강공사, 목교 보수, 지하수 물탱크 환경정비 등
2025	- 이용객 : 85,873명 - 시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관리 : 중앙잔디광장 휴게데크 재조성, 공예체험장 조도개선, 반려견놀이터 조명 설치 등
2026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401,685	354,146	-	47,539	
2025	475,578	436,019	-	39,559	
2026	509,617	-	-	509,617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산림과	산림휴양팀장 김선희	담당자	녹지8급 윤여빈	전화	5987
-----	-----	------------	-----	----------	----	------

유아숲 교육운영

사업기간		2026. 3. ~ 2026. 11.	사업위치	모담산유아숲체험원(운양동 1325-1)외 6개소		
사업규모		유아숲체험원 7개소, 산림교육전문가(유아숲지도사) 11명				
사업목적		산림교육전문가를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유아숲 교육 운영으로 고품질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330,000	330,000	300,000	30,000	0	
국비	165,000	165,000	150,000	15,000	0	
도비	115,500	0			-115,500	
시비	49,500	165,000	150,000	15,000	115,5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0	
유아숲 교육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유아숲지도사 위탁운영: 경정(30,000,000원*11명)-기정(30,000,000원*10명)	= 30,000	

□ 예산요구 사유

- 유아숲체험원 7개소에 유아숲지도사(11명)을 배치하여 체계적인 유아숲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족 단위 참여자에게 고품질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예산증감 사유

- 유아숲지도사 1명 증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10명 → 11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유아숲 체험원 운영 계획 수립
 - 2026. 02. : 위탁용역 발주 및 계약 체결
 - 2026. 03. ~ 11. : 유아숲 체험원 프로그램 운영
 - 2026. 12. : 운영결과 성과분석 및 실적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소요예산 : 335,867천원 · 교육장소 : 모담산·통진·솔터힐링·금빛·양곡·풀무골·초당·맹꽁이 유아숲체험원(8개소) · 운영인력 : 유아숲지도사 16명 · 운영기간 : 2024. 3. ~ 2024. 11. · 교육인원 : 영·유아기관 118개소, 누적 참여 29,010명
2025	· 소요예산 : 277,470천원 · 교육장소 : 모담산·통진·금빛·양곡·풀무골·초당·맹꽁이 유아숲체험원(7개소) · 운영인력 : 유아숲지도사 11명 · 운영기간 : 2025. 3. ~ 2025. 11. · 교육인원 : 영·유아기관 126개소, 누적 참여 29,350명
2026	· 소요예산 : 259,857천원 · 교육장소 : 모담산·통진·금빛·양곡·풀무골·초당·맹꽁이 유아숲체험원(7개소) · 운영인력 : 유아숲지도사 10명 · 운영기간 : 2026. 3. ~ 2026. 10. · 교육인원 : 모집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352,008	335,867	-	16,141	
2025	330,000	277,470	-	52,530	
2026	300,000	259,857	-	40,143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산림과	산림휴양팀장 김선희	담당자	녹지8급 윤여빈	전화	5987
-----	-----	------------	-----	----------	----	------

사방시설 점검

사업기간	2026. 1. ~ 2026. 6.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방시설 10개소
사업규모	사방시설 외관점검 10개소		
사업목적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지침」에 따라 우기 전 사방시설 점검하여 산사태 재해예방 효과 제고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 ☒ 보조(국비 70%, 도비21%, 시비9%)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산림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사방시설의 관리자는 사방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 및 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2,896	1,794	1,301	493	-1,102	
국비	2,027	1,256	911	345	-771	
도비	608	377	273	104	-231	
시비	261	161	117	44	-1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93	
사방시설 점검	401-01 시설비	· 사방시설 외관점검: 경정(179,400원*10개소)-기정(130,100원*10개소)	= 493	

□ 예산요구 사유

- 사방시설의 점검을 통해 발견되는 위험 사항을 적기에 보수하여 산림재난에 사전 대응

□ 예산증감 사유

- 사방시설 외관점검 사업 물량 변동은 없으나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개소 당 사업 단가 변경 (당초: 130,100원 → 변경: 179,400원)

※ 경기도 산림녹지과-479(2026.1.6.)호 “2026년 사방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알림”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사방시설 유지관리 계획 수립
 - 2026. 2. ~ 6. : 사방시설 외관점검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외관점검 15개소, 정밀점검 4개소
2025	· 외관점검 4개소, 정밀점검 1개소
2026	· 외관점검 10개소(2월중 추진 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4,174	12,712	-	1,462	
2025	2,896	2,896	-	-	
2026	1,301	-	-	1,301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산림과	산림보호팀장 정승수	담당자	녹지7급 이호	전화	2370
-----	-----	------------	-----	---------	----	------

보호수 관리지원

사업기간	2026. 3. ~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보호수
사업규모	보호수 23개소		
사업목적	보호수 생육환경개선 및 건강성 회복을 통해 마을의 구심체 역할 유지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산림보호법		제1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를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32,000	20,000	0	20,000	-12,000	
국비		0			0	
도비	9,600	0			-9,600	
시비	22,400	20,000		20,000	-2,4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	
보호수 관리지원	401-01 시설비	·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 4,000,000원 * 5주 =	20,000	

□ 예산요구 사유

- 보호수 생육환경 증진을 위한 외과수술 필요
- 보호수의 건강성 회복을 통해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 보호수의 전반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관내 보호수 가치 보존

□ 예산증감 사유

- 매년 ‘보호수 관리지원’으로 국도비보조가 내시되어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2026년 국도비사업 미내시로 인한 시비 편성 필요
- 관내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5주 신규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3. ~ 04. : 보호수 유지관리공사 실시설계 및 계약
 - 2026.05. : 보호수 유지관리공사 착공
 - 2026.07. : 보호수 유지관리공사 준공
 - 2026.09. ~ 12. : 보호수 안내판 조달구매 및 주변정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보호수 3개소 외과수술, 가지치기 및 수목정리
2025	· 보호수 4개소 외과수술 및 수관축기 · 보호수 8개소 안내판 재정비
2026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8,000	7,200	-	800	
2025	32,000	28,034	-	3,966	
2026	-	-	-	-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산림과	산림보호팀장 정승수	담당자	녹지7급 조창희	전화	2368
-----	-----	------------	-----	----------	----	------

산불대책비(자본)

사업기간	(봄철)2026.2.1.~5.15. 및 (가을철)2026.11.1.~12.15.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임야
사업규모	산불진화차 1대, 산불진화장비 30개		
사업목적	산불진화차 구입 · 산불진화장비 구입 등을 통한 산불 재난 대비 현장 대응력 강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산림재난방지법		제16조 제3항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산불방지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를 위한 헬리콥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 진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13,000	59,000	0	59,000	46,000	
국비		0			0	
도비	13,000	59,000		59,000	46,00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9,000	
산불대책비 (자본)	201-01 사무관리비	· 산불진화호스 등 산불진화 장비 구입 : 100,000원*30개 =	3,000	
	405-01 자산취득비	· 산불진화차 : 56,000,000원*1대 =	56,000	

□ 예산요구 사유

- 전년도 예산 13,000천원 대비 금년도 산불진화차 1대 구입(56,000천원) 및 산불진화 호스 구입(3,000천원)을 위해 산불대책비 특별교부세(자본) 59,000천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6,000천원 증액

□ 예산증감 사유

- 산불대책비 특별교부세(자본) 확정 내시되고 2026. 1. 교부됨에 따라 예산 편성
※ 경기도 산림녹지과-37958(2025.12.22.)호 - 2025년 특별교부세(2026년 산불대책비) 확정 예산내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예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3.: 산불진화차 구매 및 현장 배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해당없음
2025	· 산불예방 홍보를 위한 문수산림욕장 산불위험 알리미 구입 : 9,953,460원 ·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물품 및 헤드랜턴 구입 : 3,000,000원
2026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13,000	12,953	-	47	
2026	-	-	-	-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산림과	산림보호팀장 정승수	담당자	녹지8급 심 혁	전화	2372
-----	-----	------------	-----	----------	----	------

산림재해일자리(산림재난대응단)[경상]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임야
사업규모	산림재난대응단(24명) 운영 등		
사업목적	산불 및 산림병해충 발생 시 피해 최소화·초동진화체계 구축을 통한 산림보호 및 국민생활안정 기여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 ■보조(국비40%,도비18%,시비42%)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산림재난방지법	제13조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림재난 피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른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제41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808,908	810,173	-1,265	808,908	
국비		323,563	324,069	-506	323,563	
도비		145,603	145,831	-228	145,603	
시비		339,742	340,273	-531	339,742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265	
산림재해 일자리 (산림재난대응단)	201-01 사무관리비	· 산림재난대응단 출동차량 임차료: 경정(5,204,000원 * 2대)-기정(4,836,500원 * 2대)	= 735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산림재난대응단 물품구입: 경정(0원)-기정(1,000,000원 * 2개)	= -2,000	미편성

□ 예산요구 사유

-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을 통한 산불예방활동 및 초동 진화체계 구축
- 산림병해충 및 돌발병해충의 조기 예찰로 발생량 파악 및 적기 방제체계 구축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산림녹지과-34319(2025.11.18.)호 「2026년 산림재해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가내시(안) 변경 알림」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 가내시되어 변경 필요 (사업량 변경 및 경상·자본 구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승인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2025.9.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산림재난대응단 선발
 - 2026.02. ~ 12. : 봄철(2.1. ~ 5. 15.) 및 가을철(11.1. ~ 12.15.) 산불조심기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기간 : 2.1~5.15., 11.1~12.15. / 인원 : 공원녹지과장 외 19명, 산불진화대 28명)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기간 : 2.26 ~ 10.31. / 인원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4명)
2025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기간 : 2.1~5.15., 11.1~12.15. / 인원 : 산림과장 외 16명, 산불진화대 25명)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기간 : 3.4 ~ 10.31. / 인원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4명)
2026	· 산림재난대응단 운영(기간 : 2.1~12.15. / 인원 : 산림과장 외 14명, 산림재난대응단원 24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810,173	1,883	-	808,290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산림과	산림보호팀장 정승수	담당자	녹지7급 조창희 녹지8급 심 혁	전화	2368 2372
-----	-----	------------	-----	----------------------	----	--------------

산림재해일자리(산림재난대응단)[자본]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임야
사업규모	산림재난대응단(24명) 운영 등		
사업목적	산불 및 산림병해충 발생 시 피해 최소화·초동진화체계 구축을 통한 산림보호 및 국민생활안정 기여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 ■보조(국비40%,도비18%,시비42%)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산림재난방지법	제13조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림재난 피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른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제41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1,159	0	1,159	1,159	
국비		464		464	464	
도비		209		209	209	
시비		486		486	486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159	
산림재해 일자리 (산림재난대응단)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산림재난대응단 장비 구입 : 1,159,000원 * 1개	= 1,159	

□ 예산요구 사유

-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을 통한 산불예방활동 및 초동 진화체계 구축
- 산림병해충 및 돌발병해충의 조기 예찰로 발생량 파악 및 적기 방제체계 구축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산림녹지과-34319(2025.11.18.)호 「2026년 산림재해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가내시(안) 변경 알림」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 가내시되어 변경 필요(사업량 변경 및 경상·자본 구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
일자	2026.11.반영예정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산림재난대응단 선발
 - 2026.02. ~ 12. : 봄철(2.1. ~ 5. 15.) 및 가을철(11.1. ~ 12.15.) 산불조심기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기간 : 2.1~5.15., 11.1~12.15. / 인원 : 공원녹지과장 외 19명, 산불진화대 28명)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기간 : 2.26 ~ 10.31. / 인원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4명)
2025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기간 : 2.1~5.15., 11.1~12.15. / 인원 : 산림과장 외 16명, 산불진화대 25명)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기간 : 3.4 ~ 10.31. / 인원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4명)
2026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	-	-	-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산림과	산림보호팀장 정승수	담당자	녹지7급 조창희 녹지8급 심 혁	전화	2368 2372
-----	-----	------------	-----	----------------------	----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 업 설 명 서

클린도시과



도로청소 사각지대 정비

사업기간	2026. 3. ~ 12.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관내 주요 도로(한강로, 태장로, 산업단지 등)		
사업목적	노면청소차 투입이 불가한 사각지대 청소를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50,000	0	50,000	5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50,000	0	50,000	5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0,000	
도로청소 사각지대 정비	201-01 사무관리비	· 청소행정 우수시군 벤치마킹		
		- 500,000원*20명*1회 = 10,000,000원	= 10,000	
		· 「2026년 우리동네 새단장」 추진	= 5,000	
	307-05 민간위탁금	· 도로청소 사각지대 청소 용역 실시	= 35,000	

□ 예산요구 사유

- 도로노면청소차 및 가로청소 용역을 통한 청소가 불가한 사각지대(도로변) 청소 필요성 대두
- 신규 사업으로서 우수시군 벤치마킹을 통한 사업 추진 절차 및 노하우 등 습득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행정안전부 주관 「대한민국 새단장」 우수 시군 선정 특별교부세(50백만원)에 대한 신규사업 추진
- 「대한민국 새단장」 후속 신규 사업 「우리동네 새단장」 추진 사업비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
일자	2026.11.반영예정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 「대한민국 새단장」 우수 시군 선정
 - 2026. 01. : 「대한민국 새단장」 특별교부세 교부
 - 2026. 03. : 도로청소 사각지대 원가산정 용역 실시
 - 2026. 04. : 도로청소 사각지대 청소 용역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2026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	-	-	-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클린도시과	클린도시팀장 김문숙	담당자	행정7급 김병기	전화	4523
-----	-------	------------	-----	----------	----	------

친환경 공공광고물 설치

사업기간	2026. 3.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동 949
사업규모	관내 육교 1개소(1면) '친환경 미디어 난간' 설치		
사업목적	태양광을 연계한 육교 미디어난간을 조성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공공정보 전달 및 친환경 스마트도시 이미지 구축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6조의2 제3항
		제5조의2(국가의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470,100	0	470,100	470,1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470,100	0	470,100	470,1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70,100	
친환경 공공광고물 설치	201-02 공공운영비	· 전기사용료 : 300,000원*6월 · 통신료 : 50,000원*6월	= 1,800 = 300	
	401-01 시설비	· 친환경 육교 미디어난간 설치 : 18,000,000원*26m(1개소)	= 468,000	

□ 예산요구 사유

- 김포시 도심지 육교에 태양광을 활용, 현수막을 대체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공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미디어 글라스를 활용한 경관 연출로 야간 경관 개선 및 도시 이미지 제고

□ 예산증감 사유

- 「친환경 육교 미디어난간 설치」 사업은 특례 신기술을 시험·검증하는 국토부 주관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신규 추진코자 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
일자	2026.11.반영예정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3. ~ 05. : 도시경관 심의 및 입찰 조달 계약 등 행정절차 이행
 - 2026. 06. : 육교 미디어난간 설치 시공
 - 2026. 07. ~ : 실증 운영 개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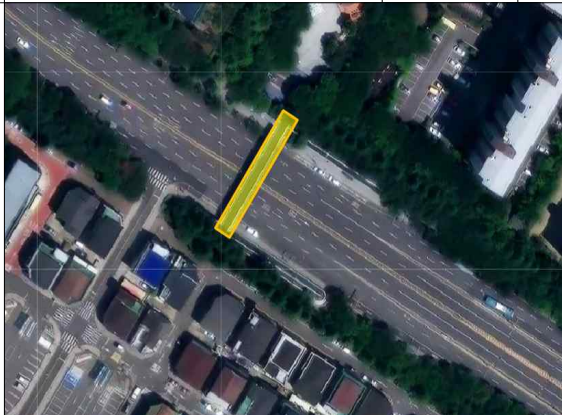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2026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	-	-	-	2.15.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클린도시과	사업규모	육교미디어난간 26m * 1개소(1면)	본예산 요구액 (천원)	470,100	
부기명 (세부사업)	친환경 육교 미디어난간 설치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동 김포고 입구 육교			
위치도			현장사진			
	사우동 949			사우동 김포고 입구 육교 (강화 방향)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클린도시과	광고물허가팀장 정종남	담당자	시설7급 장기영	전화	4532
-----	-------	-------------	-----	----------	----	------

2026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

2026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
수 도 과 · 정 수 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서

수 도 과



목 차

■ 수도권과 ■

[세 입]

	사 업 명	쪽	예산서 쪽	비고
1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	1	51	

[세 출]

	사 업 명	쪽	예산서 쪽	비고
1	누수복구 및 관로정비 ...	2	45	
2	제2정수장 신설사업 ...	4	55	
3	급수구역 지정 수립 용역 ...	7	55	
4	급수관로 GIS DB 구축 용역 ...	9	55	

(수도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부 서 명	수도과
기 정 액	84,435,383천원	요 구 액	7,146,830천원

□ 세입예산 요구

장·관·항·목 ◎부기명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세입내용·산출내역·증감사유
		최종예산 (B=C+D)	본예산 (C)			
자본적수입	8,244,446	40,646,830	33,500,000	7,146,830	32,402,384	
투자자산처분/예탁금원급회수수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회수 수입	0	39,500,000	23,500,000	16,000,000	39,500,000	· 세입내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회수 수입 · 산출내역 : 증감사유 : 제2정수장 신설 등 사업비 소요
자본잉여금수입/원인자부담금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3,000,000	0	10,000,000	-10,000,000	-3,000,000	· 세입내용 : 원인자부담금 · 산출내역 : 결포4지구 외 8지구 원인자부담금 감소분 · 증감사유 :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연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 시기 지연
유보자금/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5,244,446	1,146,830	0	1,146,830	-4,097,616	· 세입내용 : 순세계잉여금 · 산출내역 : 증감사유 : 202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반영

누수복구 및 관로정비

사업기간	2026. 01. 0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전역
사업규모	누수복구 1,500건, 관로이설 및 정비 30건, 대구경 계량기 정비 125건		
사업목적	상수도 누수 및 민원을 신속 처리하여 시민불편 최소화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수도법	제2조 제5항
		⑤ 수도사업자는 수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수도사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하며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4,000,000	4,000,000	3,000,000	1,000,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000,000	4,000,000	3,000,000	1,000,0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00	
누수복구 및 관로정비	214-02 상하수도관교체비	· 대구경 계량기 정비 : 8,000,000원*125건	= 1,000,000	

□ 예산요구 사유

- 신속한 상수도 누수복구 공사를 통해 안전사고 최소화 및 시민들에게 수도행정 신뢰도 향상
- 사유지 내 관로 이설 등 민원 처리 실시
- 상수시설물(관망 등) 정비를 실시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 대구경 계량기 및 부속시설 정비를 통해 대형수용가의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 상수관망의 수량·수질 안정성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대형 수용가 125개소의 계량기 및 부속시설물을 정비하여 깨끗한 수도물을 공급
- 계량기 교체 및 부속시설물 정비시 상수관망의 수질·수량 안정성을 향상을 위하여 기준에 적합한 시설물 추가 설치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정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상수도 민원 및 누수복구 1,946건, 상수관로 이설 및 정비 20건 처리 등
2025	· 상수도 민원 및 누수복구 2,077건, 상수관로 이설 및 정비 13건 처리 등
2026	· 상수도 민원 및 누수복구 371건 처리 등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4,050,301	3,339,784	665,805	44,712	
2025	4,665,805	4,643,675	13,365	8,765	
2026	3,013,365	684,935	-	2,328,430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수도과	급수관리팀장 이기성	담당자	시설7급 인영민 시설8급 김재형	전화	4422 4424
-----	-----	------------	-----	----------------------	----	--------------

제2정수장 신설사업

사업기간	2022. 07. ~ 2029. 12.	사업위치	양촌읍 누산리 915-4번지 일원
사업규모	정수장신설 Q=22,000m ³ /일, 도수가압장 Q=23,100m ³ /일, 도·송수관로 ¹⁾ L=20.1km		
사업목적	김포시 수도정비(변경)계획('20.09)에 따라 정수장 신설로 안정적인 용수공급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구분	☐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수도법	제2조 제5항
		⑤ 수도사업자는 수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수도사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하며 수도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250,000	29,955,000	23,955,000	6,000,000	29,705,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50,000	29,955,000	23,955,000	6,000,000	29,705,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000,000	
제2정수장 신설사업	702 공기업특별회계간 자본적전출금	· 공사비 - 제2정수장 도수관로 및 통진레코파크 차집관로 병행매설 공사비 =	6,000,000	

□ 예산증감 사유

- 제2정수장 도수관로와 통진레코파크 차집관로의 일부 노선 중복에 대하여 하수과에서 병행매설 (3.1km, 운양동 일원) 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공사비 전출 예산 편성
- ※ 병행매설 1차분에 해당하는 사업비이며 공사 완료 후 공사비 정산 예정

1) 도수관로는 취수한 물을 정수장으로 보내는 관로 / 송수관로는 정수한 물을 배수지로 보내는 관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적정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 01. ~ 2020. 02.: 기본설계용역 및 환경성 영향검토
- 2020. 09. : 김포시 수도정비계획(변경) 승인
- 2022. 07.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3. 01. ~ 2023. 10. : 사업대상지 입지 선정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
- 2023. 11. : 도시계획시설결정 요청
- 2024. 02. ~ 06. :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관련기관(부서) 협의
- 2025. 01. :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 2025. 06. :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 2026. 03. : 실시계획인가 승인
- 2026. 06. : 토지보상
- 2026. 06. : 수도사업인가 승인
- 2026. 하반기 ~ 2029.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6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추경 (D)		
계		240,859,000	3,996,400	29,955,000	23,955,000	6,000,000	206,907,600	
공 정 별	설계비	3,956,400	3,956,400	0				
	보상비	21,455,000		21,455,000	21,455,000			
	공사비	195,482,000		7,000,000	1,000,000	6,000,000	188,482,000	
	감리비	14,484,000		1,000,000	1,000,000		13,484,000	
	부대비	5,481,600	40,000	500,000	500,000		4,941,6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 · 설계의 경제성검토(VE) 용역 ·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2025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 ·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및 실시계획인가 추진 중 ·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2025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 ·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및 실시계획인가 추진 중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640,269	248,561	391,708	-	
2025	641,708	48,801	592,907	-	
2026	24,547,907	73,608	-	24,474,299	2.15.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수도과	사업규모	정수장 신설 Q=22,000㎥/일, 도·송수관로 20.1Km	1회추경 요구액 (천원)	6,000,000
부기명 (세부사업)	제2정수장 신설사업	사업위치	양촌읍 누산리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수도과	수도시설팀장 나원택	담당자	시설7급 박재만	전화	4412
-----	-----	------------	-----	----------	----	------

급수구역 지정 수립 용역

사업기간	2026. 4. 1. ~ 2026. 8. 31.	사업위치	김포시 전역
사업규모	김포시 전역의 급수 구역에 대한 지정 수립		
사업목적	수돗물 공급이 어려운 지역을 지정·공고를 통하여 민원인 편익 증진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수도법	제39조 제2항
		② 일반수도사업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역과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20,000	0	20,000	2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0,000		20,000	2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	
급수구역 지정 수립 용역	401-01 시설비	· 급수구역 지정 수립 용역 : 20,000,000원*1회	= 20,000	

□ 예산요구 사유

- 수도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는 급수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사전에 공고 의무
-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 완료됨으로써 우리시의 상수관망에 맞는 급수구역 지정이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우리시 실정에 맞는 급수구역을 지정·공고를 통하여 일반수도사업자 의무 및 법령 준수
- 수돗물 공급이 어려운 지역을 사전에 알리어 민원인 편익 도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4. : 용역 착수
 - 2026. 08. : 용역 완료 및 급수구역 지정 공고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2025	-
2026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	-	-	-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수도과	급수관리팀장 이기성	담당자	시설7급 인영민	전화	4422
-----	-----	------------	-----	----------	----	------

급수관로 GIS DB 구축 용역

사업기간	2026. 03.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일원
사업규모	2026년 신설 급수관로에 대하여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GIS 용역		
사업목적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정확하고 원활한 유지관리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수도법	제2조 제5항 ⑤ 수도사업자는 수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수도사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하며 수도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	-
		-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50,000	0	50,000	5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0,000		50,000	5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0,000	
급수관로 GIS DB 구축 용역	401-01 시설비	· 용역비 - 신설 개인급수관로 GIS DB 구축	= 50,000	

□ 예산요구 사유

- 2026년도 내 신설이 예상되는 D50mm 이상 급수관로에 대하여 GIS DB 구축을 통해 상수도 시설의 정확하고 원활한 유지관리 도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3. : GIS DB 구축 용역 발주
 - 2026. 04. ~ 2026. 12. : 개인급수 공사 시행에 따른 GIS 용역 추진
 - 2026. 12. : GIS DB 구축 용역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2025	-
2026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	-	-	-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수도과	수도시설팀장 나원택	담당자	시설9급 신태지	전화	4415
-----	-----	------------	-----	----------	----	------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서

정 수 과



목 차

▣ 정수과 ▣

[세 출]

	사 업 명	쪽	예산서 쪽	비고
1	T-N 수질자동측정기기 구입 ...	15	71	

T-N 수질자동측정기기 구입

사업기간	2026. 4. ~ 2026. 11.		사업위치	고촌읍 신곡로 152, 고촌정수장 내 TMS실																			
사업규모	T-N 수질자동측정기기 1대 구입																						
사업목적	법적 부착 대상인 T-N 항목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로 고촌정수장 효율적 수질관리 가능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12조제3항 또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수질자동측정기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의 제1항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라 한다)의 폐수배출량 또는 처리용량과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는 별표 7과 같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 대상(제35조제1항 관련)		<table border="1"> <thead> <tr> <th>측정기기의 종류</th> <th>부착 대상</th> </tr> </thead> <tbody> <tr> <td>1. 수질자동측정기기</td> <td>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td> </tr> <tr> <td>가. 수소이온농도(pH) 수질자동측정기기</td> <td>나)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td> </tr> <tr> <td>나. 총유기탄소량(TOC) 수질자동측정기기</td> <td>■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td> </tr> <tr> <td>다. 부유물질량(SS) 수질자동측정기기</td> <td>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제44조제2항 관련)</td> </tr> <tr> <td>라. 총질소(T-N) 수질자동측정기기</td> <td> <table border="1"> <thead> <tr> <th>종 류</th> <th>배 출 규 모</th> </tr> </thead> <tbody> <tr> <td>제 1 종 사업장</td> <td>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td> </tr> </tbody> </table> </td> </tr> <tr> <td>마. 총인(T-P) 수질자동측정기기</td> <td></td> </tr> </tbody> </table>				측정기기의 종류	부착 대상	1. 수질자동측정기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 수소이온농도(pH) 수질자동측정기기	나)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나. 총유기탄소량(TOC) 수질자동측정기기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다. 부유물질량(SS) 수질자동측정기기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제44조제2항 관련)	라. 총질소(T-N) 수질자동측정기기	<table border="1"> <thead> <tr> <th>종 류</th> <th>배 출 규 모</th> </tr> </thead> <tbody> <tr> <td>제 1 종 사업장</td> <td>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td> </tr> </tbody> </table>	종 류	배 출 규 모	제 1 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마. 총인(T-P) 수질자동측정기기	
측정기기의 종류	부착 대상																						
1. 수질자동측정기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 수소이온농도(pH) 수질자동측정기기	나)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나. 총유기탄소량(TOC) 수질자동측정기기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다. 부유물질량(SS) 수질자동측정기기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제44조제2항 관련)																						
라. 총질소(T-N) 수질자동측정기기	<table border="1"> <thead> <tr> <th>종 류</th> <th>배 출 규 모</th> </tr> </thead> <tbody> <tr> <td>제 1 종 사업장</td> <td>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td> </tr> </tbody> </table>	종 류	배 출 규 모	제 1 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종 류	배 출 규 모																						
제 1 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마. 총인(T-P) 수질자동측정기기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91,800	92,000	22,000	70,000	2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91,800	92,000	22,000	70,000	2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70,000	
수질자동측정 기기(T-N) 구입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 T-N 수질자동측정기기 구입 : 70,000,000원 * 1대	= 70,000	

□ 예산요구 사유

- 현재 고촌정수장은 법적 부착 의무 수질자동측정기기 중 T-N 항목에 대한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이 면제된 상태이나[폐수배출신고시 면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7 비교4)]
- 향후 고촌정수장 폐수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수질관리 및 강화를 위해 실시간 측정 가능한 T-N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자 함

□ 예산증감 사유

- T-N 수질자동측정기기(신규 1대) : 신규 자산 취득, 정수물품 비대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4. ~ 2026. 05. : 수질자동측정장비 구매계획 및 검토
 - 2026. 05. ~ 2026. 06. : 수질자동측정장비 구매(계약 및 입찰)
 - 2026. 07. ~ 2026. 11. : 수질자동측정장비 설치 및 가동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고촌정수장 전기실 냉난방기 구매설치 4대 · 염소가스 누출감지설비 구매 설치 10대
2025	· 탈수기동 세탁, 건조기 구입 1대 · 염소 용기 구매 3대 · 관용차량 구입 교체
2026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65,400	57,714	-	7,686	
2025	91,800	87,370	-	4,430	
2026	22,000	-	-	-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정수과	수질검사팀장 장영진	담당자	환경8급 고유미	전화	4484
-----	-----	------------	-----	----------	----	------

2026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
하 수 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서

하 수 과



목 차

▣ 하수과 ▣

[세 입]

	사 업 명	쪽	예산서 쪽	비고
1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	23	105, 115	

[세 출]

	사 업 명	쪽	예산서 쪽	비고
1	공중화장실 환경정비 및 운영관리 ...	24	109	

(하수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부 서 명	하수과
기 정 액	144,622,330천원	요 구 액	218,504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장·관·항·목 ◎부기명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세입내용·산출내역·증감사유
		최종예산 (B=C+D)	본예산 (C)			
사업수익	13,500,000	15,200,000	0	15,200,000	1,700,000	
영업외수익	13,500,000	15,200,000	0	15,200,000	1,700,000	
타회계전입금수입/ ◎일반회계전입금	13,500,000	15,200,000	0	15,200,000	1,700,000	· 산출내역 : BTO,BTL 운영비·임대료 등 · 증감사유 : 물가상승분 반영 및 운영사업비 증가
자본적수입	6,063,922	10,798,598	25,791,798	-14,981,496	4,734,676	
자본잉여금수입	0	6,040,000	0	6,040,000	6,040,000	
타특별회계자본적 전입금◎수도과관 로공사비	0	6,000,000	0	6,000,000	6,000,000	· 세입내용 : 제2정수장 신설사업 도수관로 병행매설 사업비
시도비보조금수입 ◎노후하수관로정 비사업(3단계)	0	40,000	0	40,000	40,000	· 세입내용 :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도비보조금 · 산출내역 : 확정내세[경기도 상하수도-623 2026. 1. 9.]]
유보자금	6,063,922	4,758,598	25,791,798	-21,021,496	-1,305,324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5,906,029	4,443,999	14,977,199	-10,521,496	-1,462,030	· 증감사유 : 2025년 세입감소에 따른 잉여금 감소
/미수금 ◎기타미수금	157,893	314,599	10,814,599	-10,500,000	156,706	· 증감사유 : 도시개발사업자 건설사업 연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감액

공중화장실 환경정비 및 운영관리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공중화장실
사업규모	공중화장실 2개소(북변공중화장실, 포내공중화장실)		
사업목적	시설개선 및 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 및 시민편의 제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의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9조제3호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유지·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미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기에 도색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145,560	369,900	205,100	164,800	224,34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45,560	369,900	205,100	164,800	224,34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64,800	
공중화장실 환경정비 및 운영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임시용 이동식 화장실 임차 : 3,000,000원	= 3,000	
	214-05 수선유지비	· 북변공중화장실 환경 개선 : 150,000,000원 - 재료비 : 40,000,000원 - 노무비 : 57,000,000원 -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등 : 53,000,000원 · 포내공중화장실 지붕 보수 : 11,800,000원 - 재료비 : 4,000,000원 - 노무비 : 4,700,000원 -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등 : 3,100,000원	= 150,000 = 11,800	

□ 예산요구 사유

- 북변공중화장실의 시설 노후화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 발생, 이용자의 편의 향상과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을 개선하고자 함.
- 2026. 1. 11.경 발생한 강풍으로 포내공중화장실 지붕이 파손되어 긴급한 보수가 요구됨.

□ 예산증감 사유

- 노후화된 북변공중화장실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
 - 바닥, 타일, 도기류 등 교체를 통해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 창호, 단열 보강을 통해 겨울철 동파 방지 및 환기시스템 개선
 - 전기 배선 정리를 통해 감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 예상치 못한 재해로 인한 파손을 복구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3. 포내공중화장실 지붕 보수 추진
 - 2026. 4. ~ 6. 북변공중화장실 환경 개선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용역, 공공요금납부 및 시설물 유지관리, 개방화장실 물품 지원 136,453천원
2025	-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용역, 공공요금납부 및 시설물 유지관리, 개방화장실 물품 지원 156,003천원
2026	-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용역, 공공요금납부 및 시설물 유지관리, 개방화장실 물품 지원 18,521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39,967	136,453	-	3,514	용역비 낙찰차액
2025	158,677	156,003	-	2,674	
2026	205,100	18,521	-	186,579	2.15.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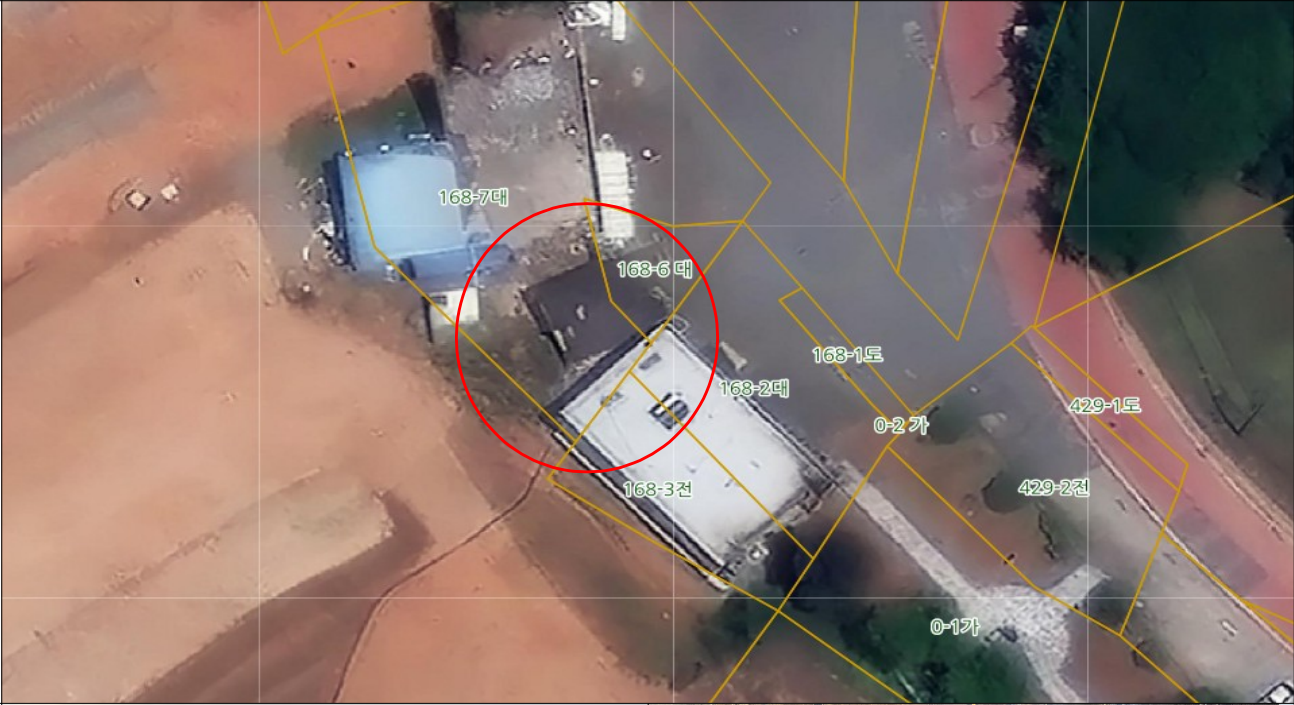
부서	하수과	사업규모	공중화장실 1개소	1회추경 요구액 (천원)	153,000
부기명 (세부사업)	북변공중화장실 환경 개선	사업위치	김포대로 949 (북변동)		

위치도



현장사진



부서	하수과	사업규모	공중화장실 1개소	1회추경 요구액 (천원)	11,800
부기명 (세부사업)	포내공중화장실 지붕 보수	사업위치	월곶면 김포대로 2857-43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하수과	오수관리팀장 신소라	담당자	환경7급 김정수	전화	4514
-----	-----	------------	-----	----------	----	------

- 2026년도 제1회 -
**김포도시공사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목 차

I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사업운영계획	9
2. 예산총칙	15
3. 예산총괄표	19
4. 자금운영계획	23
5. 성질별 과목조서	27
6. 수입예산	31
7. 사업장별 지출예산내역	
○ 태산패밀리파크	37
○ 덕포진사적지	41
○ 김포시 보훈회관	45
○ 김포생활체육관	49
○ 풍무체육문화센터	53

Ⅱ 사 업 설 명 서

- (김포도시공사)세입예산 사업설명서 57
- 태산패밀리파크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58
- 덕포진사적지 전기요금 증액 59
- 덕포진사적지 전기용량 증설공사 60
- 보훈회관 공모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61
- 솔터테니스장(실외) 헨스 방풍막 교체 62
- 김포생활체육관 불꽃감지기 교체 64
- 풍무체육문화센터 비울제 강사료 증액 66

I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사업운영계획

1. 2026년도 김포도시공사 사업운영계획

1) 시설현황

구 분	단 위	당 년 도	전 년 도	증 감	비 고
1) 시민회관/종합운동장	m ² /개소	38,307/2	38,307/2	-	
2) 사우문화체육광장	m ² /개소	18,033/1	18,033/1	-	
3) 금빛수로수상레저시설	m ² /개소	1,336/2	1,336/2	-	
4) 풍무국민체육센터	m ² /개소	4,295/1	4,295/1	-	
5) 풍무체육문화센터	m ² /개소	3,148/1	-	3,148/1	'26.01. 신규 수탁
6) 걸포다목적체육관	m ² /개소	10,727/2	10,727/2	-	
7) 김포생활체육관	m ² /개소	23,024/7	23,024/7	-	
8) 통진문화회관	m ² /개소	3,459/1	3,459/1	-	
9)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m ² /개소	2,475/1	2,475/1	-	
10) 고촌도담수영장	m ² /개소	1,071/1	1,071/1	-	
11) 노을체육관	m ² /개소	1,854/1	1,854/1	-	
12) 신곡축구장	m ² /개소	9,649/1	-	9,649/1	'26.01. 신규 수탁
13) 양곡문화체육센터	m ² /개소	4,272/1	4,272/1	-	
14) 솔터체육공원 파크골프장	m ² /개소	23,900/1	-	23,900/1	'26.01. 신규 수탁
15) 재활용수집소	m ² /개소	1,912/1	1,912/1	-	
16) 종량제봉투판매	m ² /개소	544/1	544/1	-	
17) 무지개 뜨는 언덕	m ² /개소	2,911/1	2,911/1	-	
18) 김포시 추모공원	m ² /개소	31,707/1	31,707/1	-	
19) 김포시 보훈회관	m ² /개소	1,834/1	1,834/1	-	
20) 태산패밀리파크	m ² /개소	40,307/1	40,307/1	-	
21) 하동천 생태탐방로	m ² /개소	97,686/1	97,686/1	-	
22) 문수산 산림욕장	m ² /개소	15,400/1	15,400/1	-	
23) 함상공원	m ² /개소	11,821/1대	11,821/1대	-	
24) 대명항	m ² /개소	11,596/42	11,596/42	-	
25) 대명항 주차장	대/개소	154/1	154/1	-	
26) 덕포진 사적지	m ² /개소	48,879/1	48,879/1	-	
27) 자원화센터	m ² /개소	18,876/1	18,876/1	-	
28) 주민편익시설					
29) 공영주차장	면/개소	5,006/52	5,148/55	△142/△3	생태공원 부설 4개소 위수탁 계약해지. 신규주차장 인수(운양2)
30) 교통약자이동지원	대	40대	40대	-	
31) 지하철도	m/개소	4,765/4	4,765/4	-	
32) 월곶공영차고지	m ² /개소	35,808/1	35,808/1	-	
33) 버스승차대기소	개소	1,142	1,142	-	
34) 천연가스충전소	m ² /개소	1,945/1	1,945/1	-	

2) 업무현황(세외수입)

(단위 : 천원)

구 분		당 년 도	전 년 도	증 감	비 고
합 계		27,100,834	26,056,781	1,044,053	
1)	경영지원실	270,000	213,500	56,500	
2)	시민회관	94,555	94,426	129	
3)	종합운동장	188,924	208,944	△20,020	
4)	금빛수로수상레저시설	157,500	135,000	22,500	
5)	걸포다목적체육관	376,840	363,410	13,430	
6)	풍무국민체육센터	1,050,000	1,016,446	33,554	
7)	풍무체육문화센터	107,578	0	107,578	'26.01. 신규수탁
8)	고촌도담수영장	317,316	316,554	762	
9)	노을체육관	85,000	73,200	11,800	
10)	신곡축구장	45,187	0	45,187	'26.01. 신규수탁
11)	김포생활체육관	880,200	826,755	53,445	
12)	통진문화회관	691,500	691,500	0	
13)	농어민문화체육센터	75,700	78,750	△3,050	
14)	양곡문화체육센터	841,980	780,950	61,030	
15)	솔터체육공원 파크골프장	99,860	0	99,860	'26.01. 신규수탁
16)	재활용수집소	13,501,297	13,236,566	264,731	
	종량제 재활용	981,854	962,614	19,240	
17)	태산패밀리파크	163,601	162,805	796	
18)	하동천 생태탐방로	0	0	0	
19)	문수산 산림욕장	32,961	36,956	△3,995	
20)	함상공원	0	37,765	△37,765	'25.07. 무료화
21)	대명항	280,132	240,361	39,771	
22)	덕포진 사적지	0	0	0	
23)	무지개 뜨는 언덕	15,000	87,500	△72,500	
24)	김포시 추모공원	450,000	345,800	104,200	
25)	김포시 보훈회관	0	0	0	
26)	자원화센터	977,600	940,000	37,600	
	관리	21,600	28,800	△7,200	
	소각	1,165,940	800,000	365,940	
27)	공영주차장	3,832,990	3,972,457	△139,467	
28)	교통약자이동지원	91,230	86,886	4,344	
29)	지하차도	0	0	0	
30)	월곶공영차고지	127,102	116,378	10,724	
31)	버스승차대기소	132,380	159,178	△26,798	
32)	천연가스충전소	45,007	43,280	1,727	

3) 직급별 인력 관리현황

(단위 : 명)

구 분	당 년 도	전 년 도	증 감	비 고
계	521	497	24	
1) 일반직(기능직)	160	153	7	
2) 기타직	12	12	-	
3) 공무원직	171	169	2	
4) 기간제근로자 등	178	163	15	
(대표)노조원수	241	257	△ 16	

4) 부서별 인력 관리현황

(단위 : 명)

구 분	경 영 지원실	경 영 재정실	윤 리 경영실	문 화 사업실	체 육 사업실	환 경 사업실	교 통 사업실	계
계	25	4	11	82	147	115	137	521
1) 일반직(기능직)	18	4	10	25	31	50	22	160
2) 기타직	0	0	0	7	5	0	0	12
3) 공무원직	2	0	1	30	28	17	93	171
4) 기간제근로자 등	5	0	0	20	83	48	22	178

2. 예산총칙

2. 예산총칙

제1조(총칙) 2026년도 제1회 김포도시공사 추가경정예산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조(예산총액)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의 총액은 다음과 같다.

제1관 세입예산총액	-----	52,493,978천원
제2관 세출예산총액	-----	52,193,978천원

제3조(사업수입 및 지출) 사업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다.

- 수 입 -

제1관 사업수입	-----	51,522,831천원
제1항 영업수익	-----	51,522,831천원

- 지 출 -

제1관 사업비용	-----	51,522,831천원
제1항 영업비용	-----	51,522,831천원

제4조(자본적수입 및 지출) 자본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다.

- 수 입 -

제1관 자본적 수입	-----	971,147천원
제1항 유보자금	-----	300,000천원
제2항 기타 자본적 수입	-----	671,147천원

- 지 출 -

제1관 자본적 지출	-----	671,147천원
제1항 유형자산	-----	671,147천원

제5조(예산의 전용) 다음에 계기하는 과목의 경비는 그 경비를 전용 할 수 없다.

가. 인건비(타 비목으로 전용금지) ----- 26,426,080천원

나. 업무추진비(타 비목으로부터의 전용금지) ----- 14,000천원

2026. 02. .

김포도시공사 사장

3. 예산총괄표

예산총괄표

회계연도 : 2026 년도

예산구분 : 추경1차

(단위 : 천원)

사업예산		자본예산		예산총계	
수입계(A)	51,522,831	수입계(A')	971,147	수입계(A'')	52,493,978
영업수익	51,522,831			영업수익	51,522,831
		유보자금	300,000	유보자금	300,000
		기타자본적수입	671,147	기타자본적수입	671,147
지출계(B)	51,522,831	지출계(B')	671,147	지출계(B'')	52,193,978
위수탁 대행사업(사업)	51,522,831			위수탁 대행사업(사업)	51,522,831
		위수탁 대행사업(자본)	671,147	위수탁 대행사업(자본)	671,147
차 인(A - B)	0	차 인(A' - B')	300,000	차 인(A'' - B'')	300,000

4. 자금운영계획

자금운영계획

회계연도 : 2026 년도

예산구분 : 추경1차

(단위 : 천원)

구분		당 년 도 예 정 액 (A)	기정 예산상 계상액 (B)	증 감 (A - B)
수 입 자 금 (A)		52,493,978	52,330,555	163,423
영업수익	계	51,522,831	51,360,957	161,874
	대행사업수익	51,522,831	51,360,957	161,874
유보자금	계	300,000	300,000	0
	잉여금	300,000	300,000	0
기타자본적수입	계	671,147	669,598	1,549
	기타자본적수입	671,147	669,598	1,549

자금운영계획

회계연도 : 2026 년도

예산구분 : 추경1차

(단위 : 천원)

구분		당 년 도 예 정 액 (A)	기정예산상계상액 (B)	증 감 (A - B)
지 출 자 금 (B)		52,193,978	52,030,555	163,423
위수탁 대행사업(사업)	계	51,522,831	51,360,957	161,874
	경영지원실 운영(사업)	21,201,900	21,201,900	0
	윤리경영실 운영(사업)	585,311	585,311	0
	체육시설 대행사업(사업)	8,677,276	8,562,002	115,274
	환경시설 대행사업(사업)	2,904,350	2,904,350	0
	공원시설 대행사업(사업)	1,521,168	1,474,568	46,600
	자원화센터 대행사업(사업)	9,191,938	9,191,938	0
	주차시설 대행사업(사업)	3,033,246	3,033,246	0
	교통시설 대행사업(사업)	4,407,642	4,407,642	0
위수탁 대행사업(자본)	계	671,147	669,598	1,549
	경영지원실 운영(자본)	5,750	5,750	0
	윤리경영실 운영(자본)	193,302	193,302	0
	체육시설 대행사업(자본)	270,274	270,274	0
	환경시설 대행사업(자본)	3,000	3,000	0
	공원시설 대행사업(자본)	28,431	26,882	1,549
	자원화센터 대행사업(자본)	86,340	86,340	0
	주차시설 대행사업(자본)	69,514	69,514	0
	교통시설 대행사업(자본)	14,536	14,536	0
차 액 (A - B)		300,000	300,000	0

5. 성질별 과목조서

성질별 과목조서

예산구분 : 추경1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 예산액	증 감
합 계		52,193,978	52,030,555	163,423
100 . 인건비	100	26,426,080	26,426,080	0
인건비	101	22,052,005	22,052,005	0
보수	(101 - 01)	9,453,682	9,453,682	0
기타직보수	(101 - 02)	0	0	0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1 - 03)	6,518,828	6,518,828	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 - 04)	6,079,495	6,079,495	0
퇴직급여	107	2,319,589	2,319,589	0
퇴직급여	(107 - 03)	2,319,589	2,319,589	0
평가급및성과급등	109	2,054,486	2,054,486	0
일반직평가급등	(109 - 01)	1,461,810	1,461,810	0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평가급등	(109 - 02)	592,676	592,676	0
200 . 물건비	200	20,364,816	20,304,102	60,714
일반운영비	201	8,787,640	8,748,040	39,600
사무관리비	(201 - 01)	611,526	611,526	0
공공운영비	(201 - 02)	55,677	55,677	0
행사운영비	(201 - 03)	42,000	6,000	36,000
지급수수료	(201 - 11)	3,503,726	3,503,726	0
교육훈련비	(201 - 12)	80,750	80,750	0
임차료	(201 - 13)	445,245	445,245	0
회의비	(201 - 14)	3,000	3,000	0
복리후생비	(201 - 15)	1,687,273	1,687,273	0
공공요금및제세	(201 - 21)	1,745,603	1,742,003	3,600
차량·선박비	(201 - 22)	612,840	612,840	0
여비	202	73,220	73,220	0
국내여비	(202 - 01)	61,220	61,220	0
국외업무여비	(202 - 03)	12,000	12,000	0
업무추진비	203	14,000	14,000	0
사업업무추진비	(203 - 07)	14,000	14,000	0
직무수행경비	204	322,110	322,110	0
직급보조비	(204 - 02)	304,830	304,830	0
특정업무경비	(204 - 03)	17,280	17,280	0
재료비	206	717,961	717,961	0
일반재료비	(206 - 01)	131,596	131,596	0
약품비	(206 - 02)	586,365	586,365	0

성질별 과목조서

예산구분 : 추경1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 예산액	증 감
수선유지교체비	214	4,918,460	4,897,346	21,114
수선유지비	(214 - 05)	4,918,460	4,897,346	21,114
동력비	215	5,457,020	5,457,020	0
관서업무비	217	74,405	74,405	0
정원가산업무비	(217 - 01)	29,405	29,405	0
부서업무비	(217 - 02)	45,000	45,000	0
300 . 경상이전	300	4,731,935	4,630,775	101,160
일반보전금	301	2,100,864	1,999,704	101,160
기타보상금	(301 - 12)	2,100,864	1,999,704	101,160
포상금	303	9,000	9,000	0
포상금	(303 - 01)	9,000	9,000	0
연금부담금등	304	2,574,171	2,574,171	0
연금부담금	(304 - 01)	532,203	532,203	0
국민건강보험부담금등	(304 - 02)	733,257	733,257	0
공무직(무기계약)부담금 관련	(304 - 03)	722,993	722,993	0
기타직부담금관련	(304 - 04)	0	0	0
기간제근로자부담금관련	(304 - 05)	585,718	585,718	0
배상금등	305	47,900	47,900	0
배상금등	(305 - 01)	47,900	47,900	0
400 . 자본적지출	400	671,147	669,598	1,549
시설비및부대비	401	109,300	109,300	0
시설비	(401 - 01)	109,300	109,300	0
자산취득비	405	561,847	560,298	1,549
자산및물품취득비	(405 - 01)	522,717	521,168	1,549
정보화시스템취득비	(405 - 11)	39,130	39,130	0

6. 수입예산

[경영지원실]

(단위 : 천원)

관 : 사업수익 항 : 영업수익 세항 : 대행사업수익 목 : 직접관리비수입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감
관 · 항 · 세 항 · 목				
합 계		52,493,978	52,330,555	163,423
600 사업수익		51,522,831	51,360,957	161,874
610 영업수익		51,522,831	51,360,957	161,874
623 대행사업수익		51,522,831	51,360,957	161,874
01 직접관리비수입		51,522,831	51,360,957	161,874
○ 김포시 일반회계 대행사업(시 위탁금) 161,874				
。 덕포진사적지 대행사업 10,600,000원×1식 = 10,600				
。 보훈회관 대행사업 36,000,000원×1식 = 36,000				
。 김포생활체육관 대행사업 14,114,000원×1식 = 14,114				
。 풍무체육문화센터 대행사업 101,160,000원×1식 = 101,160				

[경영지원실]

(단위 : 천원)

관 : 자본적수입 항 : 기타자본적수입 세항 : 기타자본적수입 목 : 기타자본적수입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감
관 · 항 · 세 항 · 목				
100 자본적수입		971,147	969,598	1,549
190 기타자본적수입		671,147	669,598	1,549
191 기타자본적수입		671,147	669,598	1,549
09 기타자본적수입		671,147	669,598	1,549
○김포시 일반회계 대행사업(시 위탁금)		1,549		
。태산패밀리파크 대행사업		1,549,000원×1식 = 1,549		

7. 사업장별 지출예산내역

태산패밀리파크

[태산패밀리파크]

●구분 : 자본예산 ●분야부문 : 일반공공행정(4), 일반행정
●정책사업 : 위수탁 대행사업(자본) ●단위사업 : 공원시설 대행사업(자본) ●세부사업 : 태산패밀리파크 관리운영(자본) ●목 : 자산취득비

(단위 : 천원)

구분,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세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감
합 계		434,470	432,921	1,549
자본예산		19,407	17,858	1,549
일반공공행정(4)/일반행정		19,407	17,858	1,549
위수탁 대행사업(자본)		19,407	17,858	1,549
공원시설 대행사업(자본)		19,407	17,858	1,549
태산패밀리파크 관리운영(자본)		19,407	17,858	1,549
405 자산취득비		19,407	17,858	1,549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9,407	17,858	1,549
○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1,549,000원×1대 = 1,549		

덕포진사적지

[덕포진사적지]

●구분 : 사업예산 ●분야부문 : 일반공공행정(4), 일반행정
●정책사업 : 위수탁 대행사업(사업) ●단위사업 : 공원시설 대행사업(사업) ●세부사업 : 덕포진사적지 관리운영(사업) ●목 : 일반운영비

(단위 : 천원)

구분,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세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감
합 계		50,115	39,515	10,600
사업예산		50,115	39,515	10,600
일반공공행정(4)/일반행정		50,115	39,515	10,600
위수탁 대행사업(사업)		50,115	39,515	10,600
공원시설 대행사업(사업)		50,115	39,515	10,600
덕포진사적지 관리운영(사업)		50,115	39,515	10,600
201 일반운영비		32,915	29,315	3,600
21 공공요금및제세		12,400	8,800	3,600
○ 전기요금				
경정 (900,000원×12월) - 기정 (600,000원×12월) = 3,600				
214 수선유지교체비		15,700	8,700	7,000
05 수선유지비		15,700	8,700	7,000
○ 전기용량 증설공사 7,000,000원×1식 = 7,000				

김포시 보훈회관

[김포시 보훈회관]

●구분 : 사업예산 ●분야부문 : 일반공공행정(4), 일반행정
●정책사업 : 위수탁 대행사업(사업) ●단위사업 : 공원시설 대행사업(사업) ●세부사업 : 김포시보훈회관 관리운영(사업) ●목 : 일반운영비

(단위 : 천원)

구분,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세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감
합 계		177,151	141,151	36,000
사업예산		177,151	141,151	36,000
일반공공행정(4)/일반행정		177,151	141,151	36,000
위수탁 대행사업(사업)		177,151	141,151	36,000
공원시설 대행사업(사업)		177,151	141,151	36,000
김포시보훈회관 관리운영(사업)		177,151	141,151	36,000
201 일반운영비		169,811	133,811	36,000
03 행사운영비		37,000	1,000	36,000
○ 공모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36,000,000원×1식 = 36,000		

김포생활체육관

[김포생활체육관]

●구분 : 사업예산 ●분야부문 : 일반공공행정(4), 일반행정
●정책사업 : 위수탁 대행사업(사업) ●단위사업 : 체육시설 대행사업(사업) ●세부사업 : 김포생활체육관 관리운영(사업) ●목 : 수선유지교체비

(단위 : 천원)

구분,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세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감
합 계			1,443,128	1,429,014	14,114
사업예산			1,438,990	1,424,876	14,114
일반공공행정(4)/일반행정			1,438,990	1,424,876	14,114
위수탁 대행사업(사업)			1,438,990	1,424,876	14,114
체육시설 대행사업(사업)			1,438,990	1,424,876	14,114
김포생활체육관 관리운영(사업)			1,438,990	1,424,876	14,114
214 수선유지교체비			131,981	117,867	14,114
05 수선유지비			131,981	117,867	14,114
○ 솔터테니스장(실외) 흰스 방풍막 교체			4,950,000원×1식 = 4,950		
○ 주경기장 불꽃감지기 교체			9,164,000원×1식 = 9,164		

풍무체육문화센터

[풍무체육문화센터]

●구분 : 사업예산 ●분야부문 : 일반공공행정(4), 일반행정
●정책사업 : 위수탁 대행사업(사업) ●단위사업 : 체육시설 대행사업(사업) ●세부사업 : 풍무체육문화센터 관리운영(사업) ●목 : 일반보전금

(단위 : 천원)

구분,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세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감
합 계		367,624	266,464	101,160
사업예산		367,624	266,464	101,160
일반공공행정(4)/일반행정		367,624	266,464	101,160
위수탁 대행사업(사업)		367,624	266,464	101,160
체육시설 대행사업(사업)		367,624	266,464	101,160
풍무체육문화센터 관리운영(사업)		367,624	266,464	101,160
301 일반보전금		227,610	126,450	101,160
12 기타보상금		227,610	126,450	101,160
○ 비율제 강사료(배드민턴)				
경정 (100,000원×112명×9월×90%) - 기정 (100,000원×112명×5월×90%) =	40,320			
○ 비율제 강사료(기구필라테스)				
경정 (120,000원×195명×9월×65%) - 기정 (120,000원×195명×5월×65%) =	60,840			

표 사업 설명서

(김포도시공사)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 서 명	김포도시공사
기 정 액	52,330,555천원	요 구 액	163,423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장·관·항·목 ◎부기명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세입내용·산출내역·증감사유
		최종예산 (B=C+D)	본예산 (C)			
사업예산	49,920,869	51,522,831	51,360,957	161,874	1,601,962	
사업수익	49,920,869	51,522,831	51,360,957	161,874	1,601,962	
영업수익 /직접관리비수입 ◎직접관리비수입	49,920,869	51,522,831	51,360,957	161,874	1,601,962	· 세입내용 : 사업에 소요되는 관리비수입
자본예산	877,089	971,147	969,598	1,549	94,058	
자본적수입	877,089	971,147	969,598	1,549	94,058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300,000	300,000	300,000	0	0	· 세입내용 : 설립자본금
기타자본적수입 /기타자본적수입 ◎기타자본적수입	577,089	671,147	669,598	1,549	94,058	· 세입내용 :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적수입

태산패밀리파크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사업기간		2026. 04.	사업위치	김포시 하성면 하성로 585	
사업규모		자동심장충격기 1대			
사업목적		응급상황 발생 시 초동대처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1항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1,549	0	1,549	1,549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549		1,549	1,549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549	
태산패밀리파크 관리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 자동심장충격기 : 1,540,000원*1대 - 조달수수료 : 8,310원	= 1,540 = 9	

□ 예산요구 사유

- 태산패밀리파크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기한 초과로 교체 필요(기설치 취득일자 : 2015.01.19.)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법적사항 준수
- 자동심장충격기 제조일자로부터 최대 10년 이내 사용권고 (* 보건복지부 AED 설치 및 관리 지침)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문화사업실	태산패밀리파크팀장 장성국	담당자	일반5급 김강은	전화	997-6868
-----	-------	---------------	-----	----------	----	----------

덕포진사적지 전기요금 증액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김포시 대곶면 덕포진로 103번길 130
사업규모	전기설비 증가로 전기요금 증액		
사업목적	역사문화체험관 조성 후 냉난방기 등 전기설비 증가로 전기사용량 증가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4,800	10,800	7,200	3,600	6,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800	10,800	7,200	3,600	6,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600	
덕포진사적지 관리운영	201-21 공공요금및제세	· 전기요금 : 경정(900,000원*12월)-기정(600,000원*12월) =	3,600	

□ 예산요구 사유

○ 덕포진 사적지 역사문화체험관 조성(2026.1.) 후 냉난방기 등 전기설비 증가로 전기사용량 증가

구 분	2026년 1월	2025년 1월	증가액	비고
전기요금(원)	807,790	318,050	489,740	154% 증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2. 15. 기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4,082	3,778	-	304	
2025	4,800	3,383	-	1,417	
2026	7,200	808	-	6,392	2.15.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체육사업실	함상공원팀장 박민철	담당자	일반4급 신준동	전화	987-4097
-----	-------	------------	-----	----------	----	----------

덕포진사적지 전기용량 증설공사

사업기간	2026. 04.	사업위치	김포시 대곶면 덕포진로 103번길 130
사업규모	덕포진 사적지 전기계약용량 20kw 증설		
사업목적	역사문화체험관 조성공사로 냉난방기 등 전기설비 증가로 전기사용량 증가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7,000	0	7,000	7,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7,000		7,000	7,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7,000	
덕포진사적지 관리운영	214-05 수선유지비	· 전기용량 증설공사 - 내선공사비 : 4,138,000원*1식 - 한전시설부담금 : 133,100원 * 20kw - 사용전 검사비 : 200,000원*1식	= 4,138 = 2,662 = 200	

□ 예산요구 사유

- 덕포진 사적지 역사문화체험관 2026년 1월 준공
- 역사문화체험관 냉난방기, 디지털 대형전시관 등 전기설비 증가로 전기사용량 증가
- 전기용량 증설필요(기존 20kw -> 40kw)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문화사업실	함상공원팀장 박민철	담당자	일반4급 신준동	전화	987-4097
-----	-------	------------	-----	----------	----	----------

보훈회관 공모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사업기간	2026. 04.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풍무로 146번길 82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국가보훈부 복지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공모사업 운영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36,000	0	36,000	36,000	
국비		18,000		18,000	18,000	
도비		0			0	
시비	0	18,000	0	18,000	18,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6,000	
보훈회관 관리운영	201-03 행사운영비	· 공모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 웃음치료 강사비 : 30회*120,000원	= 3,600	
		- 재료비 : 4,000원*30회*30명	= 3,600	
		- 보험료 : 1,000,000원*1회	= 1,000	
		- 홍보용 현수막 및 배너 : 5회*160,000원	= 800	
		- 식비 : (치매예방 웃음교실 참가자)9,000원*30회*50명	= 13,500	
		(보훈시네마 참가자)9,000원*30회*50명	= 13,500	

□ 예산요구 사유

- 2026년 국가보훈부 보훈단체 복지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반영
- 김포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보훈복지서비스 향상
 - 치매예방 웃음교실을 통한 보훈가족의 인지·신체건강 증진 및 사회적 교류 활성화
 - 보훈시네마 상영을 통해 보훈가족에게 자긍심과 정서적 위로 제공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추모공원팀 보훈회관	곽원규 팀장	담당자	차장 임희경	전화	070-4451-9452
-----	------------	--------	-----	--------	----	---------------

솔터테니스장(실외) 헨스 방풍막 교체

사업기간	2026. 04.	사업위치	김포한강8로 198-3(마산동)
사업규모	솔터테니스장(실외) 헨스 방풍막(186㎡)		
사업목적	솔터테니스장(실외) 헨스 방풍막이 비바람 및 자외선 노출에 의하여 훼손되어 교체하고자 함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4,950	0	4,950	4,95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950		4,950	4,95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950	
김포생활체육관 관리운영	214-05 수선유지비	· 솔터테니스장(실외) 헨스 방풍막 교체 - 고급메쉬망 제작설치 3,000,000원 * 1식 = 3,000 - 고급메쉬망 제작설치 1,100,000원 * 1식 = 1,100 - 타포린 천막 제작설치 150,000원 * 1식 = 150 - 철거 후 폐기물 처리비 250,000원 * 1식 = 250 - 부가가치세 450,000원 * 1식 = 450		

□ 예산요구 사유

- 비바람과 자외선 노출로 인하여 솔터체육공원 테니스코트 8개의 메쉬헨스 방풍막이 찢어지고 훼손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임(2014년 시설 인수 후 11년 사용)
- 방풍, 안전 기능 저하 및 시설 미관이 훼손되어 이용자 불편 초래
- 방풍막의 추가 탈락 위험이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이용시민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3.: 추진계획 수립(업체선정 및 조율)
 - 2026. 04.: 메쉬헨스 방풍막 교체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체육사업실	사업규모	솔터테니스장(실외) 헨스 방풍막 (184.42㎡)	1회추경 요구액 (천원)	4,950
부기명 (세부사업)	솔터테니스장(실외) 헨스 방풍막 교체	사업위치	김포한강8로 198-2(마산동)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체육사업실	생활체육관팀장 이윤미	담당자	일반5급 송인범	전화	996-8020
-----	-------	-------------	-----	----------	----	----------

김포생활체육관 불꽃감지기 교체

사업기간	2026. 04.	사업위치	김포한강8로 198-3(마산동)
사업규모	김포생활체육관 주경기장 불꽃감지기(4대)		
사업목적	불꽃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고객만족도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인한 불꽃감지기 교체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9,164	0	9,164	9,164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9,164		9,164	9,164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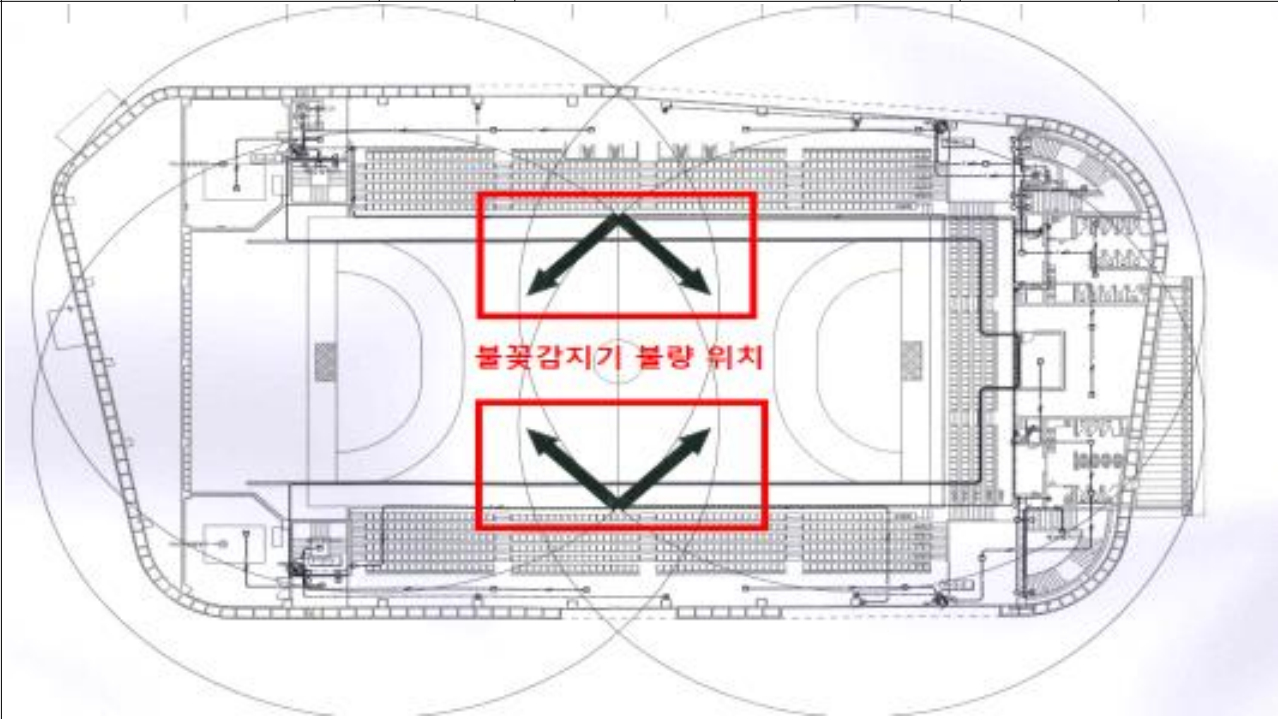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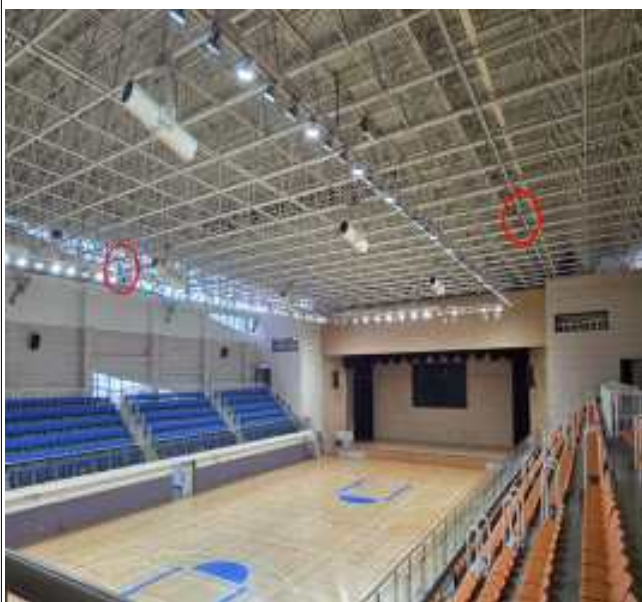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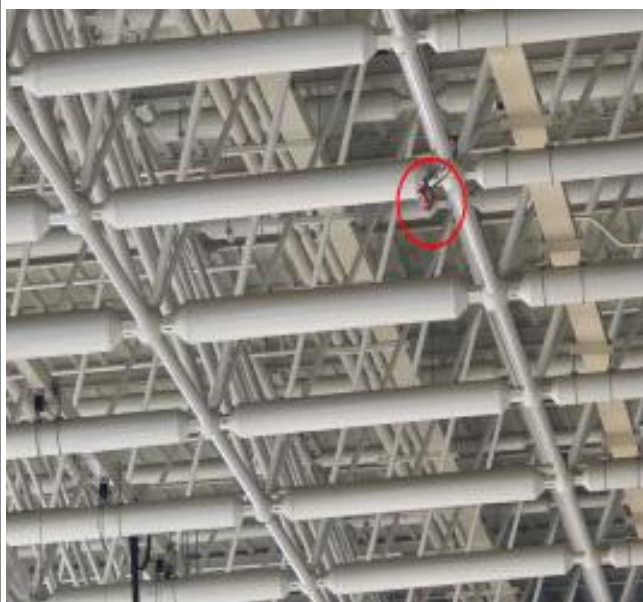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9,164	
김포생활체육관 관리운영	214-05 수선유지비	· 주경기장 불꽃감지기 교체 : 9,163,220원 * 1식		
		- 불꽃감지기 1,100,000원 * 4대 = 4,400,000	4,400	
		- 케이블 9,350원 * 240M = 2,244,000	2,244	
		- 인건비 297,000원 * 4명 = 1,188,000	1,188	
		- 잡자재비 110,000원 * 1식 = 110,000	110	
		- 공제보험료 30,220원 * 1식 = 30,220	31	
		- 경비 794,000원 * 1식 = 794,000	794	
		- 이윤 397,000원 * 1식 = 397,000	397	

□ 예산요구 사유

- 불꽃감지기 고장으로 인해 이용 고객의 불안감 및 불편을 초래
- 오작동 경보 발생하여 실제 화재 발생 시 경보에 대한 경각심을 저하시켜 긴급 상황 대응 지연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불꽃감지기 이설 및 신형 교체로 시설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시설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체육사업실	사업규모	김포생활체육관 주경기장 불꽃감지기(4대)	1회추경 요구액 (천원)	9,164
부기명 (세부사업)	김포생활체육관 불꽃감지기 교체	사업위치	김포한강8로 198-3(마산동)		
위치도					
현장사진					
	생활체육관 주경기장 전경		주경기장 불꽃감지기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체육사업실	생활체육관팀장 이윤미	담당자	일반6급 황원재	전화	996-8020
-----	-------	-------------	-----	----------	----	----------

풍무체육문화센터 비율제 강사로 증액

사업기간	2026. 04. ~ 2026. 12.	사업위치	양도로 56번길 101
사업규모	배드민턴 강습반 6개, 기구필라테스 강습반 28개		
사업목적	풍무체육문화센터 개관 및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증액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1회추경 요구액 (D)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227,610	126,450	101,160	227,61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27,610	126,450	101,160	227,61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1,160	
풍무체육문화센터 관리운영	301-12 기타보상금	· 비율제 강사로(배드민턴) - 경정(100,000원*112명*9월*90%)-기정(100,000원*112명*5월*90%) =	40,320	
		· 비율제 강사로(기구필라테스) - 경정(120,000원*195명*9월*65%)-기정(120,000원*195명*5월*65%) =	60,840	

□ 예산요구 사유

- 풍무체육문화센터 초기 예산편성액 부족에 따른 배드민턴 및 기구필라테스 비율제 강사로 증액 (5개월분 → 9개월분)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2. ~ 2026. 03.: 배드민턴, 기구필라테스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강사 채용
 - 2026. 04. ~ 2026. 12.: 배드민턴, 기구필라테스 프로그램 운영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체육사업실	풍무체육관팀장 박찬민	담당자	일반5급 강가휘	전화	985-5276
-----	-------	-------------	-----	----------	----	----------